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675-01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 12.

연구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오늘날 농촌은 경제 기반의 악화-이농-인구감소-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이러한 과소화 현상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농촌의 교육 문제는 재정의 효율화 측면과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 및 농어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관점도 병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중요 사안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농어촌 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현황과 효과, 활성화 사례 및 요인 등을 분석하여 농어촌 마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농어촌 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농어촌 학교 관련 법규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1967년에 제정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농촌 주민의 생활 전반에 조건정비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실효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제정 노력이 요청되어 최근 국회와 교원단체에서 농어촌교육지원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 사항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분석하였다.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는 상황과 함께,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돌봄학교와 전원학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학교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정책 방향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으로 정책적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현황과 효과 분석

외국의 경우,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학습권의 보장이란 명분 아래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폐교를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그 결과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 인구 감소, 새로운 인구 유입 억제, 학교와 관련된 연관사업의 위축,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입의 감소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적, 지역사회적, 재정적 측면 등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종합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와 같이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으로 절약되는 경제 효과만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금전적인 효과, 즉 유출효과(spillover effect)까지를 고려하는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 재정 효과 이전에 농산어촌 재생의 관점에서 국가 재정 효과라는 통합적 재정효과 분석이 요청된다.

4. 농어촌 교육 활성화 사례 및 그 요인

전국 농어촌 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조사 대상 학교를 1차로 선정하고, 최근 5년간 학생수 증감 추이를 고려하여 2차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학교 소재 지역 인구 변화 분석을 통해 대상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삼우초, 수입초, 세월초, 장승초, 흥동중, 조림초, 마산초 용전분교 7개교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어촌마을의 교육력 회복과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풀무지역교육공동체, 충남교육연구소, 청원교육문화연대, 고산향교육공동체 등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문헌조사 및 방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농어촌 교육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사례분석의 결과,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의 경우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넷째, 농촌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열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촌 지역의 문화와 공

감할 수 있는 농촌형 교육프로그램이 구현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농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대부분 지역(도 단위)의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지역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통폐합 추진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혁신학교 사업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보이던 학교가 통폐합 정책으로 그 특성이 깨져버린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적정규모'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학교를 통폐합시키기 위한 적정규모의 개념이 아닌 학교를 장기적 관점에서 살리기 위한 관점의 적정규모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을 유형화·세분화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각각의 농어촌 지역이 가진 사회적 맥락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투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교육공동체 기반의 지역교육협의회(가칭)의 설치 및 구성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협의회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적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집행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들의 교육경비가 소모성 경비가 아닌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 투입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경비 집행이 요구된다. 다섯째,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된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 등이 투입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농어촌 특성에 맞는 학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원, 교육과정 및 방법, 학교 인프라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한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형 자율학교' 모델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

5.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본 연구는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적·정책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시 말해,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은 미래 문제를 예측하면서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동적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성을 고려하는 예방적·선순환적 성격의 정책 추진, 국가 전체의 거시적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의 접근,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생활과 삶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적 관점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재생 관점, 농어촌 지역 활성화

를 위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어촌 교육 재생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 전략으로서 농어촌 인지적 정책 관점에서 교육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교육 주체 간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법적 기반 강화 및 제도개선, 농어촌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농어촌 유학 지원 사업,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정부 및 민간 연계 사업 등의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농어촌 교육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으로는 절대학교(1면 1개 학교 이상), 농어촌 교사 특별채용제, 농어촌 학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개선, 지자체를 위한 조례 준칙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의 농어촌교육진흥위원회와 지역의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 마을발전협의회 등의 운영 기구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교장 및 교사 팀공모제 실시, 근무 기한의 연장, 무학년제 교육과정 도입, 중앙 평가의 관련 지표 반영·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 지역배움터 지원 사업, 기초 지자체 협력 교육 지원 사업, 농어촌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의 컨설팅 및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어촌 유학 지원 사업은 농어촌유학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농어촌유학센터 지원 사업, 도시학생의 농어촌 체험 의무제 시행, 농어촌 학교의 도시민 홍보 지원, 농어촌 학교를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써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 지원, 농어촌 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촌형 스마트 교육 체제 구축, 농어촌 학생의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민간 연계 사업으로써 농림부의 농어촌개발정책 사업, 각 부처의 교육·문화·복지 정책 사업, 농업·농촌 관련 장학재단의 장학 사업, 기업의 농어촌 학교 설립 등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의 농어촌은 다양한

사회 변화들이 분명히 들어나는 최전선에 있다. 이는 도시의 미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 교육의 취약성은 도농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농어촌의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이농의 주 원인인 농촌 학교의 폐교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정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농어촌 교육(학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 자생적 공동체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7
3. 연구 방법 및 절차	9
제2장 농어촌 교육 법·제도 및 정책 분석	11
1. 법·제도 분석	13
2.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	46
제3장 농어촌 학교 통폐합 현황 및 효과 분석	59
1. 외국 농어촌 학교 통폐합 규모와 교육효과	61
2.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측면	68
3.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측면	80
제4장 농어촌 교육 활성화 사례 및 요인 분석	103
1. 농어촌 학교 활성화 사례 분석	105
2.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 분석	126
3. 농어촌 교육 활성화 요인 분석	141
4. 시사점	149
제5장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155
1.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전략 및 추진 구조	157
2. 법적 기반 강화 및 제도 개선	169
3.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183
4. 농어촌유학 지원 사업	196
5.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	208
6. 정부 및 민간 연계 사업	212
참고문헌	217
부 록	223
1. 농어촌 학교(우수 사례) 최근 5년간 학생 수 현황	225
2.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 법률안	232

표 차 례

<표 2-1> 농어촌 교육 관련 법령	14
<표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농어촌 교육 지원 조항	16
<표 2-3> 교육과학기술부/전남교육연구소/전남교육청이 제시한 특별법의 구조 ·	19
<표 2-4> 의원 입법으로 제안한 특별법의 구조와 내용	20
<표 2-5> 특별법에서의 농어촌 학교 및 작은 학교의 정의와 적용 범위 ···	21
<표 2-6> 특별법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항	22
<표 2-7> 특별법에서의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 조항	23
<표 2-8>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 · 운영 조항	24
<표 2-9> 특별법에서의 교육 여건 개선 조항	26
<표 2-10> 특별법에서의 방과후 학교 지원 조항	28
<표 2-11> 특별법에서의 취학 편의 조항	29
<표 2-12>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 보호 조항	30
<표 2-13>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배치 기준 조항	30
<표 2-14>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확보 조항	31
<표 2-15>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우대 조항	32
<표 2-16>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특별채용 조항	33
<표 2-17>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업무 경감 조항	34
<표 2-18> 특별법에서의 학습 · 보호 시설의 설치 · 운영 조항	35
<표 2-19>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조항	36
<표 2-20>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 특례입학 조항	37
<표 2-21> 특별법에서의 대학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조항	37
<표 2-22>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 조항 ···	38
<표 2-23>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폐교 특례 조항	39
<표 2-24>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폐교 재산의 유지 · 관리 조항	40
<표 2-25> 특별법에서의 공익근무요원 배정 조항	41
<표 2-26>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학교 예산의 지원 조항	42
<표 2-27>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학교 예산의 확보 조항	43

<표 2-28> '농어촌발전대책'의 교육여건 개선 대책과 추진 실태	47
<표 2-29>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	48
<표 2-3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장기 대책의 교육여건 개선 정책 과제	50
<표 2-31>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52
<표 2-32> 농촌 교육 정책의 시대별 특성 및 취약점	57
<표 3-1> 초등학교가 없는 면 지역	68
<표 3-2>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교육 효과 분석 틀	72
<표 3-3> 교과부가 추정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	80
<표 3-4> 교과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	81
<표 3-5>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틀	82
<표 3-6> 최근 5년 간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2006-2010)	83
<표 3-7> 최근 5년 간 학교 통폐합의 수익-비용 분석	83
<표 3-8> 제1차 삶의 질 5개년계획 투융자 규모(계획)	86
<표 3-9> 제2차 삶의 질 5개년계획 투융자 규모(계획)	89
<표 3-10> 제1~2차 삶의 질 5개년계획 투융자 규모(계획)	90
<표 3-11> 마을단위 농촌관광 정책사업 추진 현황	92
<표 3-12> 2000년 이후 등장한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	93
<표 3-13> 농촌 주민들의 주요 이촌 이유	94
<표 3-14>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이사(주거이전)시 고려사항	95
<표 3-15> 귀농·귀촌가구의 연도별 추이	96
<표 3-16> 귀농·귀촌인의 연령별 추이	96
<표 3-17> 도시-농촌 이동인구의 연령별 추이	97
<표 3-18> 폐교에 따른 지역인구감소와 지방세 징수액 감소분	99
<표 3-19>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과 1인당 지방세액	99
<표 4-1> 농어촌 학교 우수 사례 유형 구분	105
<표 4-2> 농어촌 학교 활성화의 의미	106
<표 4-3> 1차 조사 대상 학교	106
<표 4-4> 2차 조사 대상 학교(최근 5년간 학생수 유지 및 증가 학교)	108
<표 4-5> 학교 소재 지역 주민수 증감 추이	109
<표 4-6> 전국 면지역 인구 감소 추이	110
<표 4-7> 서면 조사 질문지	111

<표 4-8> 방문 조사 대상 학교	112
<표 4-9> 삼우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113
<표 4-10> 삼우초등학교 교육과정	115
<표 4-11> 장승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118
<표 4-12> 흥양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122
<표 4-13> 수입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123
<표 4-14>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연계 프로그램	128
<표 4-15>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삼성꿈장학재단 지역교육네트워크 사업 현황 ·	129
<표 4-16> 고산향 교육공동체의 2011-2012년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	138
<표 5-1>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역할 분담	166
<표 5-2> 연도별 농어촌특별전형 자격 기준	175
<표 5-3>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지원 사업 대상의 단계별 접근	187
<표 5-4> 농어촌유학센터 및 농가 시설 요건	201

그 립 차 례

【그림 2-1】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경과	48
【그림 3-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학교구 조정의 절차	64
【그림 4-1】 삼우교육 기본 방향	114
【그림 4-2】 농어촌 교육 활성화 경로	147
【그림 5-1】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160
【그림 5-2】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추진 구조	165
【그림 5-3】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지원 사업 교육공동체 성장 단계	187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장

서 론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농어촌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

□ FTA 환경에 따른 농어촌 경제 환경 악화

- 한미FTA 발효로 농촌의 경제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농민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새로운 농촌 사회 변화 : 저출산·고령화, 다문화화 등 농어촌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의 문제점이 분명히 들어나는 최전선임
 - 저출산(2011년 현재 읍 0.12명/동 1.03명/면 0.09명)¹, 고령화(2010년 현재 농촌 20.9%/도시 9.2%)², 다문화(2010년 현재 농촌 15.7%/도시 7.4%)³
 - 이러한 경향에 대한 농촌의 부담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예측
 - 청소년 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다문화의 증가 등

1) 통계청에서 2011년 실시한 인구동향조사의 전국 평균 출생인원 1,244명을 기준으로 하여 읍·면·동별 출생인원을 계산함(2011년 전국 출생인원 470,758명/평균 출생인원 1,244명)
 - 동별 출생인원 : {동별 출생인원(389,402명)÷전국 출생인원(470,758명)×100}×1.244명
 - 읍별 출생인원 : {읍별 출생인원(46,188명)÷전국 출생인원(470,758명)×100}×1.244명
 - 면별 출생인원 : {면별 출생인원(35,168명)÷전국 출생인원(470,758명)×100}×1.244명

2) 박대식(2013). 고령·양극화시대의 농촌복지정책. 농업전망 2013(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933.

3) 박대식(2012).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농정이슈 심층토론회(5)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5.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 사회 전체의 사회변화의 전조 : 농촌의 문제는 전체 사회의 문제
 -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극심한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황폐화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가까운 미래에 농어촌은 물론 도시지역에도 그대로 나타날 심각한 문제임
 - 나아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농식품 수급을 담당하는 농어촌의 황폐화로 국가의 안보적 위기가 우려되는 등 농촌의 문제는 결국 전체 사회의 문제로 귀결됨

□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악순환 구조

- 농어촌 경제 기반의 약화는 그 동안 이농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더불어 열악한 교육 환경은 새로운 이농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농촌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기회만 있으면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게 됨. 이는 부모들까지도 도시로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결국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됨
(이농 →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 → 도농 교육격차 → 새로운 이농)

나.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성 복원의 필요성

- 시장만능주의, 물질중심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경쟁지상주의, 효율우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여건 하에서 우리 농촌의 미래가 있을까?
 - 농업·농촌 내부적으로는 과거보다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있음
 -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농촌 공동체,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 즉 농촌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 대안 특히, 커뮤니티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필요
 - 농촌학교 폐교 확대, 농촌학교정책을 농촌발전전략 과제로 인식 필요
 - 교육재정 효율화보다는 국가균형발전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관점
 - 도·농 간 평생교육 기회 격차가 농촌주민 삶의 질 격차문제로 확대

다. 농어촌 학교 관련 정책의 한계

□ 농어촌 교육 환경의 악순환 구조를 가속화시킨 정부의 농어촌 학교 정책 : 소규모학교 통폐합

- 악순환 구조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농어촌의 교육 환경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의 농어촌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 정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제고’라는 교육적 논리와 함께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1982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농어촌 학교들이 통폐합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결국 농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농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더욱 고착화(양병우 외, 2004; 양병찬, 2008; 최경환, 마상진: 2009)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음

□ 농어촌 학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재평가 시급

- 교육적 가치로서의 소규모학교
 - 정부는 학교 통폐합의 배경을 '작아서 비교육적'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과밀학급, 과대화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교육적 요소에 주목해야 하며, 도농 복합지역은 과소학교의 통폐합과 함께 읍 단위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과밀학교가 증가하는 등 한 지역 내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하여 농촌 학교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기원은 1990년대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었음(1993년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 이들은 ‘인간 중심의 본질적 교육의 가능성’⁴을 소규모학교에서

4)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문건들은 농촌 학교를 ‘소규모학교’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와 차별화하여 ‘작은’ 학교라고 부름. 이 운동에서는 농촌의 작은 학교가 갖는 상대적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음. 이에 관해서는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장호순, 계간 농정연구 2003)의 178-186쪽과 “작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충남교육연구, 2003)의 32-42쪽, “폐교의 위기를 넘어 학교 교육의 희망으로”와 “거산의 학교만들기”(농어촌 작은학교살리기 전국 토론회 자료집, 2004)의 40-79쪽 참고.

찾을 수 있다는 논리로 ‘전원의 작은 학교’ 모델을 농촌 학교 살리기 운동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최근에 많은 작은 학교들이 교육적 성과를 내면서 교육계와 매스컴 등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⁵ 특히 「작은학교교육연대」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 노력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농촌학교의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교육계 내부의 각성과 지역사회의 관심, 관련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됨(양병찬, 2008; 최경환·마상진, 2009; 김성현 외, 2010)

● 전 국토적 관점에서 소규모학교의 가치

- 농산어촌이나 구도심권 등 과소 지역의 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행안부, 농식품부, 문광부 등)이 투여되고 있음. 지역 활성화에서 학교의 존재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학교 재생 역시 과제가 되고 있음
- 국토의 균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동등한 생활 조건의 확립이 시급함(독일 1949년 헌법,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 조건 확립' 명시). 최근 농식품부가 정책화하고 있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 standard)' 도입에서 농촌 '절대 학교' 개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송미령 외, 2009; 김광선 외, 2010)

라.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정책 수립 시급

- 농어촌지역의 학교문제는 교육재정의 효율화 측면과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 및 농어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관점도 병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중요 사안임
- 따라서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 수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중앙 정부 차원의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과제임

5) 1995년에 결성된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와 2000년 11월 남한산초등학교 살리기를 비롯하여 2002년 2월 송남초·거산분교, 2003년 3월 교산서초교(삼우초), 2005년 3월 상주남부초, 2006년 부산금성초, 2007년 양평조현초, 2008년 3월 순천송산분교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이어오고 있음

02 연구 내용

□ 농어촌 교육 법·제도 및 정책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농어촌 학교 관련 법규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1967년에 제정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임
- 농촌 주민의 생활 전반에 조건정비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는 4장(제20조~제28조)에 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함
- 이처럼 농산어촌교육진흥법(안)들의 정부 검토 사항에서 논거가 되는 기존의 법제(도서벽지교육진흥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는 실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미비함
- 이상의 법적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제정 노력이 요청되어 최근 국회와 교원단체에서 농어촌교육지원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 사항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분석·제시하고자 함

□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현황과 효과 분석

- 도·농 간 심화된 (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공교육 정책(통폐합)과는 다른 관점의 정책이 요청됨. 즉 인권적 차원에서 농촌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 차원의 경제편익 차원에서 농촌학교의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적, 지역사회적, 재정적 측면 등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종합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역효과와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적 효과 분석
 - 통폐합에 따른 학생의 교육성취,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적 역효과를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한 질적 방법으로 작은 학교의 여러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농어촌 재생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재정 효과 분석
 - 현재와 같이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으로 절약되는 경제 효과만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금전적인 효과, 즉 유출효과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spillover effect)까지를 고려하는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야 할 것임(최준렬·강대중, 2007: 84)

- 결국 학교 재정 효과 이전에 농산어촌 재생의 관점에서 국가 재정 효과라는 통합적 재정효과 분석이 요청됨(양병찬, 2006)

□ 농어촌 교육 활성화 사례 및 요인 분석

- 국가 및 지자체(교육청) 차원의 지원, 지역 주민 및 교사 차원의 지역재생운동 등 농촌 학교 활성화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농촌 학교의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 요인 분석에 앞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준거로 하여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 사례를 인터뷰, 현장 방문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활성화 요인을 추출하고자 함
- 또한 지역 주민 중심의 교육적·집단적 접근으로써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 학습, 주민교육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하여 농어촌마을의 교육력 회복과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향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중심의 교육 운동들과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제시

-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을 통해 농어촌 마을-학교 연계를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즉 농어촌마을 교육력 회복 및 지역 재생 관점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농어촌유학 지원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즉 전인교육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측면에서 자체 및 정부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03 연구 방법 및 절차

농어촌 교육과 학교 관련 문헌 조사·분석

- 농어촌 교육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시사점 및 발전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와 관련된 농어촌 교육 및 학교 등과 관련된 보고서, 정책 자료 등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자 함

농어촌학교 통폐합 및 농촌 재생 비용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경제 편익 분석

-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통폐합을 통해 줄어드는 교육예산 규모로 그 편익을 분석하여 왔음(교육재정 효율화 관점)
- 그러나 학교가 농촌 지역사회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이를 거시적·재생적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그 경제 편익을 분석하고자 함(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경제 편익 분석)

농어촌 작은 학교 및 교육공동체 우수 사례 방문 조사·분석

-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 / 교육공동체 운영의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지역을 방문하여 분석하고자 함. 즉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학교 및 공동체의 성공요인, 운영 과정,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과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전문가 간담회 실시

- 본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함
- 즉 농어촌 소규모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밀집된 지역의 담당자들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제2장 농어촌 교육 법·제도 및 정책 분석

1. 법·제도 분석
2.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

제 2 장

농어촌 교육 법·제도 및 정책 분석

01 법·제도 분석

가. 헌법 및 교육기본법

□ 헌법 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교육권

-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는 모든 국민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음.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이 최초 제정될 당시(1948년)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하는 기본 권리로서 교육권을 천명한 것임

□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 평생학습권 및 교육기회의 균등

- 교육기본법은 헌법에서 위임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의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부의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 법령

- 정부의 농어촌 교육을 종합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법률은 현재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도서벽지교육진흥법(196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 등 여러 법률들의 일부 조항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법령들이 대표적인

<표 2-1> 농어촌 교육 관련 법령

법령(해당 조문 제정일)	농어촌 교육 관련 조문 내용	소관 부처
도서벽지교육진흥법(1967.01.16.)	▶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의무교육 및 근무교사 지원 등 명시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1969.12.04.)	▶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가산점 부여 명시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1977.12.31.)	▶ 농어촌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원의 특별채용 및 인사 교류 시 혜택 명시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2007.01.20.)	▶ 농어촌 학생 및 도서·벽지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항 명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2010.06.29.)	▶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례 및 공모교장 임용 가능 규정 제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2.01.26.)	▶ 농어촌의 교육 등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 및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004.06.06.)	▶ 농어촌 학교의 교원, 학생, 시설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법령 마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11.28.)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필요 명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11.03.29.)	▶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명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 ⇒ 학교로 범위 한정

- 도서·벽지교육진흥법(1967.1.16) : 근무 교원의 복지 및 배치
 - 근무교원의 복지 및 배치 : 선택가산점 부여,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및 교원의 적절한 배치,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 및 연수 경비 지원, 도서·벽지 수당 지급
 - ※ 도서·벽지 근무교원 가산점(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1970년대에는 40점 이상이었으나, 2009년 이후 교육감이 평정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총점 10점의 범위 내(전체승진점수 213점 중)에서 시행
 -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학교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통학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1977.12.31) : 특별 채용 및 인사 교류 시 혜택
 - ▶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특별채용 가능([제12조, 2008.3.14.], [시행령 제9조의 2, 2008.2.29.])
 - ▶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교원은 3년이 지나면 희망하는 타 지역으로 전보가능 ([시행령 제13조의 3, 2005.4.15.])
-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1969.12.4) :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가산점 부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0.6.29) : 교육과정 운영 및 공모교장 임용
 - 농어촌학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교 지정 가능 ([제105조, 개정 2011.1.17.])
 - 자율학교로 지정된 농어촌학교는 공모교장 가능([제105조의2, 개정 2011.7.17.])
-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2007.1.20) : 재학생 급식비 지원
 -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 재학생은 급식경비 지원의 우선권 보유([제9조, 개정 2010.7.23.])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도서·벽지지역과 농어촌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7할 이상 학생의 학부모가 이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해있는 지역으로 정의됨([시행령 제10조, 개정 2011.1.17.])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 ⇒ 교육·복지적 측면의 종합적 접근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촌 교육 등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농어촌의 균형 발전 및 의료·교육, 그 밖의 농어촌 복지증진 관련 사항 협의(〔제2조, 2008.2.29.〕)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004.3.5)
 -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 지원

<표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농어촌 교육 지원 조항

구 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 존중해야 함
학생의 학습권 보장(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련 ▶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교육지원(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위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농수산계 고등학교 설치·운영 경비 지원(제24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할 수 있음
교직원의 확보·배치(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함
교직원의 우대(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둠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함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 ▶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

- ‘농어촌 서비스 기준’중 교육 부문 : 유치원/초중학교, 고등학교, 폐교요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발전위원회, 평생교육 등 명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교육 부문 관련 내용

- 유치원/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고등학교 :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 폐교요건 :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수렴한다.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 교육발전위원회 :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 평생교육 :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 기타 법령

-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필요([제53조, 개정 2009.5.27.])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아 및 학생들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프로그램 지원, 예산지원 등 필요([제14조])

<한 계>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 40여년 전 적용하던 도서·벽지에 대한 개념 모호
 - 주로 교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 ※ 승진을 위한 곳으로 인식 → 농어촌학교에 대한 교사의 애착심 낮음
 - 농어촌 학교의 여건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근거 취약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
 - 조항 대부분이 임의 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매우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함 → 어느 부처/지자체에도 구속력이 없는 법이 되고 있음

다.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 신규 법령 제정 요구

-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각계의 요구들은 농어촌 교육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먼저 정부(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연구(정지웅 외, 2002)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전남교육연구소)에서는 농어촌교육진흥방안(강만철 외, 2002)을 추진하였음. 이들은 농산어촌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으나, 입안에 이르지 못한
- 한편, 국회의 의원 입법에 의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으나, 타 법률과의 상충 또는 타 법률에 이미 일정 부분 제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입법화되지는 못함. 다만, 일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의 법령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음
- 일부 조항만의 반영으로는 근본적인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최근 전남교육청과 한국농산어촌교육발전센터(공주대학교) 등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정지웅 외(2002)/강만철 외(2002)/정민석(2012)이 제시한 특별법안

- 정부(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연구(정지웅 외, 2002)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전남교육연구소)에서는 농어촌교육진흥방안(강만철 외, 2002)을 추진하였음. 보고서에서 농산어촌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으나, 성안에 이르지 못한
- 이외에도 2012년 7월 3일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정민석이 발제하며 제시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이 있음. 이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과 같음

<표 2-3> 교육과학기술부/전남교육연구소/전남교육청이 제시한 특별법의 구조

구 분	교육과학기술부 (정지웅 외, 2002)	전남교육연구소 (강만철 외, 2002)	전남교육청 (정민석, 2012)
전문	제6장 18조(부칙 포함)	제11장 제32조 및 부칙	제8장 제18조 및 부칙
총칙	목적, 정의, 타 법률과의 관계	목적, 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의무, 조직	-	관계기관 회의
학교의 운영과 역할	학급편성, 학교의 역할, 학교통합, 폐교와 보호, 폐교 시설 유지와 관리, 재개교	-	농어촌 학교 운영, 교육환경 유지·개선, 농어촌 자율학교, 농어촌학교의 폐교 및 재개교, 폐교시설의 유지 관리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복식학급 지양, 교육활동 지원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순회교사, 우대 방안, 근무부담 경감	확충, 우대, 사무보조원 배치, 주택 제공	교직원의 배치 기준, 교원의 복무, 우대조치
기관과의 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농어촌학교운영지원기구
공익요원 배치	-	신분, 종사명령, 근무지역 변경, 직장이탈금지, 복무, 보수	-
학생지원	-	급식, 통학차량 제공, 학비감면	학생지원
시설 및 설비	시설·설비 지원	교구·기자재 지원, 교육정보자료실, 지역교육연구실	-
재정지원	예산 지원	재정배분	경비지원 및 재원 확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학교의 지역사회 개방	지역사회문화센터	교육복지지원센터 등
발전기금	-	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용도	-

□ 의원 입법으로 제시된 특별법안

- 의원 입법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최순영의원 대표발의, 2007.10)
 -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2008.08)
 -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2008.12)
 -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009.04)
 -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010.08)
 -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1.11)

- 이들은 대체로 공통적인 사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조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4> 의원 입법으로 제안한 특별법의 구조와 내용

구분	전문	주요내용
최순영 의원 외	제27조 및 부칙	▶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교육여건의 개선, 방과후 학교 지원,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취학편의, 교사의 배치기준, 교원의 확보, 교원의 우대, 교원의 특별 채용, 교원의 업무경감, 학습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주민의 교육지원, 대학특례입학, 교육대학 진학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취학의 장려, 폐교의 특례, 폐교 재산의 유지관리, 공익근무요원 배정, 재원의 확보, 경비 지원 등
이윤석 의원 외	제20조 및 부칙	▶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교육여건 개선 등,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취학편의 등, 교원확보, 우대, 업무경감 등, 주민교육지원,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대학특례입학, 대학생 등록금 지원, 폐교 특례, 폐교 재산 유지 및 관리, 재원 확보, 경비 지원 등
강기갑 의원 외	제27조 및 부칙	▶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교육여건 개선 등,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유아교육 및 보호, 취학편의 등, 교원확보, 우대, 업무 경감 등, 학습보호시설 설치-운영, 주민교육지원, 대학특례입학, 교육대학 진학자 등 등록금 지원, 취학 장려, 폐교 특례, 폐교재산 유지 및 관리, 공익근무요원 배정, 재원확보, 경비 지원
김영진 의원 외	제26조 및 부칙	▶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회,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교육여건 개선 등, 취학편의 등, 학교 시설 개방 등, 방과후 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의 지원/학생 보건, 학교 상호 연계 운영, 대학 특례 입학, 주민교육지원, 유아교육 보호, 취학장려, 교원특별임용, 확보, 우대, 경비지원, 폐교 특례, 폐교재산 유지 및 관리
김춘진 의원 외	제18조 및 부칙	▶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 공립 소규모 공동체학교 교원 공모 및 선정, 공모교원팀의 재선정,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지정해제, 공모교원팀의 근무기간, 심의위원회, 교원, 불이익금지, 운영, 교육과정, 연수, 평가, 협의회, 재정지원 등
정진후 의원 외	제23조 및 부칙	▶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교육여건 개선,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방과후 학교지원, 취학편의, 교직원의 정원확보, 교원의 확보, 교원의 우대, 업무경감, 대학특례입학, 주민교육지원, 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취학의 장려, 폐교의 특례,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공익근무요원 배정, 재원 확보, 무상교육 및 경비 지원 등

라. 분석 및 논의

- 현행과 같이 일부 조항들이 개별법령에 삽입되어 산발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임
- 특별법(안)들을 살펴본 결과,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법 제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농어촌 학교 및 작은 학교의 정의를 통한 적용 범위

- 지역 및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개념 정의를 통해 법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2-5> 특별법에서의 농어촌 학교 및 작은 학교의 정의와 적용 범위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 농어촌교육으로 통합 규정
강만철 의	▶ 농어촌학교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및 시의 지역 중 농림부장관이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 ▶ 도서벽지학교 :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낙도·수복지구·접적지역 및 광산지구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 소규모 학교 : 초등학교 6학급 이하와 중학교·고등학교 3학급 이하
정민석	▶ 농어촌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최순영의원 의	▶ 농산어촌학교 :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농산어촌 작은 학교 :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① 면에 소재하는 학교, ②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③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
이윤석의원 의	▶ 농산어촌학교 :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강기갑의원 의	▶ 농산어촌학교 :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농산어촌 작은 학교 :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① 면에 소재하는 학교, ②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③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
김영진의원 의	▶ 농산어촌 학교 :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농산어촌 작은 학교 :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면 단위 이하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초등 7학급, 중등 4학급 이하의 학교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
정진후의원 의	▶ 농어촌 작은 학교 : 농어촌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① 읍면에 소재하는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② 농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농어촌 교육 및 학교의 활성화가 가능토록 명문화하고 있음. 법률(안)이 제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주로 다음과 같음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 지원
-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 농산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그 밖에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

<표 2-6> 특별법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와 다른 농어촌 교육기관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강구 ▶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조직·운영 ▶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 개발·보급, 연차 계획 수립·수행 ▶ 지자체의 전입금 지원 ▶ 기초지자체가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농어촌학교 우선 지원
강만철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 농어촌교육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농어촌교육진흥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 : 농어촌교육진흥협의회 구성 ▶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을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농어촌교육 종합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의 추진 결과를 매년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앙정부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의회 보고
최순영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 지원 ▶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 농산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그 밖에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 ※ 시책 마련에 있어 농산어촌 주민·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에,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회에 시책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이윤석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안과 동일하며, 농산어촌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가 ※ 시책 마련에 있어 농산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 존중
강기갑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 시책 마련에 있어 농산어촌 주민·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 존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후 중앙정부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회에 보고
정진후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

- 농어촌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가 중앙과 지역에 설치토록 명문화하고 있음. 법률(안)에 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
 ▶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둠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함

<표 2-7> 특별법에서의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 중앙과 지방> ▶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장·단기 계획 수립·시행, 시책과 연구 등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조직·운영 ▶ 각계각층의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포함
강만철 의	<농어촌교육진흥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설치/위원 : 각 부처의 차관 ▶ 농어촌 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등 ※ 지방 : 농어촌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정민석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 의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 <시·도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 의장 : 교육감/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공동 ▶ 위원 : 농어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과 농어촌의 교육·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최순영의원 의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기구> ▶ 농산어촌학교와 학생 및 주민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지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 심의·조정>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 의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 교육감 소속 ▶ 의장 : 교육감/위원(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 농산어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농산어촌지역 학부모대표, 교원 또는 교육전문가, 농어민단체 추천인사, 관계 공무원 ▶ 역할 : 농산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평가, 그 밖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 ▶ 농산어촌학교와 학생 및 주민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표 2-7>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이윤석의원 외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 역할 : 농산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평가, 그 밖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강기갑의원 외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 ▶ 교육감 설치 ▶ 교수, 농어민단체 추천인사, 교사, 농산어촌지역 학부모 대표, 지자체공무원 등 ※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 설치·운영
정진후의원 외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 농산어촌의 실정과 특정을 반영한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에 제시된 사항 중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학교장의 초빙 및 권한 :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 대상 공모. 필요한 교원의 전보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 요청 가능. 이 경우, 교육감의 인사관리 규칙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전보 임용 또는 전보유예 가능

<표 2-8>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웅 외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에 삽입
강만철 외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삽입
정민석	<지정·해제> ▶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22)의 규정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자율학교 지정 가능 ▶ 농어촌자율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충실하게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준용 ▶ 교육감은 농어촌자율학교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제 가능 <운영> ▶ 근무 교원의 배치기준과 관련된 별도 규정 둠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교가 있는 기초자치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전·입학 우선 허용 ▶ 교육감은 같은 기초자치구역에서 농어촌자율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 지원

<표 2-8>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최순영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 교육 등을 하는 학교로 운영하거나, 해당 학교 내에 그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함 ▶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제24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29조 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국·공립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장은 <u>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 대상 공모</u> ▶ 국·공립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장은 <u>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요청 가능</u> ▶ 교육감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 가능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윤석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하나, 학교장의 공모(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조항은 없음
강기갑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하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 추가
김영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농산어촌작은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음 ▶ <u>농산어촌형 자율학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 대상 공모. 공모 학교장의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인의 교장 후보를 추천, 교육감이 임명</u> ▶ <u>농산어촌형 자율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전보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 가능. 이 경우, 교육감의 인사관리규칙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전보 임용 또는 전보유예 가능</u> ▶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충실하게 운영해야 함 ▶ 교육감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가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제 가능. 다만,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사전에 사유를 첨부하여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구분된 학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 허용 가능
정진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농어촌 작은 학교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운영 가능 ▶ 국·공립 농어촌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 대상 공모 ▶ 교육감은 농어촌 자율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해제 가능 ▶ 그 밖에 지정·운영·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 : 정지웅 외의 법률안>

- 소규모 농어촌 학교는 학교 실정과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 가능
- 교육과정은 국가나 지방의 교육행정 당국에서 개발·제시된 것이거나, 지방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개발·적용될 수 있도록 함

<지역교육과정 편성 : 강만철 외의 법률안>

- 농어촌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가능

<장학지도 및 평가에 대한 특례 :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안>

-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 및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장학지도나 평가 대신 상담 형태의 지원 장학을 도입하며,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이 그 업무 담당
-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에서 제외

□ 교육 여건 개선

-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최근 발의된 법률(안)일수록 복식학급을 지양하고 있음
- 특히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농어촌 면지역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표 2-9> 특별법에서의 교육 여건 개선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웅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의 학급 편성 기준은 학생 수 25명으로 하고 10명이 넘으면 한 학급 유지 ▶ 한 학년의 학생 수가 10명 미만이면 복식학급으로 편성·운영. 한 학년의 학생 수가 5명 미만이면 3복식, 3명 미만이면 전학년 1학급으로 편성 운영
강만철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학급에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한 단식학급 편성
정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면 지역은 초등학교,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 이상 유지. 다만, 학교가 없어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농어촌의 지역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여야 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가능.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설비, 교원 및 보조인력, 비용 적극 지원 <p><교육환경 유지·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학급의 정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할 수 있으며,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정원규모를 넘어설 때 실제로 현지에 거주하는 학생 우선 허용.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에 특별한 경우에만 복식학급 편성 가능. 특별한 경우와 관련한 기준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학교 시설의 단계적 현대화 계획을 수립·추진.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학생복지시설을 우선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

<표 2-9>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최순영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농산어촌학교의 학급편성에 있어서 1개 학년의 학생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학급을 복식학급(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편성하여서는 안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산어촌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해야 함
이윤석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장이 원어민 교사 배치를 요청할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산어촌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해야 함
강기갑의원 외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한 학년 3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6명 이상일 경우 복식학급을 두어서는 안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산어촌교육과정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산어촌학교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해야 함 ▶ 농산어촌교육과정연구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진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면 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여야 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파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가능 ▶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학교 학생 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의 장은 농어촌학교의 학급편성에 있어서 교육목적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식학급을 편성해서는 안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 개발·제작·보급

<농어촌학교에 대한 시설·설비의 지원 : 정지웅 외의 법률안>

- 각 시·군·구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농어촌 학교에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과 설비를 교육청이나 지역 중심학교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활용
- 교육장은 공동시설과 설비를 활용하기 위해 통학차량 등 운송 수단을 마련·운영

<농어촌 학교의 시설·설비 : 강만철 외의 법률안>

-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교구와 시설·기자재를 우선 지원
-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교육정보자료실을 구축하여 원격교육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게 함
- 시·도교육청에 농어촌지역교육연구실을 개설하여 농어촌교육, 소규모 학교 교육, 복식수업에 대해 연구하고 지도하게 하며, 원격교육을 지원토록 함

<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 정민석의 법률안>

- 초·중·고 농어촌학교 학생에게는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 광역시 및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졸업자를 위한 학사 설립·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고교 출신 고졸 취업자에게는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일정규모 이상의 중업원을 거느린 기업이 신규인력 채용 시 일정비율을 의무고용

<농산어촌 학생의 보건 :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신체 및 정신 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년 4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며, 검진결과 추가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위탁하여 검진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함
- 상담교사는 관할 지역의 농산어촌 학생 중 정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장은 관련 병원에 치료 위탁
-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진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지원. 이때 지원업무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의 위탁을 받아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소요비용 지급. 소요예산은 국가가 각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교부

□ 방과후 학교 지원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에 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10> 특별법에서의 방과후 학교 지원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
강만철 의	-
정민석	▶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 및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인력 및 비용 지원
최순영의원 의	▶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관리·운영하고, 농산어촌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 ▶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공공기관 등의 장은 교육감의 요청에 적극 협력 ▶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능 또는 체육 분야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이윤석의원 의	▶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관리·운영하고, 농산어촌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 ▶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능 또는 체육 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강기갑의원 의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의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에 추가 ▶ 농산어촌학교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학부모 중에서 방과후 학교에 활용 가능한 자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 가능 ▶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함
정진후의원 의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농산어촌학교의 상호 연계 운영 :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안>

- 농산어촌학교의 방과후학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 개 학교 이상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산어촌학교의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교과와 중심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학교에 실험실습 시설을 완비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농산어촌학교에 비치하는 설비는 두 학교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운영 가능
- 교육장은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체험학습, 방과후학교, 공동실험실습소 활용 등을 위하여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 이동용 버스를 운영하여야 함

□ 취학 편의

- 농산어촌 학생들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제공, 기숙사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에 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11> 특별법에서의 취학 편의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
강만철 의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차량 제공
최순영의원 의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 설치·운영 또는 통학버스 운행 ▶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
이윤석의원 의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강기갑의원 의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의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에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학생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추가
정진후의원 의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보육시설의 병설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지원
 - 종일제 또는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 우선적으로 배치

<표 2-12>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
강만철 의	-
최순영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 병설. ①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②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필요한 경우) ▶ 국가는 유치원·보육시설의 병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또는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 우선적으로 배치
이윤석의원 의	-
강기갑의원 의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농산어촌작은학교에 유치원을 반드시 설치, 필요시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를 위하여 유아교육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지원, 교원 및 보조 인력 우선 배치
정진후의원 의	-

□ 교사의 배치 및 우대

- 교사의 배치 기준 : 농산어촌 학교의 교사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소규모학교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 학교 근무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우선 배치
 - 농산어촌학교는 별도 기준의 정원 확보·지원
 - 교사양성과정에서 농어촌교육이나 도서벽지교육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교사가 농어촌학교 근무를 지원하면 우선 배정

<표 2-13>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배치 기준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양성과정에서 농어촌교육이나 도서벽지교육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교사가 농어촌학교 근무를 지원하면 우선 배정 ▶ 농어촌 학교 가운데 특히 소규모학교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 학교 근무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우선 배치
강만철 의	-
정민석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교원이 배치되도록 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최순영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학교에 별도기준의 교원 정원을 확보하여 지원 ▶ 농산어촌 학교 별도 기준의 교원정원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 2-13>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이윤석의원 외	-
강기갑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교원정원배정에 관한 특례> ▶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원정원배정기준에 별도의 예산과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지원 ▶ 예산 및 교원정원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진후의원 외	<교직원의 정원확보> ▶ 농어촌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교직원이 농어촌학교에 추가 배치되도록 해야 함 ▶ 별도의 기준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경비 지원 ▶ 농어촌 작은학교 별도기준의 교원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원의 확보 :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소규모 학교에는 2개교 이상을 겸임하는 순회교사 배치
 -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장기 근무하는 교원은 후생복지 등 우대조치 가능
 -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산어촌 작은 학교로 전보 가능
 -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요청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 가능

<표 2-14>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확보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외	▶ 소규모학교에는 2개교 이상을 겸임하는 순회교사 배치 가능. 이들 순회교사는 본인의 희망, 관련 학교장의 의견, 당해 지방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의 의견,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교육청 또는 관련학교에 소속하여 감독을 받도록 함
강만철 외	▶ 농어촌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음
정민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 배치. 후생복지 등에 있어 우대조치 가능
최순영의원 외	▶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장기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가능 ▶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산어촌 작은 학교로 전보 가능 ▶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 가능 ▶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장·교감은 교사 겸임 가능

<표 2-14>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이윤석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에 장기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가능 ▶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산어촌학교로 전보 가능 ▶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장기근무 가능
강기갑의원 의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권자는 농산어촌작은학교에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하여 임용 ▶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이 장기근무를 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 ▶ 농산어촌작은학교에는 학교장 겸임제 실시 가능 ▶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교감을 배치할 경우에는 교사와 동일한 수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정진후의원 의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 교원의 우대 :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승진상의 가산점 부여 및 전보 상의 배려
- 특별 수당 지급 및 주택 제공/연수 기회 우선 제공
- 병역대체인정, 동학교 장기근무 특별허용, 자녀학비감면 등

<표 2-15>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우대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본봉의 20% 내에서 특별 수당 지급 가능 ▶ 당해 지역의 교육감이 지정한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 승진상의 가산점 부여 및 전보상의 배려 등 혜택 부여 ▶ 소규모 농어촌학교를 포함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에 대해 가족생활에 필요한 현대식 주택을 무료로 임대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장·단기 국내 및 해외연수 기회 우선 부여 ▶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병역대체인정, 동학교 장기근무 특별허용, 자녀학비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강만철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지의 등급에 따라 월 봉급의 8~15%의 정급률을 수당으로 지급 ▶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가산점 부여 ▶ 농어촌에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 우대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원의 연수 우대
정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①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② 현지거주 교사와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 장려수당, ③ 복식학급 담당수당 별도 지급 ▶ 현지거주 교원에 대해 주택 구매 또는 그 임대 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 농어촌학교 교원에게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에 대하여 우대조치 가능 ▶ 교원의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 2-15>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최순영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① 농산어촌 작은 학교 근무수당, ②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③ 복식학급담당수당 지급 ▶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교원에 대해 주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구입 또는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 가능 ▶ 수당, 농지 규모 및 무이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윤석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① 농산어촌학교 근무수당, ②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지급 ▶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연수기회 우선 부여 ▶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편의 우선 제공 ▶ 수당, 주거편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강기갑의원 외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① 농산어촌 작은 학교 근무수당, ②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③ 복식학급담당수당 지급 ▶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하고 해당 학군에 거주하며, 취학 연령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학군의 농어촌작은학교에 취학시키는 교원에 대하여 주택 및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구입 또는 그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 가능 ▶ 수당, 농지 규모 및 무이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진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농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 및 수당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①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② 복식학급담당수당 ▶ 농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원에 대해 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구입 또는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 가능 ▶ 수당, 농지 규모 및 무이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원의 특별채용 :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표 2-16>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특별채용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외	-
강만철 외	-
정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이 농어촌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와 장기근무를 원할 때에 우선 임용 가능 ▶ 농어촌 고교 출신 예비 교원이 출신 지역에 지원할 때 특별 채용 가능 ▶ 특별 채용된 교원은 농어촌학교에 10년 이상 근무
최순영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한 교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 가능 ▶ 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의무복무 ▶ 특별채용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윤석의원 외	-
강기갑의원 외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출신으로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를 약정할 경우 교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임용원칙이나 채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 가능 ▶ 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작은학교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u>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원의 자격 상실</u> ▶ 임용 자격요건과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진후의원 외	-

- 교원의 업무경감 :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당직 근무 면제 및 지시·보고 요청 공문 자제, 보고 사항은 전화 등으로 간소화
 -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외의 행정 업무를 요구해서는 안됨
 -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교무 및 행정 지원을 위한 행정직원 1인 이상 배치
 - 교원의 출장 일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초과 불가능

<표 2-17> 특별법에서의 교사의 업무 경감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우선적으로 당직근무 면제 등 근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혜택을 받아야 함 ▶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시·보고요청 공문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간소화 ▶ 교육감은 학교의 규모를 불문하고 교무 및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직원 1인 이상 배치
강만철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사무보조원 우선 배치
정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시·도 규칙으로 정함
최순영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문발송·보고 등 행정업무의 처리 요구 ▶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교육 외의 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안됨 ▶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출장일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초과 불가능
이윤석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에 행정보조원을 우선 배치 ▶ 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출장일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초과 불가능
강기갑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교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학기 중 출장의 총량 규제 실시 ▶ 업무부담 경감과 출장 총량 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함
정진후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외의 행정 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안됨 ▶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 외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교원의 행정업무 범위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 학습·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후 보호 등을 위해 마을 공부방 등의 학습·보호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2-18> 특별법에서의 학습·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외	-
강만철 외	-
정민석	<p><교육복지지원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p><지역아동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또는 마을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가능토록 지원 <p><산촌유학 학교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를 활용하여 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교에 1학기 이상 장기적으로 재학할 수 있는 산촌유학 학교 운영 가능
최순영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하여 마을 공부방 등의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윤석의원 외	-
장기갑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 향상 및 방과후 보호를 위해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마을단위 공부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장은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 교육감은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자녀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시군교육청에 배치하여 운영 ▶ 교육감은 방과후 학교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유아, 초·중·고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시군단위의 협의체 설치 운영 ▶ 교육감은 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 단,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 해당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주민의 평가를 통해 재위탁 결정
정진후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 농산어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에 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19>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진행 ▶ 학교 시설은 지역 주민이 적극 활용하도록 개방, 이를 위한 예산 편성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하는 농어촌학교 교사의 업무는 공식적인 직무부담으로 인정 ▶ 농어촌 학교의 평생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평생교육법의 그 시행규정에 따르며,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농어촌 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혜택을 받도록 함
강만철 의	-
정민석	▶ 농어촌학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 운영 가능
최순영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의 시설활용 가능
이윤석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강기갑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정진후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지역사회문화센터 구축 : 강만철 의의 법률안>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문화센터를 구축

<학교 시설의 개방 :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안>

-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주민 및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도서실·전산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학생들을 위한 자율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

□ 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 특례입학

- 농산어촌학교 출신자들의 대학 특례입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농어촌 초·중등학교를 9년 이상 재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실시
 - 기숙사 우선 입소 지원

<표 2-20>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 특례입학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외	-
강만철 외	-
정민석	-
최순영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농산어촌 특별전형 실시 ▶ 특별전형의 정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농산어촌 학교 학생수 비율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함 ▶ 대학의 장은 농산어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우선 입소하도록 해야 함
이윤석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강기갑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정진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농어촌 초·중등학교를 9년 이상 재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농어촌 특별전형 실시 ▶ 특별전형의 정원은 전체 학생 수 대비 농어촌 학교 학생 수 비율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 대학의 장은 농어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우선 입소

□ 대학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 농산어촌학교 졸업자의 교육대학 진학 시 등록금 지원에 대한 것은 농산어촌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21> 특별법에서의 대학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외	-
강만철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진학자에 대한 학비 감면 ▶ 농어촌 중학교 졸업자가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진학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비 면제
정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입학 시 정원의 특례입학 확대 ▶ 특례입학 대학생에게는 입학금과 학기 중 수업료 지원
최순영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로서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① 학업을 중단한 경우, ② 초·중등 교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경우, ③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금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표 2-21>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이윤석의원 외	<p><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의 학교 및 과학기술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학사과정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지원. ① 입학금, ② 수업료의 2분의 1, ③ 남은 수업료 2분의 1에 대한 대출이자 ▶ 지원을 받은 자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에는 지원은 중지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입학금·수업료 등의 지원 및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p>※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제5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중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전액 지원 ▶ 수업료를 지원받은 자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후의 수업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 수업료의 지원·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강기갑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교대 또는 사대에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진후의원 외	-

□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

-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취학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에 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22>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웅 외	-
강만철 외	-
정민석	-
최순영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그 자녀를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그들에게 인사보수 그 밖의 근무에 있어 우대 방안 마련·시행 ▶ 보수 등 우대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윤석의원 외	-
강기갑의원 외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그 자녀를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사보수 그 밖의 근무에 있어 우대 방안 마련·시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임용대기 중에 있는 자가 농산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용하고, 인사보수 등에 있어서 우대 ▶ 보수 등 우대방안 및 우선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진후의원 외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폐교

- 폐교의 특례 :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폐교 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폐교 시 지역 주민의 2/3이상 동의 필요
 - 동의를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사유로 통상적으로 인근 다른 학교로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폐교 불가능
 - 초등학교는 인근 4km이내, 중등학교는 인근 6km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거나 차량으로 통학이 불가능할 때 학교 폐교 불가능
 - 폐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학령 또는 적령 아동 5인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할 때 다시 개교

<표 2-23>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폐교 특례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이 지역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폐교. ① 학교의 학생 수가 10명 이하 일 때, ② 해당 지역이 수몰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주민이 거주할 수 없을 때. 단, 학교의 이주가 가능한 경우 제외, 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주민이 폐교를 신청하였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가 학생수가 10명 이하일 때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2/3이상 동의 - 초등학교는 인근 4km이내, 중등학교는 인근 6km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거나 차량으로 통학이 불가능할 때 학교 폐교 불가능 - 투표는 2주 전에 공고 ▶ 폐교하고자 할 때 폐교 1년 전에 폐교 사유를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 ▶ 폐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학령 또는 적령 아동 5인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할 때 다시 개교 ▶ 지방행정당국은 폐교한 날로부터 3년 간 교육정보와 시설을 포함한 제반 학교의 시설·설비를 유지, 관리, 활용해야 함
강만철 의	-
정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 농어촌학교운영지원기구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주민에게 공고 ▶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부모와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 폐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학령 또는 적령 아동 5인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할 때에는 다시 개교
최순영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농산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이윤석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에서 “동의를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사유로 통상적으로 인근의 다른 학교로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폐교 불가능” 추가

<표 2-23>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강기갑의원 의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의	▶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주민들에게 공고 ▶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만 실시
정진후의원 의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에서 “폐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학령 또는 적령 아동 5인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할 때에는 다시 개교” 추가

● 폐교 재산의 유지·관리 : 농산어촌 작은 학교 폐교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다음의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능(정지용 외 법률(안)). 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 ②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활동의 장, ③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숙박 및 취사의 장, ④ 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 및 성인학습과 이를 위한 숙식 및 취사의 장,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집회의 장, ⑥ 지역사회 주민조직체가 주관하는 공공사업 및 행사의 장
- 마을체험학교 운영 및 지원/마을체험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표 2-24>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폐교 재산의 유지·관리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 폐교된 학교시설은 지방교육행정당국과 지역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그 유지, 관리 및 활용 계획·수행 ▶ 폐교 시설은 다음의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능. 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 ②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활동의 장, ③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숙박 및 취사의 장, ④ 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 및 성인학습과 이를 위한 숙식 및 취사의 장,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집회의 장, ⑥ 지역사회 주민조직체가 주관하는 공공사업 및 행사의 장
강만철 의	-
정민석	▶ 폐교된 농어촌학교는 교육감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폐교시설의 유지,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 폐교시설 활용. 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②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와 문화사업, ③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숙박 및 취사, ④ 지역사회 주민조직체가 주관하는 공공사업 및 행사, ⑤ 기타 지역주민과 밀접한 교육·학술·문화사업 ▶ 폐교시설의 영리목적 사용 금지
최순영의원 의	▶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폐교 재산에 대한 폐교재산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주민 및 학부모 의견 존중 ▶ 교육감은 농산어촌의 폐교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마을체험학교(지역의 특산품, 자연환경,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 마을체험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지역 주민, 교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표 2-24>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이윤석의원 외	▶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폐교 재산에 대한 폐교재산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주민 및 학부모 의견 존중
장기갑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정진후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 공익근무요원 배정

-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표 2-25> 특별법에서의 공익근무요원 배정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외	-
강만철 외	<p><도서벽지공익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 : 도서벽지공익교원은 전문직공무원으로 함 ▶ 교육감은 도서벽지공익교원이 근무할 지역·기관을 지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도서벽지공익교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시도 내에서는 교육감이 행함 ▶ 공익교원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당해 근무지역 안에 거주해야 하며, 당해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됨 ▶ 교육 소집 기간 외에 3년 간 공익교원업무에 성실히 종사 ▶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민석	-
최순영의원 외	▶ 교육감은 제18조에 따른 학습보호시설의 운영 및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 가능.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이윤석의원 외	-
장기갑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병무청장은 교육감으로부터 농산어촌학교 자율학습시설 운영 및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받으면, 해당 지역마다 사범대학교 또는 교육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 및 교육학점 이수자 중에서 희망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진후의원 외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 예산의 확보 및 지원

- 경비 지원 : 농산어촌 학교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표 2-26>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학교 예산의 지원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용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함에 있어 학생수에 기준하기 보다는 학교수를 감안해야 함. 폐교 시설을 유지, 관리,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지원 ▶ 교육감은 각 학교에 운영비를 교부할 때에 학교의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음 ▶ 교육감은 학교의 폐교를 예상하여 예산을 차등 교부해서는 안됨
강만철 의	<p><교육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정착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 ▶ 농어촌 지역 학생의 특기·적성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 가능 <p><급식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하고 도서벽지 지역은 무료
정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급식비, ② 농어촌학교 재학생 통학을 위한 초·중·고 통합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③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시 입학금 및 학기 중 수업료, ④ 농어촌학교 재학생을 위한 학사 건립과 운영비, ⑤ 농어촌학교 교직원들의 우대조치에 따른 비용, ⑥ 농어촌학교가 주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드는 제반 경비,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최순영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① 학교 급식비, ②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운영비, ③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 ④ 농산어촌학교의 주민에 대한 도서실 등 시설 개방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 소요 경비, ⑤ 농산어촌학교의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윤석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①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운영비, ②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 ③ 농산어촌학교의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강기갑의원 의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의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정진후의원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비용 전부 지원. ①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교육활동비, 체험학습비, ② 학교급식비, ③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운영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①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 ② 주민에 대한 도서실 등 시설 개방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농어촌 작은 학교의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재원의 확보 : 농산어촌 학교의 유지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표 2-27> 특별법에서의 농산어촌 학교 예산의 확보 조항

구 분	주요내용
정지웅 의	-
강만철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교의 학교당 운영비는 표준운영비에 10%를 가산하여 배분 <p><농어촌교육 발전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 농어촌교육발전특별기금 설치 ▶ 조성 : 국가의 출연금,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관리 :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 ▶ 용도 : 농어촌 학생 복지 향상 및 학습력 제고를 위한 사업, 농어촌 근무 교직원의 후생복지 지원, 농어촌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기타 농어촌 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교부금 산정방식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 예산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최순영의원 의	▶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이윤석의원 의	▶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강기갑의원 의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영진의원 의	-
정진후의원 의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안과 동일

<김춘진의원 대표 발의안 :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구 분	주요내용
목 적	▶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교육의 장 실현 ▶ 모든 학습자는 학교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재정지원 등 차별 금지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20명 또는 6학급인 학교(이 경우 분교도 개별 학교로 보며, 특수학급은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 소규모 공동체학교란 소규모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서 이 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 ▶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전원(全員)으로 구성된 기구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을 신청하기로 의결하거나 학부모회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決議)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 ▶ 학부모회의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결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구 분	주요내용
<p>공립소규모 공동체학교 교원 공모 및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가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학교로 전근(轉勤)을 원하는 교원(이하 “공모교원팀”이라 한다)을 공모(公募)해야 함 ▶ 공모교원팀은 운영계획서 제출. ① 소규모 학교의 이름과 위치, ② 소규모 학교의 운영 목표 및 계획, ③ 교직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④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특수화된 교육과정, ⑤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모교원팀은 해당 학교 교원 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 공모 신청 가능 ▶ 해당 학교 학부모회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를 운영할 공모교원팀을 1회 이상의 공개설명회를 거쳐 선정,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p>공모교원팀 재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공모교원팀을 8년 단위로 재선정. 이 경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던 공모교원팀도 다시 응모 가능
<p>소규모공동체 학교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공립학교의 경우 공모교원팀 선정을 통보받은 때, 사립학교의 경우 지정신청을 한 때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
<p>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 가능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p>공모교원팀 근무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교원팀의 소규모 공동체학교 근무기간은 4년, 근무 기간 연장 가능 ▶ 교육감이 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의견 청취 ▶ 학부모 의견 반영 절차 등 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p>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과 공모교원팀 선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중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심의 :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 공모교원팀 선정과 근무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③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구 분	주요내용
소규모 공동체학교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음 ▶ 소규모 공동체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교원 정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원 초빙 가능
불이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권자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 당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전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 미적용 ▶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통학구역 또는 학군 미지정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는 최대 20명 ▶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교육감이 정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학생을 받을 수 있음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 가능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가능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위하여 교원에게 교육을 받거나 연수 기회 부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규모 공동체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평가 외의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소규모공동체 학교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들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 가능 ▶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가능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공동체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 가능

02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

가. 과거의 농어촌 교육 정책

□ 도서·벽지 개념 중심의 정책(1967~)

-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을 실현하고자 1967년 교육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도서·벽지 지역을 위해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도서·벽지 교육 정책은 국가 주도하에 학교시설·교실 구비, 교과서 무상공급, 통학 지원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 또한 해당 교원들에게 도서·벽지 수당 및 승진 가산점 부여하여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
 - 도서·벽지 지역 선정 시 지역 특수성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음

※ 도서벽지기준

(1967) 도서지구는 '섬'단위, 벽지·접적·수복·광산지구는 '리' 단위

(1985) 도서지역을 '섬'단위가 아닌 '리'단위로 전국 통일. 수복·광산지구는 벽지지역으로 포함

□ 농어촌발전대책(1994)으로서 교육 여건 개선 정책

- WTO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립한 농어촌발전대책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농어촌 생활환경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됨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급식 확대(1997년부터 100% 실시), 초등학교 컴퓨터 지원(1995년까지 전면 보급), 고교 육성 및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군 단위 고교 집중 육성, 농어촌근무교사 인사 상 우대 및 해외연수 확대(1994년 도입) 등의 노력이 '농어촌발전대책'에서 이루어짐(최경환·마상진, 2009)

<표 2-28> ‘농어촌발전대책’의 교육여건 개선 대책과 추진실태

기본방향	세부대책	추진실태
교육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개선 ▶ 공공도서관 건립 ▶ 초등학교 컴퓨터 지원 ▶ 통학버스 지원 ▶ 초등학교 급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부터 실시 ▶ 1995년부터 실시 ▶ 1993~1995년 전면 보급 ▶ 학교 통폐합 시 지원 ▶ 1997년 100% 실시
고교 육성 및 우수교사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단위 고교 집중 육성 ▶ 농촌근무교사 인사 상 우대 / 해외연수 확대 ▶ 농촌고교를 공립전문대학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부터 지원 ▶ 농촌지역 가산점 1994년 도입 ▶ 1996년 8개교 사업 추진
대학진학 기회확대 및 학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특별전형 허용 ▶ 농과계 동일계 대학진학 확대 ▶ 도·농 통합형 학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특례입학 실시 ▶ 중전 유치
교육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학비 지원 확대 ▶ 도시에 농촌 학생 기숙사 건립 ▶ 농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읍 및 일부 시 지역 포함 ▶ 1995년부터 도에 1개소씩 건립 ▶ 학기당 100만 원

※ 자료: 농림부(1997). 농정개혁백서. 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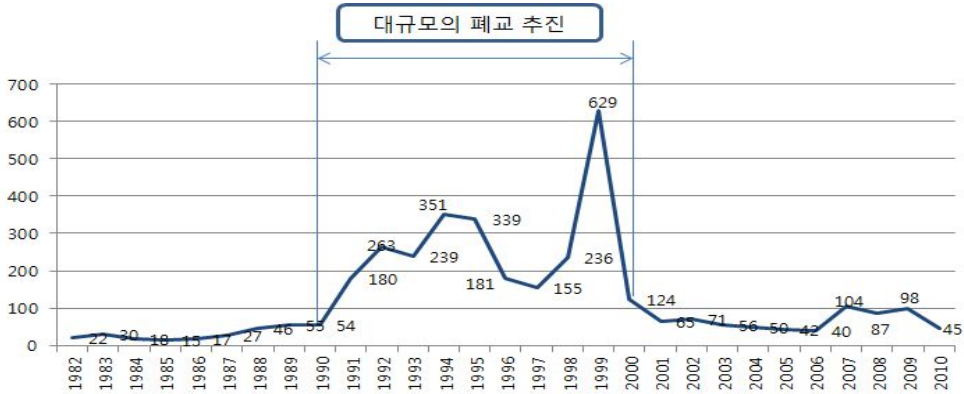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1982~)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인접 학교 간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제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1982년부터 추진되었음. 교육에 있어 규모화 논리를 적용하고 학생이 적어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측면에서 추진한 정책임
 - 2009년 8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은 2010년~2012년까지를 추진 시기로 정하고 학교 이 전·통폐합·재배치 종합대책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3년 동안 500개의 학교를 정책 대상 목표로 삼고 있음
 - 추진 배경은 교육적 논리로서 “소규모학교를 적정 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함”과 경제적 논리로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절감으로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음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추진 경과 : 총 5,452개교 통폐합

- 본교 폐지(1,313개교, 24.1%) + 분교장 폐지(2,328개교, 42.7%) + 분교장 개편(1,811개교, 33.2%)



【그림 2-1】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경과

- 현재까지 추진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기준, 학교 수, 지원 및 정책 주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9>와 같음(교육과학기술부, 2006-2009의 자료를 재구성)

<표 2-29>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

구분	통폐합 기준	정책 주체 및 지원	통폐합 학교수 (5,452개교)
1단계 1982 -1998	81년 9월 180명 기준 93년 9월 100명 권장 97년 8월 영세사학 해산 특례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영세 사학의 해산 특례 조항	3,743 개교
2단계 1999	98년 8월 100명 기준 제시	정부재정 지원(2,577억원) - 본교 폐지·통합운영(5억원) - 분교장 폐지(2억원) - 분교장 개편(2천만원)	971개교 (통폐합 피크)
3단계 2000 -2005	본교-학생수 100명 이하 분교장-학생수 20명 이하 1면 1본교 원칙 유지 중등학생 수 100명 이하	교육부 기준 제시 시도 교육청 자율 추진 통폐합 성과 과거에 비해 감소; 작 은학교 사례 출발	2000년 154개교 2001년 133개교 2002년 88개교 2003년 80개교 2004년 52개교 2005년 51개교
4단계 2006 -현재	2005년 국정현안조정회의 통폐합 추진 결정 2006년 60명 기준 제시 제외학교 : 도서 벽지 지역, 반대 심한 지역, 학생수 증 가 예상 지역, 시·군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중앙정부 통폐합 재추진 : 농산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수립 - 본교 폐지·통합운영(10억원) - 분교장 폐지(3억원) - 분교장 개편(2천만원)	2006년 42개교 2007년 108개교 2008년 91개교 2009년 103개교 2010년 50개교

※ 자료 : 이해영 외(2010).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p. 47.

<적정규모 학교 육성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1982년부터 추진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현재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이란 명칭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17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입법 예고 안의 적정규모 학교 조항은 다음과 같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안의 적정규모학교 조항>

- ▶ **초등학교는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6학급, 중·고등학교는 교원의 평균수업시수 및 교육과정의 단위별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학급으로 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이상** 되도록 기준 제시(안 제51조제2항)
- ▶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52조제2항)
- ▶ 학생수가 부족하여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입·전학)할 수 있도록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루어진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안 제21조제4항)
- ▶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최소학급 기준인 6학급미만으로 학급이 편성된 중학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6학급이상의 학급이 편성된 인근학교의 중학구(학교군 포함)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68조 제1항, 안 제73조 제7항)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기준이 될 것이란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의 문제 제기로 수정안을 다시 마련하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현행 초·중등학교 교당 20억원에서 향후 초등학교 30억원, 중·고등학교 교당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나(교육과학기술부, 2012.6.14. 보도자료), 실제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못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

- ▶ 최소 적정 규모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에 관한 조항에서 학교급별 학습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 시·도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절한 수업 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 국가와 시·도교육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르면 교육감이 학교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과부가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려는 의도는 교육감의 고유 업무를 침해(교육자치의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 거주하던 동일한 교육 조건과 질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나 이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최근의 농어촌 교육 정책

- 최근의 농어촌 교육 정책은 과거의 교육 정책과 달리 농어촌 교육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접근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임
-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되었던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가운데 중요하게 추진되었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봄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장기 대책의 교육여건 개선

- 2002년 3월 6일 출범한 농어업특위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발간한 특별대책보고서(2002)에서 농어업·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들이 검토되었음
- 검토 배경 : 이촌향도하는 세대의 상당수는 교육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의 자녀교육을 주목적으로 함. 도·농 간 학력격차는 상급학교 진학기회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농어촌 학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이촌향도를 부추김. 특히 학교의 발전이 농어촌 발전의 핵심임을 인식해야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표 2-3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장기 대책의 교육여건 개선 정책 과제

구 분	주요내용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내외의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교원 및 교과 과정을 협력·운영,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 학교군 형성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식수업 교재를 개발하고, 행정보조원 배치, 원격교육시스템 우선 설치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교과별 책임지도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인터넷 방송국 개설 ▶ 농어촌 학교 도서관 활성화
전공 상치교사 문제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사인력풀체 활용 ▶ 순회교사인력 확충 ▶ 지역사회 전문가를 해당분야의 교원요원으로 활용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실습·교과 과정에 농어촌 학교 실습·교과지도 과정을 필수요건으로 정함
농어촌 학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교 교직원 사택 제공 ▶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 등 농어촌 근무수당 신설 및 현실화 ▶ 농어촌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 제도 및 장기근속자 우대 ▶ 농어촌 근무교사를 위한 해외 선진 농어촌 연수 프로그램 운영

<표 2-30> 계 속

구 분	주요내용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 확대 및 장학금 지원 : 해당 도의 농어촌 학교에서 일정 기간 근무 ▶ 도서·벽지 초등학교 병역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대체 복무 ▶ 졸업 후 농어촌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의 교육·사범계 대학 특례 입학제도 및 교사 우선 임용 제도 도입
농어촌 학교의 학교 급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이외의 중·고등학교에도 급식비 확대·지원
농어촌 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 특기적성 교육강사 풀제 운영
통학버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 ▶ 농어촌 공용버스 운영과 연계 : 농어촌 주민들이 교통불편문제 해소
교육비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모든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및 유치원 연장반·종일반 운영비 지원 ▶ 농어촌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확대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규모 확대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육성 : 시설개선비와 학습자료구입비 지원
대학 특례입학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모집비율 확대 ▶ 졸업 후 농어촌 근무를 희망하는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도 운영(졸업 후 농어촌 지역 우선 임용) ▶ 농수산고 졸업생에 대한 농수산계 대학 특별전형 비율 확대
농어촌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에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여 실비로 제공
대학 입학 시 지역할당제 도입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입학정원 내에서 지역별(도 또는 시·군)로 일정 비율의 입학정원 설정·운영토록 권장 : 지역할당제 도입 대학은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지방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에게 할당하거나 가산점 부여 검토
농어촌 학교의 지역 종합교육문화센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단위 초·중등학교를 지역의 종합교육·문화센터로 활용하여 주민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교시설의 활용도 높임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 등으로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 도모
폐교를 지역 주민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교시설을 지역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 마을 도서실, 놀이방, 건강관리실 등과 같은 주민 복지시설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최근 농어촌 교육 정책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제정과 함께 추진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음. 삶의 질 기본 계획은 농어촌 교육을 농어촌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전체의 삶의 질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관련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긍정적인

-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2005~2009) :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과제 중심의 우수고교 육성, 농산어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급식비 지원, 우수 교원 확보 등
-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2010~2014) : 농산어촌 전원학교 및 연중돌봄학교 육성, 농어촌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숙형 학교 확대,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우수영어공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사이버 가정학습 등

<표 2-31>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추진과제	세부내용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 연중돌봄학교 육성 ▶ 농어촌 적정규모 학교 육성 ▶ 기숙형 학교 확대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공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강화 ▶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유치 ▶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 용자 확대 ▶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확대 ▶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주 : 밑줄 친 사업은 제 2차 기본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임.

※ 자료: 재정경제부 등(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 재구성

□ 농산어촌 학교 운영 및 집중 육성 정책

- 통합운영학교 :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인·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교를 의미함. 학교 운영의 효율성 저하,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과 운영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됨
- 2010년 4월 기준 전국 102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추가 50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초중통합: 45개교, 중고통합: 51개교, 초중고통합: 6개교
- 예산은 연간 15억 규모이며, 기본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1천만원, 특별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2~3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음

-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 :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우수인재 도시유출방지 및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농산어촌 고교의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됨
 -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은 전국 86개교가 운영되었으며 사업이 시행되었던 2004~2009년까지 총 1,619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됨
 - 전국 86개교 중 42%인 36개교가 201명~400명인 학교였으며, 86%인 74개교는 읍지역, 14%인 12개교는 면지역이었음
 - 총 1,619억원의 예산 중 대부분이 건축 개보수에 60%, 기자재 구입 14%, 프로그램운영 및 개발 13%, 장학금 5.6% 등에 사용됨

□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적 접근 정책

- 정부는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교육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은 전원학교와 연중돌봄 학교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농산어촌 교육 및 학교에 투입되고 있음
- 연중돌봄학교 사업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산어촌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및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 안전망 구축, 기초학력신장, 심리정서발달, 사회·문화적 소양 증진 등을 목표로 추진됨
 - 2011년까지 총 806억원이 투입되어 전국 383개교 33,862명에게 지원. 먼단 위 208개교(55%) 중 45.3%에 달하는 160개교가 60명 미만의 학교임
 - 사업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 심리·정서 발달 프로그램, 사회적·문화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사업지원 등의 영역으로 구분·지원하였음
 - 기본생활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은 급식지원, 학교 준비물 지원, 학교 취학 지원, 등하교 지원, 보육·돌봄교실, 보건·의료 지원, 장애학생 지원, 부모교육, 다문화·저소득층가정 지원이 있음
 -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은 기초학력 보장, 읽기·쓰기·셈하기, 개인별 지도, 학습부진 원인 진단 및 학습법 지도가 있으며, 심리·정서발달 프로그램 영역으로는 위기학생 진단, 성격·정서 특성, 인성계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이 있음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전원학교 사업 : 전원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형 농어촌 학교 육성 모델을 지칭하며,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시설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육성을 목표로 추진됨
 - 2011년 기준 140여 개교 1,508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 소규모 단위의 학급이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의 내실화와 방과후 학교 운영의 특성화 등을 위해 자율학교(97%)를 지정함
 - 2011년 기준 전국 140여개의 학교가 지정되었으며, 1,508억의 예산이 투입됨. 2011년 추가 지정된 학교는 30개교임
 - ※ 초등학교 77개, 중학교 63개(11) (단, 2011년에 지정된 30개교는 모두 중학교임)
 - ※ 지역별 학교수('11년 기준) : 충남(22), 전남(22), 경기(21), 경남(19) 등
 - 전원학교의 유형으로는 종합 지원학교(A Type), 시설비 지원학교(B Type), 프로그램 지원학교(C Type)가 있으며, 전체 50%가 A Type에 속함
 - ※ 유형별 학교수('10년 기준) : A Type(55), B Type(33), C Type(22)
 -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특성화교육과정프로그램(체험, 조사, 탐구, 토론 등), 지역연계프로그램, 연중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운영함. 연중돌봄학교의 종료에 따라 제2차 전원학교 육성 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
- 기숙형 공립고 사업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기숙형 공립고 사업은 농산어촌을 포함한 낙후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됨
 - 전국 일반계 공립고 82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면지역에 있는 10개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군·읍 지역의 학교들이 추진하고 있음
 - 기숙사 건립을 위해 학교별 평균 38억원, 2008년 3,200여억원을 지원함
 - 사업은 기숙사 건립 지원만이 아니라 방과후·주말·방학 중 프로그램, 기숙사 연계프로그램, 리더십과 인성함양 프로그램, 독서력, 영어능력, 학습심화 보충반, 1인1악기, 1인1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교육복지 지원 사업
 -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1981~) : 48만명, 2,528억원(초등 1,900원, 중등 2,700원)
 -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2007~) : 한국어·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 다문화 이해교육, 외국어 교육 등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강사로 활용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2009~) : 원어민 영어봉사 장학생을 초청하여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을 배우게 함으로써 영어 교육 격차 해소 및 친한(親韓) 인재 육성
-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2008~2011) :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별·계층별 영어 교육 격차 해소. 16개 시·도교육청 2억 균등 배분
-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사업(2009~2011) : 원어민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도서벽지, 교육복지우선지역 초·중·고에 IT 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실시

다.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 분석

□ 40여년 전 적용하던 도서·벽지의 개념

- 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에 특정지역을 한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의 도서·벽지에 대한 정의가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즉 시대가 변하여 도서·벽지의 개념이 현재는 모호함
- 특히 산업화·도시화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도·농간의 격차에 따라 황폐화되고 있는 농산어촌이 새로운 벽지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개념에 머물러 있어 농산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로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책의 모순 : 소규모 학교 통폐합 vs 교육복지 정책

- 1982년부터 추진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2010년 현재 5,452개교가 통폐합되었음. 현재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이란 명칭으로 2012년까지 3년 동안 500개의 학교를 통폐합의 정책 대상 목표로 삼고 있음
- 반면에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사업, 기숙형 공립고 사업 등과 함께, 연중돌봄 학교 사업, 전원학교 사업 등 정부의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적 접근 정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즉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는 상황과 함께,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공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논리의 문제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①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 복식수업이 불가피하고, 적정 규모의 또래집단 부재로 학습동기가 저하되어 교수-학습의 효과가 떨어짐, ② 교육재정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 ③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급증은 지역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이혜영 외, 2010).
- 첫째+둘째는 교과부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로서 1980년대 초 급격한 이농현상이라는 상황에서 개발된 것인데 그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교과부가 사용하는 교육적 논리는 실제 도·농 간 학력 격차를 통폐합 논리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격차가 학교 격차인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이 없으며, 실제 통폐합되면 면 소재 학교에서 읍 소재학교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실증할 읍·면 격차 분석은 없으며, 진취성이나 협동성에 관한 논리도 실증적 근거가 없음. 더욱이 이농에 따른 인구감소-학생감소로 인한 통폐합 정책 논리에는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주 지역 학교에서 읍 지역 학교로의 '예비적 진출' 등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 이에 비하여 셋째의 지적은 그동안 30여 년 동안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통폐합'이라는 정책 전제하에서 투자 차별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학습권과 주민의 생활권 침해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논리들임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모델의 단순과 진화 모형 부재

- '초창기의 정책 방향에서 설정된 '분교 폐지 → 분교장 개편 → 분교 폐지'라는 행정 작용만으로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학교 운영 재정의 효율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모델이 단순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였

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 모델로는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가 될 수 없어 도시로의 이탈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임

- 한편, 양병우 외(2005)는 정부의 농촌 교육 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시대마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있음. 그에 따르면 현재는 통합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정책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32> 농촌 교육 정책의 시대별 특성 및 취약점

시기별 관점	교육 특성	취 약 점
산업 교육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공교육 및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과 농업발전 지향의 교육 ▶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을 위한 농업계 학교 교육 ▶ 농촌사회의 의식구조변화 및 근대화 지향적인 계몽교육(새마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벽지, 접적지역 등의 교육문제에 한정 ▶ 농산어촌 교육 진흥 및 발전보다는 경제 발전론적 진흥교육에 치중
교육 재정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사회성과 협동성 저해 등의 요인 해소 ▶ 학교 운영체계의 효율화와 합리화 ▶ 교육수요 및 공급측면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적 학교경영(학생수) 기준 적용으로 인한 지역반발 ▶ 작은 학교 혹은 농촌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도농 교육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시설,복식·상치수업 등)개선 ▶ 학교운영(교사인사·재정 등) 합리화 ▶ 농촌지역의 교육(유아·학생)복지 개선 ▶ 통폐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교육문제의 발생 원인을 도·농간 교육격차로 이해 ▶ 사회구조적인 접근 결여

※ 자료 : 양병우·양병찬·송병주·이미영·송승용·차동욱·백승우·이소영(2005). “농산어촌 교육살리기 방안

연구”. 전북교육청·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p. 125.

□ 경제적 편익의 문제

- `근시적 교육재정 효율화 전략
 -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줄어드는 경비와는 대조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 편익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함
 - 교과부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재정 효율화는 실제 현상과 거시적 안목으로 살펴보면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일차적으로 농산어촌 학교가 통폐합되어 재정의 투입을 줄였다고 하지만, 그

영향으로 도시 지역에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게 되어 한 쪽에서 아끼면 다른 한 쪽에서는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가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면지역 통폐합 → 읍 지역 과밀 + 군 지역 학교 통합 → 시 지역 학교 신설 : 경기도는 전국의 도농 관계 역학의 축소판인데, 학교 통폐합 정책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7개의 학교를 통폐합시켰고, 2011년 2개 학교를 더 통폐합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반면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신설된 학교는 총 270개로 나타남

● 폐교 이후의 농촌 재생을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경비의 산정

-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거시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
-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이익과 농림수산 식품부의 지역재생 사업(농촌발전종합계획, 귀농귀촌지원사업, 도시민농촌 유치지원사업, 농업인턴사업, 농산촌유학지원사업 등)에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농촌발전종합계획은 몇 개 마을에 5년 동안 40~70억원 정도의 포괄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양병찬(2008: 133)은 “당시 교육부의 분석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55개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4,486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1,126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며, 236억원의 폐교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등 총 5,848억원의 교육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재정 절감 목표가 산술적으로 충실히 달성되었다고 해도 정부는 다른 한편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45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겠다고 공표하고 있으면서 그 예산의 1%가 조금 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3,000 여개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2002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농어촌교육 발전을 위해 2조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지적하였음

제3장 농어촌 학교 통폐합 현황 및 효과 분석

1. 외국 농어촌 학교 통폐합 규모와 교육효과
2.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측면
3.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측면

제 3 장

농어촌 학교 통폐합 현황 및 효과분석

01 외국 농어촌 학교 통폐합 규모와 교육효과

□ 소규모 학교 통합(Consolidation)의 시작

- 1800년대 중반까지 : 통합을 통해 보다 철저한 교육(more thorough education)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
- 도로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도시로의 이동이 보다 간편해지고,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면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중앙집중식 교육 모형 선호되면서 대규모 학교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규모의 경제 논리가 팽배해지기 시작함. 이에 따라 도시의 대규모 학교 (urban and larger school)를 유일한 최적 모형(one best model)으로 여겨지고 농촌의 소규모 학교는 무언가 극복되어야 할 결핍모형(deficient model)으로 생각되어짐
- 또한, 최근 경제불황이 길어지면서 국가적으로 교육부문에서의 재정 감축이 대세. 이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화 측면이 강조되면서 폐교 정책이 주류를 이루지만, 소규모 통폐합이 해당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효과적인 정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 북미(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주마다(자치단체마다) 각기 자율적으로 추진하지만 대체로 교육재정 효율화와 학생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폐교를 추진하고 있음. 미국

의 경우 넓은 농촌지역을 가지고 있는 아칸사스,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터키, 메인,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몬타나, 네바다, 버몬트, 뉴욕, 와싱턴 등의 주에서 추진되고 있음

- 미 뉴욕주는 학교 통폐합 이후 5년간, 운영비의 40%까지 증액 지원하고, 그 이후 9년간에도 추가 지원. 여기에 더해 학교 건물관련 보조를 10년간 30% 증액하여 지원
- 미 메인주는 2,500명이하의 교육구에 대한 통폐합을 법률(2007년)로 통과시킴. 그 이후 3년간 학교구수가 반으로 줄어듦.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이 버몬트, 아칸사스 주에서도 통과됨
-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소규모 학교 연합 단체 등에서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음
 - 이들은 학교 통폐합이 오히려 재정 감소 효과가 없을 뿐(규모화된 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증가)아니라, 농촌 아동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증가 및 출석일수 감소, 교육기회 감소, 농촌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 감소(교사와의 유대관계 단절) 및 자녀 교육비(통학비) 증가, 폐교로 인한 이농과 지역사회 붕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적정(appropriateness of size)에 대한 논의 시작

-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는 Conant(1959)⁶가 발표한 대입준비 교육과정은 최소한 100명이 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촉발됨
-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소규모 고등학교 통폐합은 비용효과성, 교육효과성을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학교 통폐합 연구가 가속화됨
- 학교 통폐합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면서 정치가, 대학교수, 그리고 재정수익에 흥미 있는 민간 기업 역시 학교 통폐합의 효과성을 지지하고 나섬. 한 예로 학교 통폐합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대규모 스쿨버스 생산 업체는 학교 통폐합의 적극적 지지자였음. 이러한 통폐합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업(버스, 건설업, 최근에는 IT 관련 업체도 추가)과 정부 간의 정책(사업) 연계는 지금까지도 암

6) Conant, James. (1959). The American high school today: A first report to interested citizens. New York: McGraw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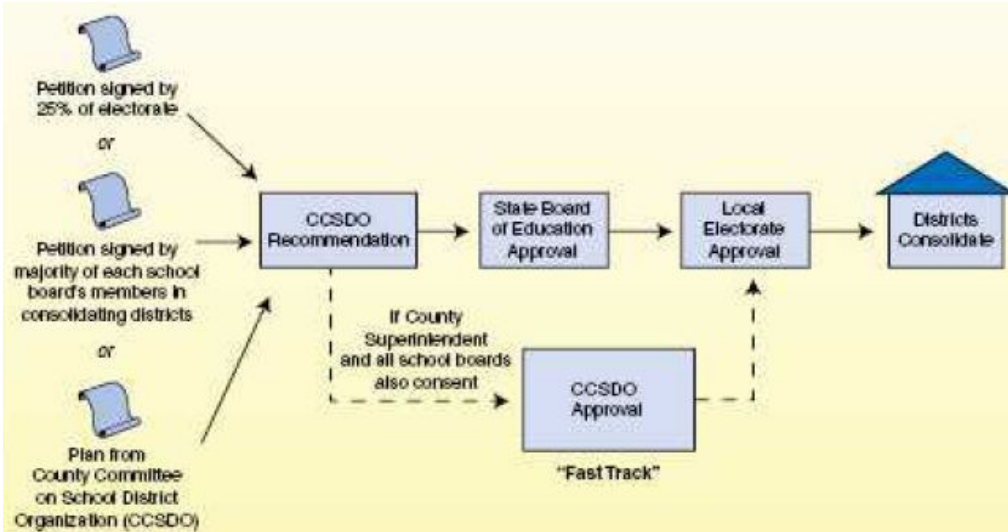
암리에 지속되고 있음

- 학교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확산은 영미의 냉전시기에 우주 전쟁에서 촉발된 국가 간 경쟁 심화도 한몫을 함. 대도시 학교에 비해 대부분 농촌 소규모 학교는 국가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원(human capital) 양성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이었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보다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임
- 1970~80년대 농촌 지역의 경제 침체 역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했음. 농촌 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학생수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촌 학교의 교육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졌음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방향

- 중앙 차원의 결정에 의해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학교의 통폐합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함
- 통폐합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최소한 학교 부지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장은 둘이 하나보다 나은지를 결정하는 모든 변인들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미국의 농촌교육협회(National Rural Education Association)권고 사항)
 - 소규모 학교를 지켜내는 데에는 학교와 사회의 강한 연대가 필수적임
 - 교육적, 재정적, 지역사회적 유·불리한 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통폐합이 결정되어야 함
 - 아직까지 정부가 통폐합을 밀어부칠 만한 명백하고 타당한 근거는 없음(Sher, 1988)
-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충돌 속에서 이들 국가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나름의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충분한 학교 통폐합이 이뤄졌다는 판단(1950년대부터 시작된 학교 통폐합 촉진 정책을 통해, 지난 60년간 학교구수가 반으로 줄음)하에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학교구(school district)의 통폐합 권한을 지역사회위원회(County Committee on School District

Organization: CCSDO)에 일임하고 있음. 최근에는 대체로 작은 학교구와 학교를 유지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advantage)를 받고, 통폐합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림 3-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학교구 조정의 절차

- 스코틀랜드의 School Consultation Scotland Act 2010: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대한 공식적인 자문을 활성화한 법으로 여기에는 농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특히 폐교에 직면한 농촌 지역에 대하여 ① 학교 통폐합에 대응한 실현가능한 대안은 고려되었는가, ② 학교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는가, ③ 통학과 관련한 학생들의 변화와 그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고려되었는가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농촌 학교에 대한 폐교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정부와 협약하여 직접 운영하는 학교형태로 국내에서는 협약학교, 현장학교 등으로 불려짐.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교과과정, 예산집행 등을 교육당국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수행. 1991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현재 미국내 대부분의 주에서 그리고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고 농촌학교의 대안적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소규모 학교 통합과 관련된 초기 연구

- 대다수 도시 중심, 산업화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려 하기 보다는 통폐합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 이루어졌음(Sher, 1992)⁷
- 통폐합 관련한 초기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대규모 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지는 못했음

□ 소규모 학교의 장점에 지지하는 연구

- 소규모 학교의 장점에 대한 지지하는 연구의 단초는 1950년부터 ‘지리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소규모 학교(necessarily existent small school by virtue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에 대한 논의⁸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생산된 것은 1980년대부터임
 - Nachtigal(1982)⁸: 소규모 학교는 큰 학교가 가지지 못하는 장점을 가짐.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낮은 학생/교사 비율로 인한 교사로 부터의 학생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학생들의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 등을 지적함. 학교가 커지면서 학교는 더 많은 주민들의 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커짐
 - Ilvento(1990)⁹: 농촌의 공립학교는 사회·경제적으로 농촌에 있어 중요함. 사회적으로 농촌 학교는 유일한 사회활동의 공간이고, 경제적으로 농촌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임. 따라서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도록 국가 교육과정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Fox(1981)¹⁰: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비용 함수를 구명함(education cost as a

7) Sher, Jonathan (1992). *Education in Rural america: A reassessment of conventional wisdom*, Boulder, CO: Westview Press.

8) Nachtigal, Paul, (Ed.) (1982). *In search of a better way*. Boulder, CO: Westview Press.

9) Ilvento, T.W. (1990). In Luloff, A., & Swanson, L. (Eds.) *Education and community*. Boulder: Westview Press.

10) Fox, W.F. (1981). *Reviewing economies of size in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unction of school size). 매우 작은 학교와 매우 큰 학교 모두 고비용 구조를 보인다는 U자형 함수를 구명(U-shape curve)

- 이에 따라 도시의 대규모 학교는 비인간적 풍토(impersonal climate)를 창출하여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 실패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 학교의 교장(행정가)들은 "학교안의 작은 학교 (Schools within schools)"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함

□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의 주요 결론(Bard, J. 2005)¹¹

- 지금까지의 통폐합에 따른 교육적 재정적 결과는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The educational and financial results of state mandated school district consolidations do not meet legislated expectations)
- 이상적인 학교 규모는 없다.(There is no "ideal" size for schools or districts)
- 규모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효과적인 학교는 모든 규모에서 가능하다.("Size" does not guarantee success - effective schools come in all sizes)
- 작은 규모가 학업성취도, 정의적 성장, 사회적 성과가 더 높다.(Smaller districts have higher achievement, affective and social outcomes)
- 학교구가 커질수록 비본질적이고 이차적인 활동에 자원이 낭비된다.(The larger a district becomes, the more resources are devoted to secondary or non-essential activities)
- 학교 행정가들은 소규모 초등학교를 단순히 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Local school officials should be wary of merging several smaller elementary schools, at least if the goal is improved performance)
- 폐교이후 탈농촌, 인구 감소, 이웃관계 악화가 가속화되고, 공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는 감소한다.(After a school closure, out migration, population decline, and neighborhood deterioration are set in motion, and support for public education diminishes)

Finance, 6, 3, 273-296.

11) Bard, J., Gardner, C., & Wieland, R. 2005. *Rural School Consolidation Report*. National Rural Education Association.

- 폐교가 교육을 개선할 것이고, 비용 효과성을 높이고, 질을 도모할 것이라는 확고한 근거가 없다.(There is no solid foundation for the belief that eliminating school districts will improve education, enhance cost-effectiveness or promote equality)
- 저소득지역 아이들은 작은 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다.(Students from low income areas have better achievement in small schools)
- 최근의 농촌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다음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당국에서는 지난 기간 동안의 학교 통폐합으로 거둘 수 있는 각종 재정 감소 및 교육적 효과는 이미 다 거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 매우 피폐해진 일부지역은 학교가 없어질 경우 지역사회가 붕괴될 처지에 놓여있음. 이들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통폐합에 의한 재정 감소 효과는 해당 학교에 국한할 때는 유효하지만, 지역사회 전체(지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학교 통폐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함
 - 학교 통폐합 또는 폐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됨.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판단에 맡겨야 함
 - 또한 교육재정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교육여건이 힘든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과의 자원공유 활성화
 - 농촌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는 공공/민간의 중간지원조직(intermediate unit) 지원
 - 경험 있는 교사들이 농촌 학교에 유지/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원격교육 활성화
 - 농촌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 교육재정 효율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규모화된 학교 분화(deconsolidation) 정책을 고려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탐색)해볼 필요가 있음

02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측면

□ 농어촌 학교의 교육 현실

“최근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으로 강원지역 학생의 통학거리가 최소 3km에서 최대 30.3km까지 멀어졌다.”(여성신문, 2008. 12. 5)

-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21개의 면지역에 초등학교 본교가 없으며, 분교조차 없는 곳은 14개의 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1982년에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면이 2개 지역이었으나, 2010년 현재 35개 지역으로 1,650% 증가한 수치임

<표 3-1> 초등학교가 없는 면 지역 (단위 : 곳)

구 분	1982	1992	2002	2010
초등학교 본교가 없는 면지역	1	2	15	21
분교 포함하여 초등학교 없는 면지역	1	2	8	14

※ 자료: 김춘진 의원실(2010).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소규모 공동체학교-교장공모제를 넘어 교원팀 공모제로-.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p.14-15 참조하여 재구성.

- 초등학교 통학 버스를 기다리고 몇 십 분 거리의 학교와 집을 오고가게 됨으로써 들게 되는 피로감과 그에 따라 학습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함
- 과소지역에 살고 있으니 학교가 없는 지역이 되어도 지역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하며, 인근 학교에 전학을 가도록 조장하거나 학교 통폐합을 강요할 권리는 국가에게 없음. 이는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국가의 공교육 책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임. 따라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교육 여건을 향유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함

가. 농어촌 학교의 교육적 필요성

□ 학습권적 관점

-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정책 요청
 - 1985년 유네스코의 「학습권리(Right to Learn)」(읽고 쓸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권리, 상상하고 창작할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쓸 권리, 교육 자원에 접근할 권리, 개인 및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권리)에서 교육 자원에 접근할 권리에 학교 통학 거리는 권리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함

▶ 우리나라 법적 근거로 우선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어디에 살든 동일한 교육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그 교육의 질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련법의 취지임
- 국가는 모든 지역의 생활 조건을 ‘등가치적’으로 확립해야
 - 독일은 1949년 기본법(헌법에 해당)에서,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 조건 확립'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2000년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 Standard)'을 운영 중임
 - 영국은 이에 근거하여 2010년까지 모든 농촌 지역 학교에 핵심적인 확대 서비스 및 활동(extended services and activities)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8년 3월까지 2,500개의 Sure start children center를 설립하였음¹²⁾

12) 영국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이다. 11개 분야 51개 서비스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며, 매년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보 통학거리가 4.2km를 넘으면 학교 간 통합을 억제하고, 학교의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최근 농식품부가 정책화하고 있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 standard)에서 농촌 ‘절대 학교’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송미령 외, 2009; 김광선 외, 2010)

□ 교육공동체적 관점

●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

- 일본 학교 혁신 사례들을 실천적으로 연구한 사토 마나부(2006)는 ‘배움의 공동체’의 비전과 철학을 제창하였고 일본의 학교들과 교육위원회(한국의 교육청에 해당)에서 도입되고 있음
- 그는 배움의 공동체를 주창하면서 “지방분권화와 규제완화에 의해 학교는 자율성을 형성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주어지고 있다. 이 조건을 살려 학교를 ‘배움의 공동체’로 재구축하는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란 아이들이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학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가로서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학교를 의미하고 학부모와 시민이 교육활동에 참가하여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009: 18)
- 그는 또한 21세기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와 교육의 센터가 되어야 하며,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 만들기는 가장 유망한 학교개혁의 비전을 제공한다고 주장함(2009: 19)
- 조동섭(2011)도 학습공동체 학교를 주창하면서 전문학습공동체 학교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하는데,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협동 작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운영 전략을 강구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웅거의 실천공동체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실천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s)라는 용어는 Lave와 Wenger(1991)의 저서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에서 처음 사용되었음
- 실천공동체는 “공통의 관심영역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실천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관심영역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을 공유·심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Wenger & Snyder, 2002),¹³ 작은학교에서 교육의 이상을 실현해보고 하는 교사들이 집단적 비전 공유와 실천 활

동을 통한 전문성 심화에 적합한 논리로 여겨짐

- 작은학교 교육연대 소규모학교들의 실천적 지향점
 - 2000년 이후 남한산초를 비롯한 거산분교 등의 실천에 참여하였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2005년에 결성된 작은학교 교육연대는 교육공동체 학교를 실천적 목적으로 삼고 있음
 - 작은학교 교육연대의 소규모학교들은 이러한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를 지향하며, 이들 교사모임은 주로 교육과정에서의 협동적 작업을 작은학교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지역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
 - 작은 학교의 과제(하는 일)
 - ① 비교육적 학교문화를 타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일
 - ② 작은 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하는 일
 - ③ 지역사회와 학교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일
 - ④ 작은 학교 회원학교 간의 연대와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 작은 학교교육연대가 추구하는 학교개혁운동은
 - ① 실천적 학교개혁 운동을 통해 미래 교육의 답을 찾습니다.
 - ② 소외된 곳으로부터 학교 교육의 희망을 다시 찾습니다.
 - ③ 거점학교에서 성공적 사례를 만들고 네트워크 운동을 통해 확산합니다.
 - ④ 공립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개혁 모델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찾아갑니다.
 - ⑤ 자발적인 /교사들의 공동 실천과 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13) 이는 구성원들의 개별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비형식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실천공동체의 활동은 조직과 구성원에게 다양한 복잡한 방법으로 유익한 가치를 창조한다. 단기적으로는 즉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장기적인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실행을 개발하게 한다.

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역효과

- 본 절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이혜영 외, 2009)'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과로서 교육 효과를 분석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어떠한 교육적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함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교육 효과 분석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교육 효과 분석 틀
 - 교육효과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학교생활 만족도의 3가지로 구분함.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분석하기 위해 통폐합 이후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등이 변화한 정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조사함
 - 정의적 영역에서는 통폐합 전후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회성·협동성, 학교생활에서의 적극성을 조사함. 이와 함께 교사를 대상으로 폐교에서 전학 온 학생들의 학교 적응 수준과 행동 특성 등을 조사함
 -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폐합 전후의 교육과정, 수업, 교사, 학교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조사함. 이와 함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통학 수단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표 3-2>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교육 효과 분석 틀

대상	교육효과	분석자료	분석내용	분석방법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장	인지적 영역 : 학업성취도	▶ 통폐합 본교로 전학 온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조사를 통해 통폐합 전후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비교	▶ 배경변인별 응답 차이 분석 ▶ 카이제곱검증, t-test, 분산분석
	정의적 영역 : 사회성, 협동성		▶ 통폐합 전후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교과외 활동 및 학교생사 참여 수준, 교육활동에서 교우들과의 협동수준 비교	
	학교생활 만족도		▶ 폐교 후 통폐합 본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폐합 전후의 학교만족도(교육과정, 수업, 학교시설 등) 조사	
			▶ 통학수단과 여건에 대한 만족도	

1) 학생의 교육성취

• 수업 참여와 이해도

- 수업의 참여와 이해도에서 '전학 온 이후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문항에 대해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70.9%)을 보인 반면에 중학교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부정적인 응답(68.4%)을 보인 학생들이 많음
- 또한 '전학 온 이후로 수업 시간에 발표나 질문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문항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긍정적인 응답(61.4%)을 보인 반면에 중학교 학생들은 부정적인 응답(73.7%)을 보임. '전학 온 이후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초등은 긍정적인 응답(74.3%)이 많이 나온 반면 중등은 부정적인 응답(62.5%)이 많이 나옴
- 폐교에서 옮겨 온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대해 통합 본교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폐교에서 전학 온 학생들은 기존 학생들에 비해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높다', '폐교에서 전학 온 학생들은 기존 학생들에 비해 수업 시간에 발표나 질문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 '폐교에서 전학 온 학생들은 기존 학생들에 비해 수업 이해도가 높다'는 응답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응답함(각각 69%, 79.5%, 77.9%). 즉 교사들은 폐교에서 옮겨온 학생들을 별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학습동기와 학업성취

- 전학 온 이후 학습동기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물었을 때, 학생과 학부모는 긍정적인 응답(각각 67.2%, 62.2%)을 보인데 반해 교사들은 부정적인 응답(75.5%)을 보임
- 전학 온 이후 학업성적 향상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물었을 때, 학생과 학부모는 긍정적인 응답(각각 60.9%, 57%)을 보인데 반해 교사들은 부정적인 응답(65.5%)을 보임. 하지만 학생 학부모의 응답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의 응답들 간 차이가 존재하며 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은 긍정적인 응답(각각 72%, 65.6%)을 보인 반면에 중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은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각각 62%, 60.6%)

2) 학교 운영

• 교육과정

- 통폐합 이후 교육과정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방과 후 교육, 체험학습, 학교행사 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의 인식을 조사하였을 때
- 학생들은 ‘전학 온 이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소질 계발이나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전학 온 이후 현장견학, 음악회, 전시회 관람 등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더 자주 있다’, ‘전학 온 이후 방과 후 활동 시간이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보다 재미있다’는 문항들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에 중학교 학생들은 부정적인 응답(각각 56.1%, 55.1%, 56%)을 보임
- 학부모들도 ‘전학 온 이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의 소질 계발이나 학력 향상에 도움 여부’, ‘현장견학, 음악회, 전시회 관람 활동 기회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중학교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응답(52.6%, 56.9%)을 보임
- 그리고 통폐합 이후 교육과정에 대해 교장 및 교사에게 물었을 때, ‘통폐합 이후 특별활동, 재량활동 시간의 효과적 운영’, ‘통폐합 이후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통폐합 이후 운동회, 학예회 등의 학교행사의 활성화’, ‘통폐합 이후 체험학습의 기회 여부’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수업

- 통폐합 이후 수업에 대해 ‘통폐합 이후 학생 수 증가로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수 학습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문항에 대해 학교장과 교사 모두 부정적인 응답(각각 60.3%, 63.2%)을 보임
- 또한, ‘통폐합 이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재와 교구가 다양해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교장과 교사 모두 부정적인 응답(각각 51.5%, 62%)을 보임

3) 시사점

•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간 응답 차이의 원인 규명

- 통폐합 이후 학생의 교육성취(수업 참여와 이해도,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 및 학교 운영(교육과정, 수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는 긍정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지만,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교장 및 교사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초등-중등 학교 급 간의 응답 차이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질적 검토 요청
 -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성취 및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지만 교장 및 교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이는 학생 및 학부모는 폐교 전 학교와 후 학교인데 반해 교장 및 교감은 같은 학교에서 통폐합 전과 후를 비교한 것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 하지만 통폐합 후의 교육성취 및 학교 운영에 대해 교장 교감 모두 거의 모든 문항들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효과를 질적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자체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함을 시사함

다. 농어촌 학교의 교육적 효과

□ 1:1 맞춤형 교육 및 수업 방법의 혁신

-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인한 1:1 맞춤형 교육 가능
 -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에서는 소규모 학교, 소인수 학급으로 인한 복식수업, 비전공자 수업 등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업의 질 담보 어려움을 주장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적 논리를 펼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복식수업, 비전공자 수업 등에 대한 제도·시스템·프로그램적 지원이 없는 교육 행정 체계에 기인하는 것이지 작은 학교와 같이 학교 규모가 절대적으로 비교육적 요인이 될 수는 없음. 즉, 제도·시스템·프로그램적 보완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문제임
 - 대부분의 농어촌 작은 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적게는 5명부터 많아도 15~18명 내외의 소인수 학급으로 구성됨. 따라서 도시의 대규모 학교들에 비해 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관심 분산을 막을 수 있으며, 학생의 자질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함
- “작은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와 학생의 일대일 관계 맺음이 잘되고 있다

는 점입니다.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에 대해 '우리를 이해해 주는 어른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교사와 지내며 '많은 학생 중 한 명'으로 대접 받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김성천·박성만·이광호·이진철(2010). 학교를 바꾸다. 우리교육

●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 방법 혁신

- 1시간 20분 수업하고 30분 쉬는 활동 중심의 블록 수업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에 따른 활동 중심의 학습을 촉진함. 또한 과학, 실과, 사회·도덕, 음악·미술 등의 관련성 있는 교과를 통합함. 이를 통해 토론 수업, 실험 및 체험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이 가능해졌고, 또한 수업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 수업은 수업 대로 집중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놀이 활동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옴
- 프로젝트 학습은 전 교과에서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교과통합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협동심, 창의적 사고력을 기름. 학급 현장학습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주제에 맞게 진행됨. 주로 소집단 활동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며 교사는 안내 및 연구를 지원함. 마지막 차시는 프로젝트 발표회를 실시함
- 협동학습은 배움의 공동체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공개 및 협의 문화 만들기를 촉진함. 주로 공동작업(모둠활동과 발표), 협동적 탐구, 담화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력 향상과 경청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 현장체험학습, 생태학습, 발표회, 탐구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함

“협동학습은 애들이랑 같이 하는 공부인데 서로 도와주면서 문제도 직접 내고 문제풀이도 같이 해요. 문제를 만드는 것은 교과내용을 확실히 복습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친구들한테 문제 내고 설명 자료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요.”

김성천·박성만·이광호·이진철(2010). 학교를 바꾸다. 우리교육

□ 수업 외 활동 참여 : 사교육비 경감

● 방과 후 학교 및 특기적성교육

-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사회·문화적 자본이 부족한 약점이 있음. 이러한 사

회·문화적 자원의 결핍은 도농 간 학력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작은 학교가 사회·문화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지역 귀농·귀촌 자원(도예가, 예술가, 교육자 등)을 활용한 방과 후 학교 활동 및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문화 결핍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우리 학교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예체능이라든가 자기의 특수한 진로 때문에 가는 경우 외에 교과 공부 때문에 학원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김성천·박성만·이광호·이진철(2010). 학교를 바꾸다. 우리교육

- 방과 후 보충·심화 학습 및 학습 부진아 책임지도를 통한 학습 결손 보강
 -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방과 후 사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서 발생하는 학습 결손을 수업시간 내에 해결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 소인수 학급이기 때문에 수업 중 이러한 학습 결손을 보강할 수 있겠지만, 방과 후 맞춤형 보충·심화 학습 및 학습부진아 책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전교생 이름 알기 : 학년 간 교우활동으로 인한 사회성 함양

- 농어촌 작은 학교는 전교생이 적게는 10명에서부터 많게는 150명 이상임.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의 기초는 농산어촌 교육 여건이 또래집단(peer group) 형성이 곤란하여 학생의 학습동기 저하 및 진취성, 협동의식 배양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이 학교는 내가 다니던 서울의 학교랑은 정반대이다. 이 학교는 내가 처음 왔을 때 웃음이 가득하고 절대 싸우지 않았다. 서울은 틈만 나면 싸움이 일어났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작은학교교육연대(2009). 작은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교육.

- 하지만 실제로 작은 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학년 간 교우활동을 통해 또래집단을 넘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학년들은 협동의식뿐만 아니라 저학년을 이끄는 리더십도 생기게 됨
 - 특히, 쉬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 운동장에 모여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한데 학년구분 없이 어우러져 놀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또한 체험학습이나 방학 기간 캠프를 갈 때 학년별 그룹을 지정해 고학년의 형 누나들이 동생들을 이끌고 보살피며, 저학년들은 고학년의 리더에 따르면서 리더십-팔로워십을 형성함

- 또한 작은 학교 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작은 학교를 졸업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놓은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빨리 적응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했음

“실제로 글을 쓰기 위해 졸업생과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학교 있다가 중학교를 서울로 갔을 때 인간성이나 사회성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게 작은 학교예요.” <경기도 전문가 간담회 중에서 황영동 교사>

□ 자발적인 참여·소통에 기초한 학생자치 활동

- 학생 다모임, 학생회 자율 운영, 동아리 등을 통한 학생자치 공동체 활동

- 다모임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자치회의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함. 또한 학생회 자율 운영을 통해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위원회 활동 및 지원, 자체적으로 어린이 생활 규범을 제정하여 자율적인 생활 실천을 촉진함

- 또한 학생 스스로 협력하여 학습하는 동아리 운영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함. 여기서 지도교사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지원만 할 뿐 일선에 나서지는 않음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금방 드러나게 되고, 또 다모임 시간을 통하여 전교생에게 그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학교에는 어린이들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인지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한다. 자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학교교육연대(2009). 작은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교육.

□ 최적화된 학생 상담 및 진로지도

- 농어촌 지역 특성 및 작은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생 상담 및 진로지도 촉진

-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생활환경이 열악해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적 여건이 취약함. 하지만 소인수 학급의 장점을 이용해 학생의 소질, 적성, 흥미 등 개인 성장과 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진로 검사, 학생 상담 및 진로 탐색 교육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함
 - 대도시에서는 형식적인 진로적성검사 및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적기에 파악하고 가정과 연계 지도가 가능함
 - 우리 학교에 왕따, 폭력, 욕설 등이 다른 학교에 비해 없는 것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학생 하나하나에 관심을 쏟는다.
- 작은학교교육연대(2009). 작은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교육.

□ 학업성취도 향상

● 작은 학교 학업성취도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

- 농어촌의 학교 및 학생들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들에 비해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일반적임. 하지만 여기서 유념할 것은 도농 간 학업성취도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지만, 학생 배경, 학교 배경, 과외 참여 등의 영향을 제거하고 학교교육에 의한 차이만을 비교해 보면 도농 간 학업성취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임
- 즉, 학교교육 이외의 다른 조건들 예컨대 사교육, 가정 및 사회의 교육 지원, 가정 배경(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 등) 등이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인이라는 점임
- 실제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모 도교육청 차원의 작은 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연구에 의하면 도내 작은 학교들과 중·대규모 학교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했을 때, 작은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고, 실제 특기적성활동에 대한 여러 대회에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입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즉 학생, 가정 배경 등의 영향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학교 자체의 교육적 측면만을 놓고 봤을 때 작은 학교의 교육적 효과가 중·소도시,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들보다 월등히 앞설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함

03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측면

가.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교육인적자원부(2006)¹⁴의 통폐합 효과 계산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1982년 이후 당시('05.11)까지 통폐합된 총 5,262교중 학교 통합운영과 분교장화를 제외하고, 3,265개교가 순수하게 폐지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소한 연간 약 1.7조원으로 추정하였음('05년 현재가치)

<표 3-3> 교과부가 추정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학교 폐지 현황			적용 기준	연 예산 절감액 (추정치)
본교	분교	계		
1,144교	2,121교	3,265교	학생수 25명 학교 1년 예산(5.3억)	17,290억원
			학생수 80명 학교 1년 예산(6.2억)	20,243억원

※ 주 : 학생수별(25명 규모, 80명 규모) 학교의 1년 예산은 05년 실제 학교(충북 보은 A초등학교, 북제주군 B초등학교)의 결산액을 적용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이후 2009년까지의 계획한대로의 학교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3,18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14) 교육인적자원부(2006.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표 3-4> 교과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단위 : 학교수, 명,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39	144	196	297	676
인원 감축	초등교사	132	400	743	1,214	2,489
	중등교사	20	244	306	537	1,107
	일반직등	52	236	383	610	1,281
	기 타	29	49	107	204	389
	계	233	929	1,539	2,565	5,266
예산 절감	인건비	58	243	405	694	1,400
	운영비	20	74	121	180	395
	계	78	317	526	874	1,795
	누적계	78	395	921	1,795	3,18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10)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교육재정 효과 분석

- 이해영 등(2010)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비용-수익(효과)을 교육 공급자(교과부, 교육청)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음
 - 이 모형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폐교에서 발생되었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폐교시설을 매각 혹은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통폐합에 따른 수익을 포함하였음
 -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① 통폐합 본교에서 증가된 교원수와 직원수에 의해 상승한 인건비, ②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투자된 시설·설비, 직접적인 교수-학습 활동 준비에 소용되는 추가 비용, ③ 통폐합 본교에서는 원거리 거주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차량 구입, 운전원 채용, 차량 운영 등 통학 비용, ④ 통폐합에 따라 통폐합 본교 및 폐교 학생들의 편의·복리후생 등을 위해 제공되는 통폐합 인센티브(지원금) 등을 포함하였음

<표 3-5>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틀

	분석내용	분석자료	분석방법
수익분석	○ 폐교의 인건비	▶ 연도별 폐교에 의한 감축인원수 ▶ 교원의 경력연수별 월보수액(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 교원의 경력, 직급을 고려하여 통폐합에 따른 인건비 총액 산출
	○ 폐교의 학교교육비	▶ 2006-2010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해 폐교의 폐교 직전년도 학교회계 자료	▶ 본교, 분교장 구분에 따른 폐교의 학교교육비, 교특회계 전입금 총액 추정
		▶ 학교기본운영비 산출 보충자료: 2007~2009년 교과부 검증 학교회계 세입 자료	▶ 학교규모별, 폐교의 평균 학생수에 따른 학교교육비, 교특회계 전입금 총액 추정
○ 폐교자산 활용수익	▶ 「시도교육청 폐교 재산 현황(2010년 3월 1일 기준)」(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 2006년부터 2010년간 폐교 자산 대부 수익 총액 추정	
비용분석	○ 통폐합 전후 학교당 평균 교육비용 변화 추이 분석	▶ 2006년~2010년 인근 학교를 통합한 경험이 있는 통폐합본교의 세입·세출 자료	▶ 통폐합 시점에 따른 평균 교육비의 평균값, 최대·최소값 등 산출
	○ 통폐합 전후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감 정도	▶ 2006년~2010년 인근 학교를 통합한 경험이 있는 통폐합 본교의 세입·세출 자료	▶ 통폐합 시점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비의 평균값, 최대·최소값 등 산출
	○ 통폐합 이후 학생 1인당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비 총액 증가액	▶ 통폐합 본교 학생 1인당 인건비, 학교운영비, 수익자 부담 경비, 총교육비 결정 요인 분석: 통폐합 이후 증가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 임의 효과(random effect) 패널 회귀 모형 추정
	○ 학교 통폐합에 따라 증가한 통학 비용	▶ 통폐합 본교 학교장 설문 문항에서 통학 비용 관련 설문 결과 ▶ 「농산어촌 학생 통학 편의지원실적('09년) 시도 평가 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 지역별 운전원 인건비 및 통학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평균값, 중앙값 등 산출

※ 주: 분석기간, 2006~2010년, 각 연도의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환산

-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계획에 따라 이후 2010년까지 실제 추진된 학교 통폐합 현황을 보면 표와 같음. 당초 2009년까지 676개 통폐합을 계획했지만, 실제 344개가 추진되었고, 이후 2010년까지 394개가 추진되었음

<표 3-6> 최근 5년 간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2006-2010) (단위 : 곳, 억원)

	본교폐지	분교폐지	분교장개편	계	재정지원
2006	17	23	2	42	239.4
2007	49	55	4	108	655.8
2008	33	54	4	91	492.8
2009	48	50	5	103	631
2010	22	25	3	50	853
합 계	147	182	15	394	2,872

-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효과(통폐합으로 인한 수익효과)를 3,189억으로 예상하였지만, 이해영 등(2010)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2009년까지 4개년 간 3,398~4,036억이 발생하였음. 기준년도가 차이가 있고, 통폐합 학교수가 계획보다는 적고, 폐교 자산 활용 수익을 추가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초 예상한 예산 절감효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음. 2006~2010년의 5개년에 걸친 수익 분석 결과 3,867억원~4,596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통폐합교당 9.8~11.7억의 수익 발생
- 하지만,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는 없었던 비용 부분에 대하여, 이해영 등(2010)이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지난 5년간 3,701억원~4,133억원 발생하였음(여기에는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포함). 따라서 비용대비 수익의 규모는 최소(=최소수익/최대비용) 0.89배에서 최대(=최대수익/최소비용) 1.25배 정도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효과, 즉 비용대비 수익 효과가 극히 미미하거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3-7>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의 수익-비용 분석 (단위 : 백만원)

년도	수익		비용		수익/비용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6	36,588	42,924	28,989	32,425	1.16	1.54
2007	122,676	144,092	77,595	82,960	1.42	1.86
2008	88,158	104,357	67,039	77,214	1.13	1.59
2009	92,400	112,282	84,733	95,649	0.87	1.32
2010	46,891	56,016	111,800	125,110	0.34	0.51
합	386,713	459,671	370,156	413,358	0.89	1.25

나.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사업 투입 예산 분석

1) 연구분석의 기본관점

□ 논리전개를 위한 사전 검토

- 첫째,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의 정확한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음 →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를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중 어떤 부분까지 포함할 것인가, 농식품부 외에 전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정지출(가령,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와 관련) 중 어디까지를 농어촌활성화 투자로 볼 것인가?
- 둘째,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일 → 장기간(예: 2001-10년)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도중에 예산계정이 달라진 경우도 있는데 특히, 2010년부터 광특회계가 포괄보조방식으로 개편됨으로써 기존예산(사업)계정과의 연속성 확보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었음
- 셋째, 첫째와 둘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정투자의 효과가 교과부의 작은 학교 폐교정책으로 인해 감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량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 → 양자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작은 학교 폐교정책으로 인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효과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효과 자체가 계량화되지 않는 현실 하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 본 연구의 기본입장

-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한계를 전제한 위에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한편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재정투(융)자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작은 학교 폐교)를 늘려가는 정책의 불합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 아울러 귀농·귀촌 등 장기적인 경향을 중시하고 이를 근거로 농촌학교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 폐교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예: 산촌유학, 도시학생 농산어촌 장기체협의무제도 등)을 제시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이러한 정책에 집중할 것을 강조함

2) 광의(廣意)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투융자 내역

- 「제1,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투융자내역을 중심으로 -

□ 제1차 삶의 질 5개년계획 투융자 규모(계획)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5개년 기본계획)은 농어촌을 최소한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합 산업 활성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①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연금·건강 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개선하고,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보강,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 확충 및 농작업재해안전관리 기능 보강을 실시하며, 농산어촌 여성, 영유아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함
 - ②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고교 집중육성,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도시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지원과 급식비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농림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늘려나가며,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함
 - ③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주거생활편의, 농촌다움과 경관보전, 도시민의 여가수요, 농어촌 주민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읍·면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들을 체계적으로 종합 개발함
 - ④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진흥, 농산어촌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활성화,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과 자원화, 도농교류 확대 등을 실시하여 농외소득을 확충함
- 이러한 제1차 삶의 질 5개년(2005~2009) 기본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기간 동안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비 11조5,527억원(57%). 지방비 8조1,659억원(40.3%), 용자와 자부담 등 기타 5,545억원(2.7%) 총 20조2,731억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함
- 부문별로는 복지확충 부문이 5조9,432억원(16.9%), 교육여건개선 부문이 3조1,473억원(15.5%), 지역개발촉진 부문이 11조2,480억원(55.5%), 복합 산업 활성화 부문이 2조4,552억원(12.1%)임
 - 국비 11조5,527억원의 연평균 투융자규모는 2조3,105억원으로 2004년 대비 1.5배이며, 국비는 119조사업의 투융자재원 7조6,862억원(67%), 각 부처 중기 재정계획 재원 3조8,605억(33%)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8> 제1차 삶의 질 5개년계획 투융자 규모(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04	제1차 5개년(2005~2009) 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국 비	14,895	15,101	18,981	23,938	27,117	30,390	115,527
(보조)	-	13,127	17,048	21,966	24,762	27,948	104,851
(용자)	-	1,974	1,933	1,972	2,355	2,442	10,676
지방비	9,583	12,660	15,990	17,108	17,822	18,079	81,659
기 타	382	675	1,179	1,210	1,238	1,243	5,545
합 계	24,860	28,436	36,150	42,256	46,177	49,712	202,731

※ 주: 실제투융자는 계획(202,731억) 보다 9.9%가 늘어난 22조3천억임

※ 자료: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부 외 14개 부처, 2005.4.

-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복지·교육·지역개발·산업 등 4대 분야, 133개 과제가 추진된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기간(2005~2009)에는 당초예산 20조2,371억원보다 9.9%가 늘어난 22.3조원이 투융자되었음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 ‘복지·교육 분야’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우수교육기회 확대 등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상하수도, 주택, 도로 등 기초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농어촌산업분야’에서는 신활력사업, 농공단지 육성 등으로 농어촌 소득원이 다양화되고 체험·휴양마을 등 도농교류활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도의 개발체계도입 및 지역 주민의 지역발전 역량이 배양되었고 주민참여의식이 함양되어 마을단위에서의 활력제고 사례(이천 부래미, 화천 토고미 등)가 출현했으며, 지역개발 컨설팅·평가 등을 담당하는 농촌지역개발 컨설팅산업이 크게 발전했음

● 제1차 기본계획의 개선과제

- ‘복지·교육분야’에서는 영세·고령농, 다문화가족 비율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및 교육서비스 전달이 미흡했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정주계층별(마을-읍·면-중소도시) 특성을 반영한 개발이 미흡했고, ‘농어촌산업분야’에서는 2-3차 산업의 복합 산업화가 진전되고는 있으나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화하는 고부가가치 확보 대책이 부족했고, 사업의 유사·중복이나 사업간 연계부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제2차 삶의 질 5개년계획 투융자 규모(계획)

●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 비교

- 1차 계획에서는 4개 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2차 계획에서는 7개 중점 추진분야로 구분하였음
- 제1차 기본계획의 복지기반확충은 ‘보건복지증진’으로, 교육여건개선은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으로 항목이 변경되었으며, 지역개발촉진과 복합산업 활성화는 ‘기초생활 인프라확충, 농어촌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개선, 지역발전 역량강화’ 등으로 세분화되었음

제1차 기본계획('05~'09)	→	제2차 기본계획('10~'14)
복지기반 확충		보건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복합산업 활성화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0년부터 시작된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관리가이드라인제도가 도입되었음
 - 농어촌 서비스기준 :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운영
 -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
- 또한 2010년부터는 기존정책이 공급자, 중앙정부 중심이라는 비판을 반영하여 포괄보조제도 도입(기초생활권제도), 농어촌공동체 회사 도입 등 수요자·지역·자체·지역 중심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음
-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 (기초생활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 부문별 목표
 - ① 보건·복지 증진 : 농어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
 - ②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의 확충과 교육력 강화
 - ③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 창조
 - ④ 경제활동다각화 :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의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 ⑤ 문화여가 여건향상 : 문화와 여가를 증기는 즐거운 농어촌 만들기
 - ⑥ 환경·경관 개선 : 흙, 물, 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 ⑦ 지역발전역량 강화 :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고, 협력적 개발 강화
 - 추진전략
 - 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 도입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 ②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발전 체계 구축 : 지역의 자율과 창의, 민간 참여 확대
 - ③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사무국 기능 강화 및 지방계획 내실화

<표 3-9> 제2차 삶의 질 5개년계획 투융자 규모(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09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합 계	54,270	65,336	65,557	69,321	71,739	73,448	345,401	
재원별	국 비	35,937	40,371	43,141	45,836	48,155	49,332	226,835
	지방비	18,112	24,324	20,935	21,994	22,051	22,519	111,823
	기 타	221	641	1,481	1,491	1,533	1,597	6,743
분야별	보건복지증진	7,943	8,648	9,091	10,131	11,128	11,148	50,146
	교육여건개선	6,530	5,795	2,641	2,374	2,443	2,450	15,703
	기초생활기반확충	20,137	26,596	23,453	24,438	25,769	27,047	127,303
	경제활동 다각화	6,749	7,374	7,012	7,269	7,342	7,461	36,458
	문화·여가	1,145	1,152	1,587	1,693	1,523	1,528	7,483
	환경경관	11,766	15,770	21,773	23,416	23,534	23,819	108,312

※ 주: 1) 연도별 투자규모는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연도예산 편성시 조정될 수 있음

2) 지역발전역량강화 분야는 경제활동 다각화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에 포함

3) 지방비는 국비 매칭자금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만 포함

4) '09년 투융자규모는 제2차 기본계획 분야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제1차 기본계획 상의 '09년 투융자 규모와 다름

※ 자료: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식품부 외 10개부처, 2009. 12.

-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기간 중 총 투융자규모는 34조 5천억원 수준으로 1차 계획기간 실적(22조 3천억원) 대비 55% 증가
 - 재원별로는 국비 22조 7천억원(총 투융자규모의 65.8%), 지방비 11조 1천억원(32.2%), 기타 7천억원(2.0%)으로 구성됨
 - 연평균 투자규모는 6조9천억원으로 2009년 대비 약 1.3배 증가 : 제1차 계획기간 대비 투융자계획이 증가한 사유는 환경부문이 삶의 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되었고, 부문별로 일부 사업들이 증액 또는 추가되었기 때문임
 - 국비 22조 7천억원의 연평균 투자규모는 4조 5천억원 수준으로 2009년(3조 6천억원) 대비 약 1.3배 늘어남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투융자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증진분야가 5조146억원, 농어촌교육여건개선 분야가 1조5,703억원, 기초생활기반확충 분야가 12조7,303억원, 지역역량강화를 포함한 경제활동다각화 분야가 3조6,458억원, 문화여가여건개선 분야가 7,483억원, 환경·경관개선분야가 10조8,312억원임

□ 제1~2차 삶의 질 5개년계획 투융자 규모(계획)

- 위에서 본 것처럼 ‘제2차 삶의 질 5개년 계획’에서는 ‘제1차 삶의 질 5개년 계획’과 예산분류 항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항목(예: 경제활동다각화, 환경·경관, 문화여가여건개선, 역량강화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2차 계획의 비교를 위해 2차 계획의 항목분류에 의거하되, 크게 3개 분야(복지, 교육, 지역개발)로 나누어 연속적인 자료로 재구성함

<표 3-10> 제1~2차 삶의 질 5개년계획 투융자 규모(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제1차 삶의 질 5개년 투융자(계획)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합 계	28,436	36,150	42,256	46,177	49,712	202,731	65,336	65,557	69,321	71,739	73,448	345,401	
재원별	국비	15,101	18,981	23,938	27,117	30,390	115,527	40,371	43,141	45,836	48,155	49,332	226,835
	지방비	12,660	15,990	17,108	17,822	18,079	81,659	24,324	20,935	21,994	22,051	22,519	111,823
	기타	675	1,179	1,210	1,238	1,243	5,545	641	1,481	1,491	1,533	1,597	6,743
분야별	복지	4,151	6,535	7,123	7,664	8,753	34,226	8,648	9,091	10,131	11,128	11,148	50,146
	교육	3,380	6,362	7,071	7,288	7,362	31,473	5,795	2,641	2,374	2,443	2,450	15,703
	지역개발	20,609	22,957	27,766	31,139	34,561	137,032	50,893	53,825	56,816	58,168	59,855	279,556

※ 주 : 제1, 2차 기본계획 모두 복지와 교육을 제외한 전체 항목을 ‘지역개발’에 포함시킴
 (제1차 기본계획 : 지역개발 = 지역개발촉진+ 복합산업활성화)
 (제2차 기본계획 : 지역개발 = 기초생활인프라+경제활동다각화+문화여가여건향상+환경·경관개선+지역발전 역량강화)

- 제1차, 제2차 기본계획기간(2005~2014년)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지역개발에 투입되는 투융자사업의 총액(계획)은 54조8,132이며, 최근에 올수록 연간 투융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 재원별로는 국비가 34조2,362억원(62.5%), 지방비가 19조3,482억원(35.3%), 기타가 1조1,288억원(2.2%)임
 - 분야별로는 지역개발분야가 41조6,588억원(76.0%)으로 가장 많고, 복지분야가 8조5,372억(15.6%), 4조7,176억원(8.6%)임
-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의 재원별 변화를 살펴보면 국비는 11조5,527억원에서 22조6,835억원으로 93.3% 증가했으며, 지방비는 8조1,659억원에서 11조1,823억원으로 36.9%, 기타는 5,545억원에서 6,743억원으로 21.6% 늘어났음
-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의 분야별 변화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증진분야가 3조4,226억원에서 5조146억원으로 46.5% 증가했으며, 지역개발분야(기초생활인프라+경제활동다각화+문화여가여건향상+환경·경관개선+지역발전 역량강화)는 13조7,032억원에서 27조9,556억원으로 104.0% 이상 늘어난 반면,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분야는 3조1,473억원에서 1조5,703억원으로 50.1%가 줄어들었음
 - 제2차 계획기간에 농어촌교육여건개선에 투융자가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3) 협의(俠意)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투융자 내역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투융자내역을 중심으로 -

도농교류·농촌관광마을조성사업

- 도농교류·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녹색농촌, 어촌체험,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은 2001~2010년 사이 813개소 육성(1,895억원 투입), 각 부처의 마을단위 농촌관광 정책 사업은 2009년까지 13,586억원 투입되었음

<표 3-11> 마을단위 농촌관광 정책사업 추진 현황 (단위: 억원)

소관부처	정책사업	시작연도	실적	투입예산	비고
농식품부	어촌체험마을	2001	102	681	공모제
	녹색농촌체험마을	2002	442	884	공모제
	농촌마을종합개발	2004	176	6,405	공모제
행안부	정보화마을	2001	370	1,658	공모제
	아름마을	2001	23	435	공모제, 03 종료
문광부	문화역사마을	2004	13	239	공모제, 09종료
농진청	농촌전통테마마을	2002	170	340	공모제, 09종료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1995	270	2,944	공모제
합계			1,566	13,586	

※ 자료: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2009), 김정섭외, 「농촌지역활성화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KREI, 2011). p.31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1980년대 말 농림부의 ‘농촌가공산업 육성사업’과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자부‘1군1명품 육성사업’,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상품개발 시범사업’, 중기청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정책사업 활발, 대부분 금융 및 세제지원 방식으로 추진
- 2004년‘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계기로 새 국면,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법에 명시, 이후 신활력사업(행안부, 2005년), 향토산업육성사업(농식품부 2005), 지역연고진흥사업(지경부, 2004년),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제도(지경부, 2005년)가 추진됨
- 2001~2010년 사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지역 활성화 관련 보조금 사업 예산은 1,640억에서 5,533억원으로 약 3.4배 증가함
 - 10년간 약 4조1,098억원으로 매년 약 4,1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별로는 특화품목육성 보조금이 전체의 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10년에 종결된 신활력사업으로 전체의 26.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현, 농촌권역종합정비사업)이 15.7%의 순서로써 이 3가지 사업이 전체예산의 79.8%를 점함

<표 3-12> 2000년 이후 등장한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비율
특화품목육성사업	1,640	1,000	231	800	1,224	1,759	2,251	2,939	2,555	905	15,304	37.2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36	52	64	94	135	167	179	157	83	967	4.7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9	27	36	40	50	65	75	-	-	302	0.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96	226	467	727	1,323	1,907	1,607	6,453	15.7
전원마을조성				418	396	371	329	147	337	223	2,221	5.4
신활력지원사업					2,000	1,900	1,882	1,882	1,882	1,496	11,042	26.9
지역농업광역클러스터					236	395	504	484	511	400	2,530	6.2
농어촌테마공원조성							31	112	191	449	783	1.9
향토산업육성							86	179	562	53	880	2.1
도시민농촌유치지원							20	40	40	44	144	0.4
농촌활력정착지원								17	26	25	68	0.2
농어촌뉴타운조성									30	264	294	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01	9	110	0.3
합계	1,640	1,045	310	1,514	4,224	5,085	6,103	7,414	8,335	5,533	41,098	100.0

※ 주 : 2010년도는 포괄예산제도의 도입으로 항목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금액이 줄어들었음

※ 자료 : 김정섭외(KREI, 2011) p.36을 토대로 사업추가 및 2010년 예산 보완

4) 학교 통폐합이 농촌지역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 농촌학교 통폐합의 지역인구 감소 효과

- 일반적으로 ‘지역학교 폐교 → 인구감소 → 교육·의료·복지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단위당 비용 상승 → 관련시설의 통폐합 → 사회서비스 축소 → 인구감소’를 촉진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됨. 특히, 학교는 지역인구 감소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표 3-13>에서 보듯이, 일반 농촌주민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초중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농촌주민들이 이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함. 물론, 여기서의 ‘교육’이 단순히 학교의 존재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존재유무가 농촌을 떠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특히, 지역사회 내의 각 분야에서 가장 핵심인력인 4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농촌학교의 폐교로 인해 이들이 지역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농촌지역사회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표 3-13> 농촌 주민들의 주요 이혼 이유 (단위 : %)

구분	이혼 이유	2003	2005	2007	2009	2011
전체 농촌 주민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3.5	3.2	11.9	9.4	17.9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29.9	30.5	39.5	29.1	33.8
	소득이 적어서	30.2	31.1	13.8	25.8	15.9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	25.2	19.2	9.4	15.3	8.9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1.9	7.4	8.6	11.7	9.0
	자녀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5.7	7.1	6.5	3.5	8.8
40대 농촌 주민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2.2	2.2	1.7	2.5	16.3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37.8	45.1	55.1	32.5	55.9
	소득이 적어서	26.7	22.5	13.1	30.7	11.3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	25.6	13.8	3.6	21.9	2.0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4.4	9.3	11	12.4	4.6
	자녀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	4.7	2.8	0	6.1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 각년도.

-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 학교(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함) '통폐합' 정책으로 2010년까지 통폐합된 학교 수는 분교 폐지 1,313교(24.1%), 분교장 폐지 2,328교(42.7%), 분교장 개편 1,811교(33.2%) 등 총 5,452개교에 이룸
 - 기존 연구에 따르면, 폐교 1개가 증가할 경우 시·군 지역 초·중·고교 학생수의 79~139명이 감소하며, 학부모는 111명이 감소(한국교육개발원; 2010)하기 때문에 그동안 농촌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총합은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605,172명에 달함
-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곧 농촌인구감소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농촌학교 통폐합정책은 단순히 교육적 관점(=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제고)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일면적인 경제적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해 폐교지원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와 농촌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농촌학교를 폐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노력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른 투자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만약, 농촌학교 통폐합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요인)이 농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다른 투융자효과를 감소시키는 총합(-요인) 보다 크지 않다면,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 농촌학교 통폐합의 새로운 인구유입 억제효과

- 농촌학교 폐교정책은 기존 농촌주민들의 이농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유입을 억제함으로써 농촌지역활성화에 이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됨.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려는 사람이 자녀를 갖고 있을 경우, 해당지역에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는 귀농·귀촌지역 선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임
- <표 3-14>에서 보면, 특히 학생자녀를 두고 있는 40대에서 교육여건이 이주시에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올수록 더욱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4>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이사(주거이전)시 고려사항 (단위: %)

이사 시 고려사항	전체 국민			40대 국민		
	2006	2008	2010	2006	2008	2010
주택 가격	29.3	29.8	27.3	27.2	28.2	24.8
주택 규모	29.9	24.2	25.1	32.1	25.1	26.5
주택 유형	14.7	21.9	17.2	14.7	19.9	15.6
주택내부시설	9.3	11.3	11.1	8.4	9.3	10.4
방의 개수	3.3	5.1	7.0	3.7	5.4	8.1
방의 크기	3.6	3.6	3.9	3.4	4.3	3.7
유지관리비	3.0	3.7	4.8	1.6	2.7	4.2
교통 여건	21.6	15.6	22.9	17.6	14.2	18.9
주차 공간	1.9	1.8	3.9	1.5	1.4	3.6
편의 시설	9.9	7.9	10.8	8.8	7.7	9.5
녹지 여건	7.2	7.5	8.5	7.0	7.8	7.5
교육 여건	20.8	17.7	19.8	27.5	24.5	30.3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5.6	5.1	4.8	7.7	7.3	5.0
주거환경개선기대감	17.3	13.7	18.1	18.8	12.1	18.2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 각년도.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의 농촌학교 폐교정책이 새로운 인구유입의 흐름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귀농·귀촌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됨

- <표 3-15>에서 보는 것처럼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30,082가구가 귀농·귀촌했는데, 폐교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올수록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00년 이후 완만한 증가하던 귀농·귀촌가구는 2005년 이후 특히, 2010년 이후는 그 증가추세가 급격히 빨라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베이비부머(1955~63년 출생자,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3-15> 귀농·귀촌가구의 연도별 추이 (단위: 호)

구분	합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가구수	30,082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누계	30,082	880	1,649	2,534	3,836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1 귀농귀촌실태조사결과」. 농림수산식품부.

<표 3-16> 귀농·귀촌인의 연령별 추이 (단위 : %, 명)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30,082 (100.0)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9이하	1,438 (4.8)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296
30~39	5,547 (18.4)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1,438
40~49	8,821 (29.3)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2,682
50~59	8,841 (29.4)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3,537
60이상	5,435 (18.1)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2,550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 각년도.

<표 3-17> 도시-농촌 이동인구의 연령별 추이 (단위 : 명, %)

		0~9세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전체
2005	동→ 읍면	124,751 (13.5)	89,970 (9.7)	209,130 (22.6)	202,359 (21.9)	133,354 (14.4)	74,582 (8.1)	90,043 (9.7)	924,190 (100.0)
	읍면→ 동	129,887 (14.1)	92,072 (10.0)	244,862 (26.5)	198,366 (21.5)	113,410 (12.3)	56,931 (6.2)	88,773 (9.6)	924,301 (100.0)
2010	동→ 읍면	100,973 (10.9)	98,451 (10.6)	177,352 (19.1)	197,968 (21.4)	147,078 (15.9)	104,134 (11.2)	100,169 (10.8)	926,125 (100.0)
	읍면→ 동	92,899 (11.2)	88,387 (10.7)	185,503 (22.4)	176,223 (21.2)	121,050 (14.6)	78,582 (9.5)	87,170 (10.5)	829,814 (100.0)

※ 자료: 김정섭·임지은·박천수(2012),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2 :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가치의 재발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더욱이 <표 3-16>에서 보는 것처럼, 40대 이하의 귀농·귀촌인 비율이 전체의 52.5%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녀가 다닐 수 있는 농촌학교가 필요하며, <표 3-17>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지향인구’의 인구 중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거나 향후 취학아동을 갖게 될 20~30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촌학교의 필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농촌학교의 통폐합이 미치는 지역 활성화의 역(逆)효과는 학교통폐합 → 학생의 전출(=지역주민의 전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인이 지역 내로 유입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제2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농촌학교의 폐교정책은 특정 시점의 학생 수 혹은 기존학생의 감소추이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향후 농촌인구의 변화추이 특히 학생을 자녀를 두고 있는 인구추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함

□ 농촌학교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전후방 마이너스 효과

- 농촌학교의 통폐합은 단순히 학생 수의 감소와 학부형 인구의 이촌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전후방 관련부문의 황폐화를 초래함으

로써 지역사회에 제3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학교교육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은 첫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학습교구재를 공급하는 학교주변의 문구점이 있고 둘째,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관련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보습학원이 있으며 셋째,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양한 전인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학원(예;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용변학원 등) 등이 있음
- 따라서 농촌학교의 폐교는 이러한 관련부문의 존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궁극적으로는 이들까지도 농촌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듦
- 1개씩의 초·중학교가 있는 농촌지역(면단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1~2개의 문구점이 있으며, 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습학원과 각종 유관 사설학원은 읍단위에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면단위의 농촌학교가 폐교되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을 포괄하는 읍단위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즉, 농촌학교의 폐교는 해당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을 포함한 지역전체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것임

□ 농촌학교 통폐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

- 농촌학교의 폐교는 ‘지역인구의 감소 → 지방세과세 대상자 감소 →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재원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소득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표 3-18> 폐교에 따른 지역인구감소와 지방세 징수액 감소분 (단위 : 명, 백만원)

	폐교수	폐교로 인한 인구감소			지방세감소분*)	비고
		학생감소	학부모감소	전체감소		
2001	133	10,507~18,487	14,763	25,270~33,250	14,032~18,463	
2002	88	6,952~12,232	9,768	16,720~22,000	10,929~14,381	
2003	80	6,320~11,120	8,880	15,200~20,000	10,408~13,695	
2004	52	4,108~7,228	5,772	9,880~13,000	6,955~9,152	
2005	51	4,029~7,089	5,661	9,690~12,750	5,155~9,403	
2006	42	3,318~5,838	4,662	7,980~10,500	6,726~8,850	
2007	108	8,532~5,012	11,980	20,512~26,992	18,120~23,845	
2008	91	7,189~2,649	10,101	17,290~22,750	15,873~20,886	
2009	103	8,137~14,317	11,433	19,570~25,750	17,759~23,368	
2010	50	3,950~6,950	5,550	9,500~12,500	9,245~12,164	
계	445	35,155~61,855	49,395	84,550~111,250	115,202~154,217	

※ 주: 1인당 지방세액과 폐교로 인한 주민감소분을 곱하여 산출함

- <표 3-18>에서 보는 것처럼, 2001~2010까지 10년간 농촌학교의 폐교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은 최소 1,152억2백만원에서 최대 1,542억1천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즉, 농촌학교의 폐교로 인해 매년 115억~154억원 가량이 지방세납부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함

<표 3-19>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과 1인당 지방세액 (단위 : 억원, 천명, 원)

	지방세징수액	총인구	1인당지방세	비고
2001	26,665	48,022	555,266	
2002	31,526	48,230	653,660	
2003	33,133	48,387	684,750	
2004	34,202	48,584	703,977	
2005	35,977	48,782	737,506	
2006	41,294	48,992	542,872	
2007	43,524	49,269	883,395	
2008	45,480	49,540	918,046	
2009	45,168	49,773	907,480	
2010	49,160	50,516	973,157	

※ 자료: 국세청, 국가통계포털(KOSIS).

5) 농촌지역 활성화 투융자와 학교통폐합의 재정(절감)효과 비교

- 국가 재정적인 차원에서 농촌학교 통폐합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통폐합으로 인해 교육예산의 절감효과(+효과)가 농촌학교의 폐교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부정적인 효과 즉, 타 부처의 농촌 활성화 투자에 미치는 마이너스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야 함. 만약,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에서는 농촌학교를 폐교함으로써 재정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초래되는 타 부처의 재정지출효과 감소분이 더 크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결코 타당한 정책이 될 수 없음
 - 그러므로 농촌학교 폐교정책의 재정절감효과는 특정부처의 입장에서만 파악해서는 안 되며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작은 학교 통폐합정책’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만약, 입에 맞았다고 특정 음식만 계속 섭취한다면 ‘입은 좋아 할지 모르지만’전체 건강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임
 - 현재의 농촌학교 통폐합 정책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고도 종합적인 반성이 필요함
- 하지만 농촌학교 통폐합정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촌학교 통폐합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재정 절감효과와 농촌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초래되는 타 부처 예산투자의 손실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임
 - 교과부의 예산절감효과는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농촌학교 통폐합이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량화가 어렵기 때문임
 - 그러므로 여기서는 농촌학교 통폐합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논리적인 측면에서 상호 비교해보기로 함
- 먼저, 농촌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재정절감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의 <표 3-7>에서 보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효과는 통폐합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통폐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음

- 수익측면(a) : 폐교의 인건비+폐교의 학교교육비+폐교자산의 활용수익
(=소규모 학교를 폐교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
- 비용측면(b) : 통폐합 전후 학교당 평균교육비용+통폐합으로 전후 학생1인당 교육비증감정도+통폐합이후 학생 1인당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비증가액+ 학교통폐합으로 인해 증가하는 통학비용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효과(a) = (a-b)
- 다음으로 농촌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타 부처 재정사업 투자 효과 감소분(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지역인구 감소 : (학교폐교) → 학생 수 감소 → 지역주민(=학부모) 감소 → 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의 단위당 비용 증가 → 관련시설의 통폐합 → 지역사회 공동화 촉진 → 지역사회의 주체 약화 → 농촌지역개발투자 효과 감소
 - ② 새로운 인구유입 억제 : (학교폐교) →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구의 유입 억제 → 지역인구 증가 억제 →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 약화 → 농촌지역개발투자효과 감소
 - ③ 학교교육과 관련한 전후방 연관사업의 위축 : (학교폐교) → 학습교구재를 공급하는 문구점의 폐쇄, 교과목 중심의 보습학원 폐쇄, 각종 사설학원(태권도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웅변학원 등)의 폐쇄 → 관련인력의 이촌 촉진 → 인구감소 → 농촌지역개발투자효과 감소
 - ④ 지역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입의 감소 : (학교폐교) → 지역인구감소 → 지방세 감소 → 지역자주재원 감소 → 농촌지역개발투자효과 감소
 - ⑤ 기타 : (학교폐교) → 지역리더(교원)의 감소, 지역사회 공동체 구심점의 상실 등 → 농촌지역개발투자효과 감소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미치는 다른 투자효과의 감소분(β) = ①+②+③+④+⑤
- 따라서 국가적 관점에서 농촌학교 통폐합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함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국민경제적 효과(R) $R = (a-b) - (①+②+③+④+⑤) = (a-\beta) \geq 0$
--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표 3-7>에서 보면, 2006~2010년 사이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수익(a)은 최소 3,867억원에서 최대 4,59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비용(b)은 최소 3,702억원에서 최대 4,134억원으로 산출되었음
 - 따라서 지난 5년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효과(a-b)는 최소(=최소수익-최대비용) -2억6천7백만원, 최대(=최대수익-최소비용) 8억9천5백만원으로 추산됨
- 한편, 동 기간(2006~2010)에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투융자 규모는 (농식품부)농촌지역개발투자가 3조2,473억원이며, '삶의 질 계획'에 의한 투융자가 23조9,631억원에 달함
 - 동 기간에 394개교가 통폐합되었는데, 이로 인해 농촌지역개발투융자 효과가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는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부정적인 영향(①, ②, ③, ④, ⑤)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함
 - 가령,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그로인한 지방세 감소분(<표 3-16>)만 하더라도 최소 677억원에서 최대 891억원에 달함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그 자체의 교육재정 절감효과 그 자체도 의문시(<표 3-7>)되지만, 다른 재정투융자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됨. 즉, 특정부처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임
 - 아울러,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책(예; 산촌유학, 도시학생 농산어촌 장기체험제도 의무화, 지역사회학교 활성화 등)을 강구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됨

제4장 농어촌 교육 활성화 사례 및 요인 분석

1. 농어촌 학교 활성화 사례 분석
2.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 분석
3. 농어촌 교육 활성화 요인 분석
4. 시사점

제 4 장

농어촌 교육 활성화 사례 및 요인 분석

01 농어촌 학교 활성화 사례 분석

가. 분석 개요

1) 사례 조사 대상 학교 1차 선정 : 전국 농어촌 학교 운영 우수사례 수집

- 농어촌 학교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 사업(교과부 전원학교 육성사업, 광역 지자체 교육청 자체 육성 사업, 광역 지자체 교육청-시·군교육지원청 연계 사업, 민간지원 사례, 자발적 운동사례 등) 결과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교 사례를 수집함

<표 4-1> 농어촌 학교 우수 사례 유형 구분

구 분	사업 / 사례명
교육과학기술부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광역 지자체 교육청 자체 육성 사업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사업 ▶ 강원도교육청 행복더하기학교 사업 ▶ 전라남도교육청 무지개학교 사업 ▶ 전라북도교육청 혁신학교 사업
광역 지자체 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연계 사업	▶ 충청남도 행복공감학교 사업
민간지원 사례	▶ 삼성꿈장학재단 사례
자발적 운동사례	▶ 작은학교교육연대 사례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문헌 분석 및 연구진 협의를 거쳐 추천된 학교 중 분석 준거에 해당하는 '농어촌 학교 활성화의 의미'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 30여 개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

<표 4-2> 농어촌 학교 활성화의 의미

영역	농어촌 학교 활성화의 의미
진단과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교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려 하였는가? ▶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을 하였는가? ▶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망 형성을 위해 노력 하였는가?
운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유출이 없거나 외부로부터 학생을 유입하여 학생수가 증가하였는가? ▶ 향후 학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였는가?

<표 4-3> 1차 조사대상 학교

순	조사대상 학교	사업 / 사례명	비 고
1	원주 둔둔초등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2	평창 먼은초등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3	강릉 운양초등학교	도교육청 혁신학교 사례	강원 행복더하기학교
4	영월 봉래중학교	공기업(강원랜드) 지원	
5	광주 남한산초등학교		작은학교교육연대
6	포천 외북초등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7	양평 조현초등학교	도교육청 혁신학교 사례	지원 전 활성화
8	양평 세월초등학교		작은학교교육연대
9	아산 거산초등학교	전원학교	작은학교교육연대 / 지원 전 활성화
10	홍성 홍동초등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11	홍성 홍동중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지원 전 활성화
12	공주 우성중학교	도-시군-도교육청 연계지원	
13	단양 가곡초등학교	초-중학교 통합 사례	
14	여수 관기초등학교	도교육청 혁신학교 사례	

<표 4-3> 계 속

순	조사대상 학교	사업 / 사례명	비 고
15	순천 별량초등학교		작은학교교육연대
16	구례 토지초등학교	도교육청 혁신학교 사례	작은학교교육연대
17	고흥 도덕중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18	완주 삼우초등학교	도교육청 혁신학교 사례	작은학교교육연대 / 지원 전 활성화
19	익산 성당초등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지원 전 활성화
20	정읍 수곡초등학교		
21	군산 회현중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22	진안 조림초등학교	아토피학교	
23	함양 서상초등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24	상주 상주남부초		작은학교교육연대
25	경주 양동초등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26	안동 와룡초등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27	성주 초전중학교	2011 전원학교 우수 사례	
28	부산 금성초등학교		작은학교교육연대
29	해남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	공익재단(삼성꿈장학재단) 지원	
30	공주 의당초등학교	공익재단(삼성꿈장학재단) 지원	
31	영동 미봉초등학교	공익재단(삼성꿈장학재단) 지원	

2) 사례조사 대상 학교 2차 선정 : 최근 5년간 학생 수 증감 추이 고려

- 각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및 통계담당자에게 각 지자체 해당 학교별 최근 5년간 학생수 현황 자료 확보 ※ <부록 참고>
- 각 학교별 학생 수 증감 추이 분석 후, 1차 조사대상 학교 중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초등 17개교, 중등 3개교 등 18개교를 2차 조사대상 학교로 선정함

<표 4-4> 2차 조사대상 학교(최근 5년간 학생수 유지 및 증가 학교)

급별	순	소재지	학교명
초 등	1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은초등학교
	2	강릉시 사천면	운양초등학교
	3	경기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초등학교
	4	양평군 용문면	조현초등학교
	5	양평군 강상면	세월초등학교
	6	전남 구례군 토지면	토지초등학교
	7	여수시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8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우초등학교
	9	익산시 성당면	성당초등학교
	10	정읍시 칠보면	수곡초등학교
	11	진안군 정천면	조림초등학교
	12	진안군 부귀면	장승초등학교
	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초등학교
	14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초등학교
	15	충남 아산시 송악면	거산초등학교
중 등	1	전북 군산시 회현면	회현중학교
	2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중학교
	3	공주시 우성면	우성중학교

3) 사례조사 대상 학교 최종 선정 : 학교 소재 지역 인구 변화

- 국가통계포털 활용 각 학교별 소재 지역에 대한 주민 수 현황 조사 및 증감 추이를 분석함
- 최근 2~3년간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지역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등 4개가 있음

<표 4-5> 학교 소재 지역 주민 수 증감 추이

(단위 : 명)

순	소재 지역		학 교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	강원	원주 소초면	둔둔초등학교	11,775	10,920 (▽)	10,008 (▽)	9,626 (▽)	9,653 (▽)	9,510 (▽)
2		평창 봉평면	면은초등학교	4,720	5,146 (▲)	5,386 (▲)	5,513 (▲)	5,577 (▲)	5,662 (▲)
3		강릉 사천면	운양초등학교	5,053	4,647 (▽)	4,185 (▽)	4,219 (▲)	4,241 (▲)	4,271 (▲)
4		영월 영월읍 덕포리	봉래중학교	25,637	22,282 (▽)	21,865 (▽)	21,793 (▽)	21,907 (▲)	21,873 (▽)
5	경기	광주 중부면	남한산초등학교	-	2,620	2,670 (▲)	2,806 (▲)	2,904 (▲)	2,911 (▲)
6		포천 신북면	외북초등학교	11,392	-	14,155	14,361 (▲)	13,957 (▽)	13,879 (▽)
7		양평 용문면	조현초등학교	11,978	11,953 (▽)	12,328 (▲)	12,415 (▲)	12,673 (▲)	13,329 (▲▲)
8		양평 강상면	세월초등학교	4,026	4,545 (▲)	4,968 (▲)	5,098 (▲)	6,327 (▲▲)	6,946 (▲▲)
9	충남	아산 송악면	거산초등학교	3,974	3,890 (▽)	3,659 (▽)	3,576 (▽)	3,649 (▲)	3,745 (▲)
10		홍성 홍동면	홍동초/중학 교	5,049	4,421 (▽)	4,073 (▽)	3,943 (▽)	3,878 (▽)	3,796 (▽)
11		공주 우성면	우성중학교	7,593	6,806 (▽)	6,601 (▽)	6,313 (▽)	6,325 (▲)	6,298 (▽)
12	충북 단양 가곡면	가곡초등학교	2,514	2,089 (▽)	2,087 (▽)	2,150 (▲)	2,148 (-)	2,159 (▲)	
13	전남	여수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9,925	9,151 (▽)	8,673 (▽)	8,509 (▽)	9,266 (▲▲)	12,361 (▲▲)
14		순천 별량면	별량초등학교	8,514	7,391 (▽)	7,036 (▽)	6,948 (▽)	6,861 (▽)	6,800 (▽)
15		구례 토지면	토지초등학교	3,114	2,769 (▽)	2,676 (▽)	2,634 (▽)	2,555 (▽)	2,637 (▲)
16		고흥 도덕면	도덕중학교	5,083	4,050 (▽)	3,640 (▽)	3,564 (▽)	3,507 (▽)	3,388 (▽)
17	전북	완주 고산면	삼우초등학교	6,038	5,327 (▽)	5,004 (▽)	4,920 (▽)	4,913 (▽)	4,864 (▽)
18		익산 성당면	성당초등학교	3,326	2,796 (▽)	2,634 (▽)	2,576 (▽)	2,531 (▽)	2,406 (▽)
19		정읍 칠보면	수곡초등학교	3,971	3,015 (▽)	2,895 (▽)	2,861 (▽)	2,920 (▲)	2,856 (▽)
20		군산 회현면	회현중학교	4,520	4,003 (▽)	3,796 (▽)	3,790 (▽)	3,763 (▽)	3,739 (▽)
21		진안 정천면	조림초등학교	1,195	1,237 (▲)	1,121 (▽)	1,149 (▲)	1,121 (▽)	1,238 (▲)
22	경남 함양 서상면	서상초등학교	2,471	2,180 (▽)	1,987 (▽)	1,971 (▽)	1,967 (▽)	1,935 (▽)	

<표 4-5> 계 속

(단위 : 명)

순	소재 지역		학 교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3		상주 지천동	상주남부초	-	-	-	-	-	-
24	경북	경주 강동면	양동초등학교	9,319	8,623 (▽)	8,282 (▽)	7,917 (▽)	7,745 (▽)	7,648 (▽)
25		안동 와룡면	와룡초등학교	5,563	4,804 (▽)	4,586 (▽)	4,539 (▽)	4,554 (▲)	4,561 (▲)
26		성주 초전면	초전중학교	5,963	5,444 (▽)	5,256 (▽)	5,242 (▽)	5,239 (▽)	5,245 (▲)
27	부산 부산	금정구 금성동	금성초등학교	1,388	1,212 (▽)	1,177 (▽)	1,160 (▽)	1,210 (▲)	1,208 (-)

※ 자료: 국가통계포털. 읍면동 인구 현황(2000~2011).

- 위 조사대상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표4-6>의 전국 면지역 인구 감소 추이와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간 전국 면지역 인구감소율(20.04%)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비율이 낮음
- 이는 지역 활성화가 학교 활성화로 이어진 경우이거나 학교 활성화가 지역 활성화를 촉진시킨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이에 관해서는 보다 정밀한 별도의 양적, 질적 조사가 요구됨

<표 4-6> 전국 면지역 인구 감소 추이

(단위 : 명, %)

년 도	면지역 인구 수	감소 인구 수 (5년 전 대비)	감소율 (5년 전 대비)	감소율 (10년 전 대비)
1980년	11,460,536			
1985년	9,187,273	2,273,263	19.83	
1990년	7,497,857	1,689,416	18.38	34.57
1995년	6,080,962	1,416,895	18.89	
2000년	5,600,788	480,174	7.89	25.30
2005년	4,781,138	819,650	14.63	
2010년	4,478,173	302,965	6.34%	20.04%

※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 총괄(1980~2010).

4) 농어촌 학교 사례조사 실시

• 서면 조사

- 농어촌 학교 우수사례 중 최근 5년간 학생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학교를 선정하여 아래 <표 4-7>와 같이 서면 질문을 실시함

<표 4-7> 서면 조사 질문지

구 분	영 역	질 문
주 민	주민 유출입	1. 학교 소재 면지역의 주민 유출입 현황? 2. 주민 유출입 이유는?
학 생	학생모집 및 학생 유출입	1. 학생 모집의 범위와 근거는? 2. 학생 유출 이유는? 3. 학생 유입 이유는?
학교 운영	교 원	1. 학교장은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가? 2. 교사들은 어떤 교육적 관점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3. 교원 간 논의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육과정 및 생활지도	1. 특화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은 무엇인가? 2. 방과후 교육 운영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가? 3. 학생 생활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외부재정지원	1. 현재 어떤 외부재정을 지원받고 있는가? 2. 외부의 재정은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어떠한 기여를 하였으며, 개선점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연계	학부모 참여	1.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2.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주민 참여	1. 지역의 인·물적 자원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지속가능성	인적 재생산	1. 핵심 활동 교원 재생산 방식은 무엇인가? 2. 주민 참여의 재생산 방식은 무엇인가?
	재정지원	1. 외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도 현재의 학교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 방문 조사

- 농어촌 학교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 학생 수 증감 추이 분석, 소재지 주민 수 증감 추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 학교 중 농어촌 학교 관련 재정 지원의 종류(준거 1), 농촌 유형(준거 2), 학교 급별(준거 3)에 따라 <표 4-8>와 같이 유형화하고, 유형을 대표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방문 조사를 실시함

<표 4-8> 방문조사 대상 학교

준거1 (재정지원)	준거2 (농촌 유형)	준거3 (급별)	대상학교
도혁신학교	농촌	초	삼우초등학교
도혁신학교	도시근교	초	수입초등학교
도혁신학교	농촌	초	세월초등학교
도혁신학교	도시근교	초	장승초등학교
전원학교	농촌	중	홍동중학교
창의경영학교	농촌	초	조림초등학교
삼성꿈장학재단	농어촌	초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

나. 분석 결과

1) 삼우초등학교

□ 학교 활성화 과정

- 삼우초등학교 설립 과정 : 두 학교의 통합, 교사 + 지역주민(학부모)의 결합
 - 삼우초등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면소재지 학교인 고산초등학교로의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1999년)되었던 바,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역사회 주민과 일부 교원이 농촌학교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동일지역(완주군 고산면 관내)의 또 다른 통폐합 대상학교였던 삼기초등학교의 학부모와 결합하여 작은 학교끼리의 통합을 이룬 학교임
 - 고산서초등학교와 삼기초등학교는 면소재지 중심학교로의 통폐합 방식을 거부하고, 2001년 11월 각기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고산서초와 삼기초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이래 2002년 4월 교육청의 행정적인 ‘고산서초와 삼기초의 통합 통보’가 있기까지 ‘통합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음
 - 한국의 교육 현장에 산재한 이식 문화를 청산하고 한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문화부림연구회’가 조직되어, 삼우초등학

교에서 농촌 교육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모임을 구성함

- 2002년 송수갑 교사가 완주군 동료교사들의 권유로 통폐합 과정에 있는 고산서초등학교에 부임(내신)하게 되어, 지역사회 주민들과 농촌학교의 현안 논의를 거듭함
- 지역사회 작은학교 운동을 거쳐 전국 최초로 폐교위기의 작은학교끼리의 통합(고산서초와 삼기초)을 이루어내고, 두 학교통합추진위원회 해산 및 삼우초등학교발전협의회를 발족함
- 2003년 9월 1일자로 삼우초등학교로 학교 이름 개칭하고, 삼우초 전면 개축 방안을 확정함. 또한 삼우초 발전 방안에 대한 철학적 접근 논의 및 결합(초빙) 대상 교원을 협의함
- ※ 삼우의 의미 : 삼기초의 '삼', 고산서초 지역인 어우리의 '우' 조합, 한자로는 삼우(三友) 세 벗이라는 뜻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의미함
- 이후 삼우초 교사 결합(인사) 방안 협의, 삼우초 교원초빙관련 전북도교육감, 완주교육장 면담 및 전언 설명, 교원 인사 발표(교장, 교감, 교사 염시열, 나영성, 이현근 전입)를 거쳐 지금의 학교 체제를 구축함

● 삼우초의 변화 : 학생 수 증가

<표 4-9> 삼우초등학교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생수	44	60	79	77	81	85	113	112	113	115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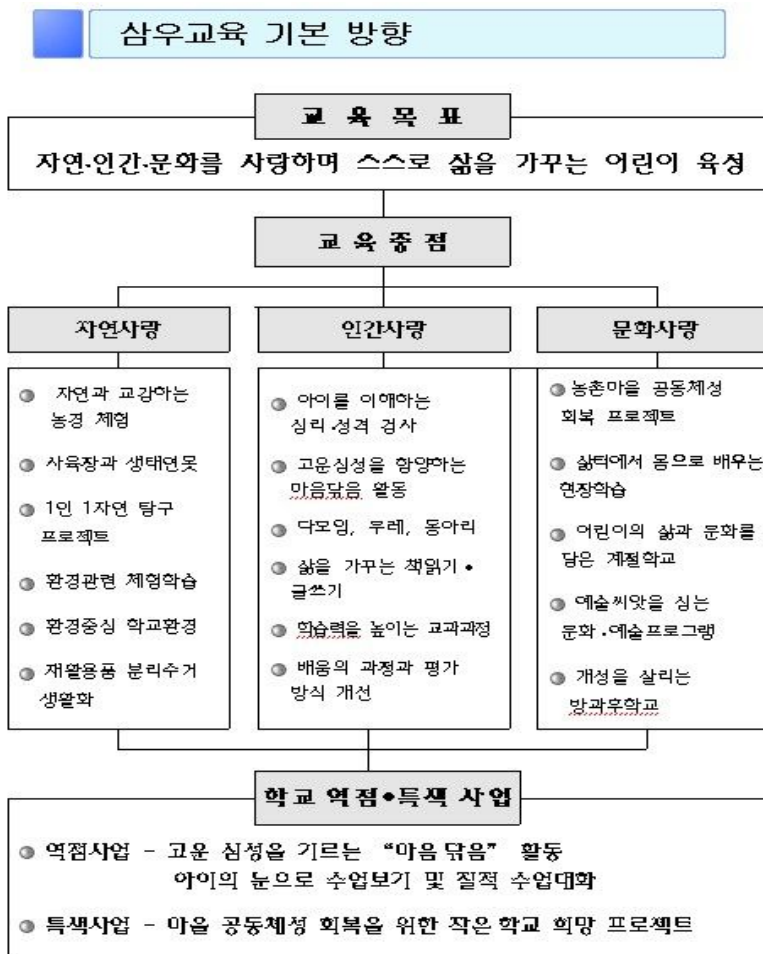
※ 자료: 삼우초등학교 학교방문 연수 프로그램 자료집

- 삼우초는 두 학교가 통합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함. 2008년부터는 지역 외 전입생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20명 정원으로 설계된 교실 여건으로 인해 현재는 11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임. 이 중 돌봄대상(다문화, 한부모,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34% 정도임
- 삼우초 학생은 크게 고산 지역 거주 학생, 봉동 지역 거주 학생, 전주지역 학생, 타도에서 전입 온 학생으로 구성됨. 특히, 이농현상이 심한 다른 농촌과는 달리 지역 학생들의 구성 비율이 높음. 그 이유는 고산 지역이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젊은 귀농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임

□ 교육 내용 및 특색

● 함께 만들어가는 삼우초 철학 : 자연사랑·인간사랑·문화사랑

- 삼우초 교육철학의 특징은 상급기관의 시책의 영향을 받거나, 학교 경영자 교체 때마다 바뀌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구성원이 함께 철학을 만들어 공유하고 새로 전입한 교원들에게는 교육과정 워크숍과 학교 문화로 이어가고 있음
- 삼우초 교육의 특징은 간결함과 지속성에 있음. 교육활동이 많으면 전시 행사가 많아지고, 전시 행사가 많아지면 교사와 아이들이 행사에 매몰됨. 따라서 불필요한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아래 【그림 4-1】 과 같이 학교 철학과 관련 있는 활동을 수행함



【그림 4-1】 삼우교육 기본 방향

● 교육과정의 균형과 조화

- 삼우초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업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점, 소박한 일상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 행사나 특화된 교육과정은 일상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교육과정을 단순화한다는 점 등이 있음

<표 4-10> 삼우초등학교 교육과정

구분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고
아침 활동	08:30-09:00		다도와 명상		학급 자율	그림책 읽어주기	산책 및 자유놀이	※ 기타 1. 아침활동 시간에는 텃밭 가꾸기, 거닐길 산책, 책읽기 등 학급 자율적인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 2. 수요일 오후에는 수요동아리로 운영되고, 토요일은 토요 스포츠활동 및 전통국악 활동으로 운영됨 3. 매월 1회, 월, 금 오후에 질적 수업 세미나 진행
1교시	09:00-10:20	교육과정 운영 (블럭제 수업)						
2교시								
중간 놀이	10:20-10:50	심신체조(입단행공)						
3교시	10:50-11:30	교육과정 운영						
4교시	11:40-12:20							
점심	12:20-13:30	두레활동(청소 및 식사)						
5교시	13:30-14:10	교육과정 운영						
6교시	14:20-15:00							
7교시	15:10-16:00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기타	16:00-16:30	교재연구, 업무처리 등						

- 특히, 위의 <표 4-10>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교재를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블럭제 수업을 실시함. 또한 중간놀이 및 점심시간에는 심신체조(입단행공), 두레활동(청소 및 식사)을 통해 심신 수련 및 리더십, 친밀한 학교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수업이 끝나면 저학년은 돌봄교실로, 고학년은 방과후학교에 참가함.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강점지능을 살려 선택함. 학년군으로 묶어 월,목요일은 영어, 중국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 화,금요일은 음악, 미술, 체육 중 하나를 선택함
- 교사의 입장에서는 월 1회 실시되는 질적수업세미나와 방학 중 실시되는 작은 학교교육연대 활동은 교육관, 아동관을 새로이 세우고 교사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됨

● 교사의 변화

- 자긍심과 자신감 향상

“정말 1주일에 한 번씩 공개 수업을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 시간이 정말 좋다. 웬지 수업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렇고, 우리반 아이들도 신나서 한 시간을 보낸다.”

- 가온 임현주 선생님.‘삼우에서의 4년, 교직경력 4년’에서 일부 발췌

- 교육관, 교육과정, 수업방식의 변화

“삼우에서 1년은 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 제일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건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삶을 보는 눈, 내 자신을 들여다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아이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수업을 보는 눈, 교육을 바라보는 눈 등 모든 관점이 달라졌다. 그리고 확실해졌다..”

- 노을 백인정 선생님.‘벌써 1년’에서 일부 발췌

- 동등하고 평등한 교내 분위기

“내가 느낀 삼우의 문화는 민주적이다. 이제까지 한번도 불합리한 관리자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우리 교실을 보면 환경도 부족한 것이 많고, 나 역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선배들은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는다. 삼우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스스로 느끼고 배우도록 기다려주고,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삼우스러운 방식으로 가르쳐준다.”

- 소요 김현수 선생님.‘늦깎이 교사의 삼우초 적응기’에서 일부 발췌

※ 삼우초 교사들의 한글 호 : 삼우초 교사들은 각자 자신의 한글 호를 짓게 됨. 경영자, 학부모, 학생 모두 그 호를 부름. 그 이유는 우리 전통 계승과, 지위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관계로 소통함을 의미함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지역 자연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삼우초 주위에는 만경강 지류와 나지막한 말미산이 있음. 또한 완주 북부지역의 대둔산과 고산 휴양림, 대아 수목원 등의 관광지가 근거리에 있음. 이러한 지역 자연환경을 벗삼아 계절학교(두레놀이), 현장배움활동, 텃밭활동(농사체험), 자연관찰프로젝트, 주말체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지역 주민과의 소통

- 삼우초에는 초창기 폐교 위기를 극복한 어우리, 삼기리 주민, 학교가 알려지면서 새롭게 전입 온 주민 등 다양한 지역주민 구성원 분포를 보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와 교육’을 매개로, ‘참여와 역할’의 방법을 통해 교류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교육과정 수립 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삼우 이야기 마당’, 자율적인 ‘학부모 동아리 활동’ 등이 있음

● 지역 문화를 이어가는 활동

- 삼우초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 프로그램은 ‘풍물’과 ‘단오맞이 한마당’이 있음. 풍물은 지역의 전통문화 기능보유자를 섭외하여 이루어지며, 단오맞이 한마당은 지역의 농경문화 활동을 통해 모두가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임

●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공간) 활용

- 삼우초는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서 학교를 지향하며 설계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개방을 목적으로 급식실은 별도의 보안시설을 갖추어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지역 문화시설로서 시청각실을, 정보화사회를 위한 공간으로서 컴퓨터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음

□ 향후 계획 및 전망

● 학교-지역-행정이 함께 하는 향기나는 고산향 교육공동체 추진

- 삼우초 사례를 발단으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내 교육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교육분과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기획, 지역 교육기관 실태조사, SWOT 분석 등을 통해 향기나는 고산향 교육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함
- 고산향 교육 공동체는 지역 교육의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지속

적으로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학교-지역사회-행정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 교육문제를 풀어가려는 혁신적 사례라 할 수 있음

2) 장승초등학교

□ 학교 활성화 과정

● 교사-학부모 연대 모임 활성화

- 장승초는 2000년 초 이래 학생수가 5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폐교 예정교로 분류되어 2011년 이전 7년 동안 교육청으로부터 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이 중단된 바 있음. 2011년부터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현재 교실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장승초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같은 교사-학부모 연대 모임은 2010년 겨울에 전주에서 학생모집 설명회를 가짐. 이를 계기로 전주시내 20여명의 학부모들이 초등생 자녀를 장승초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후로도 전주시내 학부모들 사이에 장승초의 학교 혁신 노력이 알려지면서 ‘거대학교-다인수 학급’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전주시에서 30여분 거리에 있는 장승초로의 전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경기도로부터 이 학교로 전학온 2명 학생의 가정은 학교 인근 마을로 이주하였음

● 학생수 증가

- 장승초는 2010년 전교생 9명 학교에서 2012년 현재 65명으로 학생수가 증가함. 장승초가 위치한 전북 진안군 부귀면은 전주시와 30분 거리로 2011년부터 전주시내 학생 유입이 이루어짐. 경기도에서도 2명의 학생이 이 학교로 전학을 왔음

<표 4-11> 장승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단위 : 명)

연 도	2010	2011	2012
학생수	9	57	65

※ 자료: 장승초등학교(2012). 내부자료.

□ 교육 내용 및 특색

●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자’는 학교교육 방향 공유

- 장승초는 학교 활성화를 위한 초기 논의 당시부터 ‘학교교육 철학’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여 참여자 모두의 합의를 거쳐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자”라는 학교교육의 방향을 결정하였음. 현재 교직원들은 이러한 학교교육 철학 내지 학교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지원과 협조 아래 학생들 역시 스스로 ‘어린이 선언문’을 만들어 이를 공유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음

● 교사-학부모 연대 모임 교육 활동

- 2010년 여름방학 기간 중 이 학교 교사 4명 중 3명 다른 학교 교사 4명이 자체 워크숍을 가지며 학교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함. 전주 시내 초등학교 학부모 10여명이 합류하면서 교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유입 대책 등을 논의함
- 장승초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같은 교사-학부모 연대 모임이 가능했던 것은 전북교육감이 ‘소규모학교를 일률적 기준으로 폐교하는 일은 없을 것’을 밝히며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가능했음
- 농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같은 교사들의 노력과 함께 2010년 이 학교로 부임한 학교장 역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학교 활성화가 탄력을 띠게 됨. 학교장은 민주적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학교 변화를 지원함. 이후 2011년에는 이 학교의 변화에 공감하는 행정실장 역시 지원하여 이 학교로 부임하여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원들의 노력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학생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 활동

- 장승초 교직원들은 매주 목요일 ‘교육과정 협의회’를 가지면서 학생 체벌 금지 등 평상시 학생 교육 방법 및 문제 해결의 원칙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전교 학생과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다모임 시간’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학교 공동체 형성을 꾀하고 있음
- 교사들은 매주 수요일 ‘수업연구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연수를 통해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모든 학생 개개인에 대

- 한 교육적 배려를 위한 ‘개별화 교육 방법’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하고 있음
- 이 학교는 매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학부모-교사 월례 모임’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있음
 - 2011년부터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리산 산행’과 ‘진안 고원길 걷기’ 등 행사는 이 학교의 특생 프로그램으로 교사-학생의 공감 형성과 학생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사들은 다른 학교 근무에 비해 업무량 부담은 늘었으나 교육적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이 학교에 근무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음. 모든 교사들은 이 학교에 계속 근무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
 - 장승초는 2011년에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북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2011년에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2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음. 2011년 지원액은 주로 방과후 활동 등에 필요한 교육 시설 및 장비 구입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도서관 사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학부모-교사 연대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 전개

- 장승초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방과후 학교 강사로 참여하고 있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제빵 등 특별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편성 운영되고 있음
- 학부모-교사 월례 모임을 통해 학교의 필요와 학부모의 필요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방과후 학교 강사 지원 등 학부모의 교육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학교 교육과 자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풍토를 형성하고 있음. 장승초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 장승초는 2011년 겨울방학부터 주민 대상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학습자는 주로 마을의 노인들임

□ 향후 계획 및 전망

• 지속가능성 확보

- 장승초 교사들은 ‘교원의 의지와 노력’을 학교 활성화의 최우선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중요하나 재원 확보가 학교 활성화의 결정적 조건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
- 교사들은 희망하는 농촌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특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교사들은 이동근무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학교 혁신의 결과를 학교 운영 시스템화하고 무엇보다 학교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봄. 이에 따라 장승초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주변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교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교사 네트워크를 시도하고 있음

3) 흥양초등학교

□ 학교 활성화 과정

• 동문회 및 교직원 중심의 학교살리기 운동 전개

- 2008년 동문회 및 교직원 차원의 학교살리기 운동을 전개함. 특히 모교 출신 교원(46~7명)을 초청하여 학교살리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함. 학교 살리기를 위해 통학 버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과정 필요의 공감대 형성
- 동문회 기금으로 16인승 콰터스 차량을 동문회장이 자비를 들여 운영함. 기사는 동문회 회원 중 자영업자를 고용(80만원)하여 1년 6개월 동안 운영함
- 또한 학교 홍보물을 제작하고 동문회원 간 조편성을 하여 가가호호 학교 방문 홍보를 실시함. 학교 및 총동문회 홈페이지 탑재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음
- 2010년 2월 말 교장 정년퇴임을 앞두고 동문회, 지역공동체가 협의하여 학교장 초빙 공모제를 결의하고 2010년 3월 1일자 모교출신 학교장 김상섭 교장이 부임함

● **인접 군부대와의 연계·협력 체제 구축**

- 통학구역 내 36사단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사단장 협의를 거쳐 2010년 8월 20일부터 학생 통학을 위한 25인승 군용 버스 운행함. 또한 학교 실습지 532평을 군부대 군인가족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2010년 23가족, 2011년 25가족 주말농장 참여) 학교 홍보 효과를 거둠. 그로 인해 2~3명이었던 군부대 자녀들이 지금은 20명이 넘음
- 이와 같은 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통학구역 내) 다른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도 점차 흥양초로 전입을 오게 됨

● **학생수 변화(매년 3월 1일 기준)**

<표 4-12> 흥양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단위 : 명)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생 수	86	66	42	41	43	46	65	104

※ 자료: 흥양초등학교(2012). 내부자료.

- 2005년부터 다수의 학생들이 아파트 입주로 인해 신축된 동지역 학교로 전출을 나가 학생 수가 감소 후 정체 추세를 보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학생 수가 급증함

□ **교육 내용 및 특색**

● **학교 숲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숲을 활용한 「꿈나무 푸른 교실」 운영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을 기르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함. 꿈자람 으뜸학교 운영비 2000만, 교육지원청 지원금 1500만, 환경체험프로그램학교 운영비 286만원, 총합 3786만원의 예산으로 숲체험교육(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체험교실, 1년에 4회 실시) 및 인성교육, 생태학습, 숲 속 배움터, 모험여행, 숲속 학교 운영, 숲속 학예회 등의 프로그램은 운영함
- 1:1 맞춤형교육과 담임 실명제 운영, 블록타임제 운영(숲 체험장 등반, 전통놀이 지도 등),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인성교육 중심 학교 분위기 조성
- 내실 있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함. 10개 분야 12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특히 서예교실은 각종 휘호대회 다수 입상할 정도로 교육성과가 높은 수준임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홍양교육발전협의회 및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

- 2010년 홍양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학부모,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활동을 실시함. 협의회 구성원은 학교장, 행정실장을 포함한 시의원, 농협협동조합장, 이장, 학교 동창회장, 학교 운영위원, 군인 등이 주축을 이룸
- 학교와 총동문회와의 긴밀한 상호 협조 : 입학생 및 졸업생 장학금 지급, 동문과의 아름다운 산행, 총동문회 체육대회 모범학생 표창, 자랑스런 홍양인 발굴 표창 등
- 인근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한 교육활동 전개 : 학교폭력예방교육(경찰), 군인강사 초빙 안보 특강 및 호국 문예행사 참여, 병영체험, 학예회·운동회 군악대 지원 등
- 지역주민, 학부모,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실시 : 홍양 교육가족 한마당 잔치, 지역축제 협찬(홍양 2리) 등

□ 향후 계획 및 전망

● **작은 학교의 장점 유지 및 생태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 향후 6학년 학생 수 120명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며, 교육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고, 작은학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측면의 강점을 살려나갈 계획임
- 급식소 개축, 다목적 강당 신축을 통해 학교 내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학교를 지역사회 학습장으로 개방할 예정임
- 숲 체험장의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자연친화적 교육활동 전개,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분양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연 생태체험장으로 지속적 활용

4) 수입초등학교

□ 학교 활성화 과정

● **학생수 증가(매년 3월 1일 기준)**

<표 4-13> 수입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단위 : 명)

년 도	2009	2010	2011	2012
학생 수	58	106	123	136

※ 자료: 수입초등학교(2012). 내부자료.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09년에는 학급당 5~15명의 소규모 학급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부터 학생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급당 16~33명 수준의 규모로 발전함
- 2005년부터 다수의 학생들이 아파트 입주로 인해 신축된 동지역 학교로 전출을 나가 학생 수가 감소 후 정체 추세를 보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학생 수가 급증함

□ 교육 내용 및 특색

● 차별화된 「아름다운 수업 교육과정」 운영

- 소인수 학급에 맞는 맞춤형 개별지도,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운영으로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운영
- 국·영·수 중심의 지적 수월성과 성적 경쟁 중심에서 탈피하여 집단적 지성, 인성, 창의성, 예술적 감수성, 공동체성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함
- 이를 위해 순위를 매기지 않는 서술형 평가 실시 2회, 단원평가, 수시평가 등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 통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함
- 또한 기초학습 부진아를 위해 학습보조교사 2명을 채용하여 국어와 수학 수업에 직접 활용하고 방과 후 학습지원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은 물론 학업성취 능력 향상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학생들이 학교에서 존중 받고 스스로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동(주 1회)과 학생의 희망에 따라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였으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 수업 방법을 혁신하고 있음

● 창의·지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실시

- 문화예술 체험학습으로 전교생 무대 활동 중심의 여름 계절학교와 연계한 무드 리 축제 운영, 표현활동 중심의 가을 계절학교로 학교 외부 환경 꾸미기 활동 운영, 학년별 현장 체험학습 각 4~6회, 내나라 프로젝트(남도 탐방), 산촌체험 학교 운영 등 실시
- 생태 텃밭 가꾸기를 통한 생태체험 학습으로 녹색환경의 중요성 지도
- 유니세프와 연계한 사랑 나눔 프로젝트 학습전개 및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 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살리는 방과후학교 운영

- 교과, 예체능, 체험 등 13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영역의 경쟁력 있는 방과후 교육을 실시함
- 토요일 휴무일 확대에 의한 등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특새 학교 운영 및 방학 중 다양한 캠프 운영

- 배움과 돌봄의 학교공동체 형성

- 학생 중심의 학습 방법의 개선과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토론학습 전개로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서 존중 받으며 신나고 즐겁게 배우는 학교
- 학교 구성원간 상호적인 돌봄을 위해 생활 교육의 체계를 세우고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어머니, 아버지 폴리스제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학생들의 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놀이 문화 만들기를 위해 전래 놀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30분 중간 놀이를 통해 충분히 쉬고 다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시간 운영을 실시함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체험학습

-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 방과후 교육 시 지역 내 귀농·귀촌인 자원을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 실시

□ 향후 계획 및 전망

- 학교공동체를 넘어 지역 교육공동체로 발전 방안 모색

- 수입초의 경우 학교 내부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노력으로 인해 활성화가 일어났지만, 외부로부터 전입해 온 교사들이 많다는 점은 연계·협력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공동체를 넘어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학교 활성화 효과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의 발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02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 분석

가. 분석 개요

□ 목 적

- 농어촌마을의 교육력 회복과 지역 재생 관점의 관점에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진 사례 분석
- 정치·경제·문화·교육·생활 분야의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를 교육공동체 활동, 공동학습, 교육운동과 같은 집단적·교육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농어촌마을 교육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색
- 농어촌 교육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 중심의 대응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교육 운동들과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연계 방안 모색

□ 대 상

- 전남 해남‘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 충남 홍성‘풀무지역교육공동체’
- 충남 공주‘충남교육연구소’
- 충북 청원‘청원교육문화연대’
- 전북 완주‘고산향교육공동체’

□ 내 용

- 교육공동체 활성화 과정
 - 지역 교육 현황, 교육공동체의 개요, 교육철학이념, 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
- 활동 내용 및 특색
 - 교육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활동 내용 및 특색을 분석함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교육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사명과 역할,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 관련 기관 및 사업 등과의 연계·협력 체제를 분석함
- 향후 계획 및 전망
 - 교육공동체 활동 분석을 통한 향후 계획 및 전망, 개선방안 등을 분석함

□ 방 법

- 문헌조사
 - 농어촌 교육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물(논문, 보고서, 자료집 등) 분석
- 심층면담조사(FGI) 및 간담회 참석
 - 일부 교육공동체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공동체 대표 및 구성원과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삶의질 향상 전문가 토론회' 참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함

나. 분석 결과

1)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전남 해남)

□ 교육공동체 활성화 과정

-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해보고자 199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공부방들이 현재 32개가 됨. 이중 30개가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지역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교육네트워크는 공부방뿐만이 아니라 해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도 포함되어 연대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
-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는 빈곤으로부터 억압받고 소외된 농어촌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힘쓰며, 교육적 제반 활동과 연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02년 해남지역 공부방들 사이에서 연합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서울공부방연합회’에 연결이 되어, 단체를 조직하는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아 연합회를 조직하고, 7개 공부방인 모인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가 출범함
-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는 연계해 온 학교나 기관 및 단체, 인적 자원들이 많음. 이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4-14>와 같음. 2007년에는 2개의 기관이었지만 2011년에는 10개 기관 및 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음

<표 4-14>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연계 프로그램

연 도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MCA : 상담 프로그램 ▶ 공공도서관 : 미술 프로그램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MCA : 상담 및 성폭력예방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계 ▶ 공공도서관 : 미술 프로그램 제공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 토요일동아리활동 협조 ▶ YMCA : 청소년새맛이축제 ▶ 청소년지원센터 : 동반자상담/미술심리치료 및 자아존중 프로그램/청소년상담자교육 ▶ 생활체육협회 : 토요일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지도강사 봉사 ▶ 생태문화학교 : 생태체험역사탐방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해남군청 : 어린이큰잔치 협력/실무자역량강화교육 공동 주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글로벌리더 프로그램 교육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청소년지원센터 : 집단상담 및 이유 ▶ 성장가족상담센터 : 가족치료상담 ▶ 한울남도생협 : 생협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교육 ▶ 해남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 종합사회복지관 :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원 : 쉽고회복, 마음나눔 ▶ 청소년문화환경센터 :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 해남군청소년지원센터 : 자존감향상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치료상담 ▶ 성장가족상담센터 : 가족치료상담 ▶ 한울남도생협 : 생협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교육 ▶ 해남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 종합사회복지관 :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락밴드 페스티벌) ▶ 생태문화학교 : 역사문화탐방 ▶ 책 먹는 맘 :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 JCF : 축구동아리

□ 활동 내용 및 특색

- 2007년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역교육네트워크사업으로 선정 되었고, 18개 배움터와 문화예술사업 관련 기관(체험학습장) 7개, 예술강사 3명이 참여해 시작되었던 사업이 2011년 30개 배움터와 교육복지기관 9개, 체험학습장 15개, 협력단체 8개, 예술강사 19명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네트워크사업’으로 발전 하였음
- 이는 ‘해남에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을 연결하는 것’, ‘지역 어른이 교사가 되고, 지역 공간이 배움터가 되는 것’이야말로, 후에 해남인으로서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음

<표 4-15>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삼성꿈장학재단 지역교육네트워크 사업 현황

년 도	주 참여배움터	문화예술프로그램	강사 수	체험학습장(참여배움터)
2007년도	18개	3개 분야	3명	7개소(18개 배움터)
2008년도	24개	9개 분야	10명	8개소(27개 배움터)
2009년도	24개	13개 분야	17명	14개소(29개 배움터)
2010년도	25개	7개 분야	10명	11개소(27개 배움터)
2011년도	25개	12개 분야	19명	15개소(30개 배움터)

- 위 <표 4-15>에서 주 참여 배움터와 참여 배움터의 숫자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주 참여 배움터들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배움터들에게 역사문화탐방이나 체험학습장 같은 단기체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네트워크 연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지역교육기관과 연계활동
 - 교육지원청, YMCA, 군청, 복지관, 재활센터 등 해남지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함
 -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연합회 실무진에게 제공해 연계시키는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고, 2년차 지속하던 교사 상담 프로그램을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평생교육원이나 농업교육센터 등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교사들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시킴

- 면사무소, 농협, 학교 등 공공기관들과 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네트워크의 주 대상들이고, 이런 네트워크가 면 단위에서 구축되면 군 단위보다는 아이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지역 밖으로의 연계

- 연합회의 네트워크 확장은 해남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임
- 2011년 여름 광주에 있는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와 공동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교육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배움터들과의 만남도 몇 차례 가짐

□ 향후 계획 및 전망

●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필요

-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음
- 지역에 흔한 학원 하나도 없고, 학원을 가려면 읍내까지 다녀야하는데, 경제적 사정, 거리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엔 방법이 없음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 오랜 구상 끝에 '비전설정 리더십'과 '인문학 강좌'에 '공동체 라디오 캠프', '문화기획단'이 더해져,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0년도 '청소년문화 아카데미'가 만들어짐
- '인문학 강좌'는 배움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해남지역 전체 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을 개방하자는 계획을 세움
- 교육네트워크가 향하는 마지막 종착점은 아이들이고 그래서 면단위 소규모 네트워크를 위한 '문화나눔'을 시작한 것도, 지역 전체가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 아이들을 돌보자는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을 키워내자는 생각에서였음

2) 풀무지역교육공동체(충남 홍성)

□ 교육공동체 활성화 과정

- 풀무학교는 1958년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세워졌으며 ‘더불어 사는 평민’이라는 교훈으로 기독교교육, 농민교육,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을 교육 실천의 원리로 삼고 있음(홍순명, 1998; 김조년, 1998; 민병성, 2006)
- 홍동의 가난한 농촌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지역이 학교이고, 학교가 지역”라는 교육 이념 아래, 초창기부터 학교는 지역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과 협력해야 하며, 지역의 교육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학교에서 실험(협동 조합, 어린이집 사업 등)을 먼저 한 후에 자립단계가 되면 지역으로 내보내는 형식을 취함. 생산, 가공, 소비유통, 교육, 보육, 문화, 유기농 환경,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의 많은 사업들이 그 시작은 풀무학교의 작은 실험에서 출발하였고 지금은 지역 재생을 담당하는 여러 단체와 기관으로 발전, 졸업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유기농가공공장의 설립 운영을 비롯하여, 요구르트, 우유, 제과제빵, 각종 잼, 야채효소 등을 공동 소비·판매하는 풀무학교생활협동조합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음
- 2001년부터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서 학생들의 활동이 교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학교와 지역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측되었음. 이에 풀무학교는 새로운 학교 구조인 전공부를 설립하게 됨
- 2006년에는 홍성교육청에서 제안한 지역 방과후 학교 개설을 받아들여 예산 지원을 받고 7월부터 월 1회의 방과후학교 ‘햇살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음

□ 활동 내용 및 특색

- 풀무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정신에 기초한 다양한 실험을 하였는데, 이는 향후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생산자회 등 공동생산, 공동구매 원칙의 농민 활동으로 확산되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생태교육의 이념 아래 풀무학교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유기농업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1970년대 후반의 정농회(正農會)를 발족하여 최초의 유기농 단체를 결성함
- 1990년 홍동면 문당리에 오리농법에 의한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생태마을 조성한 농촌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도 풀무학교 출신에 의해서 주도되었음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자연생태조성우수마을, 정보화시범마을 등 각종 농업정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곳으로 풀무 졸업생은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수립, 환경농업교육관건립, 도농교류사업, 유기축산 등 환경친화적 마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음
- 문화교육 영역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홍동신문, 지역출판사(그물코, 시골문화사)와 책방 운영, 주민 성금에 의해 설립된 갓골어린이집, 여성농업인센터, 학부모단체 홍동아이사랑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2001년에 개교한 풀무학교 전공부는“지역에 뿌리내리는 평민대학”을 목표로 하는 2년제 연장과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생태농업 전문 역량을 육성하는 활로를 찾고자 개설되었음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지역 기관들은 풀무학교 재학생들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풀무 학생들이 예비 지역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풀무학교의 이념과 실험들은 졸업생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에게 파급되어 선순환적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됨
- 풀무 고등부 학생들은 1년에 한 차례 지역의 기관·단체들을 방문하여 견학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요구르트공장, 목장 등에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함

□ 향후 계획 및 전망

- 최근 고등부의 새로운 변화로 인해 지역과의 연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대안적 구조로 만들어진 풀무학교 전공부는 지역사회학교·대학으로서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풀무학교의 전공부는 환경문제와 농업 위기, 농촌의 단절이라는 상황에서 생태 농업을 실천하는 생명의 수호자,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축가를 기르는 풀뿌리 주민대학, 더불어 사는 지역과 사회 구현의 대안대학으로 발전하려고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3) 충남교육연구소(충남 공주)

□ 교육공동체 활성화 과정

- 2009년 9월, 농촌지역 및 농촌교육의 재생에 대해 논의하던 교사교수-지역 주민을 포함한 130여 명의 뜻을 모아, 지역 교육운동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연구 실천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 교육운동의 연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조직되었음
- 현재 300명 이상 규모의 연구소로 성장하여, 사무국장1명, 상근직원(방과후학교 교사) 7명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삶의 교육, 상생의 교육’, ‘지역에 뿌리내리는 교육’의 교육이념을 가지고 농촌의 전통적인 가치 발견, 마을 내 다양한 자원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
-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과 상생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육 연구’를 주요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창립 초기의 회원들은 연구력 배양을 위한 준비단계로 동양철학, 기획력, 교육과정, 학력관 등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전개함. 이후 농어촌 교육정책 국제비교, 농어촌 학교교육 실상분석, 농촌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을 수행
- 2005년에는 공주대 사범대학 농촌교육 특성화사업단(NURI, 지방대학 집중육성 프로젝트)과 농촌교육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주대 교육학과와 공동사업팀을 구성하여 농촌교육, 평생교육, 청소년문화교육, 대안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협력적으로 수행하였고, 2006년 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를 운영하며 사업의 내용을 주말학교, 계절학교, 농촌문화체험학교 등으로 확대함

□ 활동 내용 및 특색

- 봉현 마을학교의 사업은 창립 초기인 2000년, 당시 초대 소장이었던 권정안(공주대 한문교육과) 교수가 마을 아이들을 위한 '마을 서당(書堂)'을 운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방과 후 공부방이 운영됨. 봉현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마을의 초·중 학생의 90%이상이 마을학교를 이용하게 됨
- 마을학교는 농촌마을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교육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병행하여 마을 전체를 교육공동체로 묶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를 운영하며 농촌지역의 아동·청소년,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농촌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농촌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동(땀)의 가치,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
- 주민을 위한 '주민교실'과 주민이 가르치는 '농경문화계승교실'을 통해 풍물(사물놀이)교실, 문해정보화교육 등을 운영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연구소, 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 상근자들이 인근 지역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하거나, 충남 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진행
- 연구소 인력 풀로 체험, 캠프 활동을 기획하여 해당 학교와 연계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과 외부를 소통시키는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음
- 2008년 민간장학재단(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지역 교육네트워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 기관·단체들과 협력하여 '충남농촌교육희망찾기네트워크'를 발족하여 협력을 통해서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이 네트워크에는 공주대 교육연구소, 대전충남WISE(여성과학인교육)센터, 대전충남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춘추서당 등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향후 계획 및 전망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촌교육의 문제를 실감해온 교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의 전개가 가능하였고, 대학 교수와 함께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역량과 결합이 가능했음

- 지역 아동·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연계와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음

4) 청원교육문화연대(충북 청원)

□ 교육공동체 활성화 과정

- 1987년 6월 시민운동에 참여하였던 진보적 청년모임 “일하는 사람들” 결성함. 1998년에 모임의 명칭을 ‘사회교육센터 일하는 사람들’로 개칭하고 농촌 지역 교육운동에 참여(청주시 → 청원군)하면서 2006년 11월에 거북이학교를 중심으로 9개 단체가 청원교육문화연대를 결성함
- 2009년부터는 주택공사와 연계하여 각 국민임대 아파트단지에 9개소를 비롯하여 점차적으로 사회교육센터를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만들고 교육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토착형 마을 만들기를 진행함
- 청원교육문화연대는 “누구나 경제적, 시대적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사회교육은 물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천명함

□ 활동 내용 및 특색

- 초기구성원들은 지역의 정치적 이슈나 국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원 수를 늘리면서 자체 내부 역량 강화에 주력함. 또한 교육공동체에서 끝나지 않고 생산 공동체로서 재정적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큰 특징임
- 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사회적 가치 공유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교육을 계속하였고, 이와 함께 지역 과제인 소외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활동 방식으로써 주민들과 소통함
- 청원교육문화연대는 청원 지역의 지역교육문화발전을 위해 첫째, 청원군 지역의 아동·청소년·성인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을 협력하고 지원한다(교사교육, 교

육활동자료집발간, 연합활동 주관). 둘째, 주민교육공동체를 위한 생활 실천 운동을 한다(환경친화적 마을만들기, 교육문화축제, 작은도서관 지원), 셋째, 민주주의 참여자로서의 지역 일꾼을 발굴·육성한다(지방자치/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교육사업), 넷째,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을 전개한다(지역아동센터 체험캠프, 역사탐방, 미디어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는 목적과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연대를 구성하는 단체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옥산, 쌀안, 강외)와 대우꿈동산, 거북이학교, 돌꽃방어린이도서관,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청원민예총, 사회교육센터 일하는사람들 등 9개로, 이 기관들의 단체장이나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회교육센터 일하는사람들'의 회원이었으며 지역 연계에 큰 역할을 함
- 사회교육센터라는 조직에서 성장한 주체들이 점차 넓은 지역으로 교육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면서 자연스러운 교육네트워크로 연결됨. 다양한 사업에서 사회참여, 공동체, 연대 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10여 년 후에 청주 지역의 시민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향후 계획 및 전망

- 지자체 통합 등 강력한 정치적 변수들이 생성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공동체적' 연대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연대 조직들이 점점 커지고 기능별로 분화되어가고 있는데 각 조직들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 사회참여교육이나 교육연대 등 독자적 성격의 사회교육을 지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의 실제적인 생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아동센터의 아동이 자라서 회원이 되거나, 상근자가 되는 경험은 자체 순환 구조를 가지는 주체 형성적 가능성을 보유함

5) 고산향 교육공동체¹⁵(전북 진안)

□ 교육공동체 활성화 과정

- 전북 진안 삼우초등학교의 활성화 사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지역에서도 삼우초 교육처럼 만족도 높은 교육이 고산지역 전체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이에 완주군청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 장기 발전 계획을 요구했고, 고산면주민자치센터는 2010년 7월 장기발전계획 수립안을 작성, 2010년 11월 9일 고산면 지역발전위원회를 발족하게 됨. 2011년 5월에는 지역발전위원회 내 교육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됨
- 월 2회 열리는 교육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준비하고 실행을 뒷받침 함. 2011년 6월 8일 시작된 고산의 향기나는 교육을 위한 교육분과의 활동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기획, 지역 교육기관의 실태조사, SWOT 분석 실시로 이어짐

□ 활동 내용 및 특색

- 고산향 교육과정 운영 세부추진 과제 설정
 - 고산향 교육 발전을 위해 고산지역 소재 교육기관 및 단체의 소속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교육 주체 1차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2011-2012년 사업 계획을 수립함(2011. 9. 8)
- 고산향 교육포럼
 - 고산지역의 교육 관련 지역 지도자, 관계기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고산지역 교육의 현실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 등 미래지향적인 고산지역의 교육비전에 대한 공유를 위해 년 1회의 전체 모임을 갖고 대안을 찾는 학습 과정을 가짐
- 고산향 교육 한마당
 - 지역 주민중심, 행정주도의 축제의 틀을 벗어나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지원자, 지역 인사들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 재능과 기량을 서로 나누고

15) 나영성(2012).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희망 만들기: 고산향 교육공동체의 현황과 향후 전망.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1-10.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즐기는 축제의 마당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를 개방하고, 학교와 지역이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

- 지역교사 및 학부모 모임
 - 지역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 교육 내용에 대한 연계점과 공유점을 만들어 고산향교육공동체의 비전을 나누고 방과후 교육 및 돌봄 영역을 연구함
- 학교교육 지원단 모임(재능기부자)
 - 현재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함. 고산향 교육공동체에 대한 취지나 비전을 공감한 상태에서 다양한 인력풀을 만들고 고산지역의 다양한 재능기부자들이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학생 고산향 동아리 운영
 -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연계하는 고산향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고산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과 건강한 학생문화를 유도함. 동아리 활동은 평소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교육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통해 공연형태로 발표함

<표 4-16> 고산향 교육공동체의 2011-2012년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

사 업		대 상	시기·횟수
고산향 교육포럼	포럼준비, 실행	고산교육공동체 300명	상반기 1회
고산향 교육한마당	준비, 홍보, 진행	고산교육공동체 1,500명	하반기 1회
학생 고산향동아리활동	국악동아리 활동 등	초중고 예체능동아리	연중
	문화동아리 활동	초중고 문화동아리	연중
	봉사활동	고산향 봉사동아리	연중
지역교사 모임	교육공동체 이해	전체교사	연 2회
	고산향교육과정 연구	연구부장	연 2회
	고산향 방과후 교육	방과후교육 부장	연 2회
	고산향 방과후 돌봄	생활부장	연 2회
학부모 모임	학교 대표자 모임	학부모회임원 10명	연 2회
	학부모교육	고산학부모	연 1회
	학부모동아리모임	동아리회원 70명	월 1회
지역교육 지원단 모임	강사교육	재능기부자	연 2회
	연계교육프로그램개발	재능기부자	연 2회
지역교육 신문발행	학생기자단교육	총20명	17회
	신문발행		연 6회
운 영	사무국운영	실무책임1, 간사1	
	교육공동체추진단회의	위원	15회
	기관 대표자 회의	교육기관장	연 2회

- 지역교육 신문 발행

- 학생들을 기자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사고능력 배양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촉진함. 또한 신문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활동과 연계의 틀을 만들어 나감
- 더욱 발전된 형태로 각 주체들을 기자단으로 구성하여 고산지역공동체의 소통의 도구(지역신문)로 발전되면 더 좋을 것임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 지역이 먼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계기가 됨
 -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와 교사 중심으로 학교교육에만 국한되었던 것에서 교육의 문제는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지역사회 안에서 확산되었고, 많은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행정기관의 원만한 협력과 지원도 이끌어 냄
 -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인식 개선의 효과가 있었음. 학교가 지역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초·중·고등학교의 벽을 넘어 교육공동체의 확산에 동참함
- 지자체 일반 행정 및 교육 행정과의 연계
 - 주민자치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서 가중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지역교육이 활성화 됨을 보여줌. 고산향 사례는 지자체의 일반 행정과 학교 교육에 관한 관계 개선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사례이며, 지역교육에 대한 행정의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줌
 - 혁신학교 사업과 같은 교육청의 중요 정책사업이 교육청과 개별 해당학교만의 일로 취급되었던 관행에서 연계를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역의 학교들과 공유함
- 초·중·고 연계 교육의 중요성 부각 및 공감
 -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와 공유의 중요성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감함. 학생에게 지역 정체성이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이의 중요성일 인식하고 공감하며, 그 해결과정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기대 효과가 있음

-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점이 농촌공동체의 과제로 재인식됨
 -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농촌 공동체의 건강성도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는 문제와 농림의 삶의 질 문제를 따로 생각할 수 없음. 즉, 찾아오는 농촌 학교, 농촌 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 귀농·귀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계획 및 전망

-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자발성에만 의존
 - 교육공동체 활동을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자발적 헌신에만 의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귀농·귀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에 대한 전담 사무국 및 인력 배치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임. 이는 지역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질 것임
- 지역사회 유지 발전을 위한 배움, 나눔, 성장의 자리 부족
 - 교육공동체 구성과 유지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마을 구성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간 연합 사업 문화를 장려하여 경험 공유와 교류의 기회 확대가 필요함
- 학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의 연계 부족
 - 현재 학교 예산만으로는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함. 지자체의 교육 관련 재원은 교육행정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지자체의 판단만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개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함
- 지역 교육공동체에 대한 발굴과 지원, 지역 젊은층이 성장할 것임
 - 교육공동체는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젊은층의 문화를 건강하게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임

03 농어촌 교육 활성화 요인 분석

가. 분석 개요

□ 목 적

- 본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교육 및 관련 정책 현황, 농어촌 학교 및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 및 요인분석,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
- 교사 및 학부모 중심의 학교 교육 현장과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 교육공동체 연계협력, 지역 교육청 및 지자체, 장학재단,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체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농어촌 교육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전라남도·전라북도 전문가 간담회

- 일 시 : 2012.
- 장 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삼우초등학교
- 내 용
 - ▶ 지역 농어촌 학교 현황 및 관련 정책 현황
 - ▶ 농어촌 학교 활성화 요인 분석
 - ▶ 농어촌 교육공동체 활성화 과정 및 특성
 -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도출
- 참여자 : 삼우초등학교 나영성 교장, 송수갑 교감, 전남 혁신학교 담당자 김춘성

• 강원도 전문가 간담회

- 일 시 : 2012. 11. 12, 13:00~16:00
-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초등학교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내 용

- ▶ 지역 농어촌 학교 현황 및 관련 정책 현황
- ▶ 농어촌 교육 활성화 요인 분석
-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도출

- 참여자 : 흥양초등학교 김상섭 교장, 강원도 교육연구원 최광익 연구사

● 경기도 전문가 협의회

- 일 시 : 2012. 11. 20, 13:00~18:00

-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초등학교

- 내 용

- ▶ 지역 농어촌 학교 현황 및 관련 정책 현황
- ▶ 농어촌 교육 활성화 요인 분석
- ▶ 작은학교교육연대 활동 사례 및 특성 분석
-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도출

- 참여자 : 작은학교교육연대 회원 교사(남한산초등학교 황영동 교사, 두창초등학교 방기정 교사, 서종초등학교 정배분교 김중기 교사, 세월초등학교 이강두 교사, 수입초등학교 박상혁 교사, 정종필 교사 조현초등학교 최탁 교사)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일 시 : 2012. 12. 18, 14:00~16:00

- 장 소 :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

- 내 용

- ▶ 고산향교육공동체의 현황과 향후 전망
- ▶ 농어촌 마을단위 교육협의체 구성·운영
- ▶ 고산향교육공동체 운영 주체의 역할
-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발전 방안 도출 및 정책 제안

- 참여자 : 삼우초등학교 나영성 교장, 고산향교육공동체 이근석 집행위원장, 박현정 사무국장

□ 내 용

● 지역 농어촌 학교 및 교육 현황

- 지역의 농어촌 학교, 학생 수 및 비율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른 폐교 현황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인식

● 지역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 특성

- 지역 교육청의 통폐합 정책 현황
- 농어촌 교육을 위한 교육청 및 지자체의 자체적 정책 사업(혁신학교) 현황 및 결과

● 농어촌 학교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 및 요인

- 농어촌 학교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 과정 및 특징
- 농어촌 학교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적 요인
- 학교 및 교육공동체 교육 활동 내용 및 특징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 및 전망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방안 제안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제안

□ 방 법

- 다양한 농어촌 학교 및 공동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
 - 농어촌 교육 문제 및 인구 유출 현상이 극심한 전라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등 이른바 농도(農道) 중심의 교육 전문가 및 담당자 섭외
 - 농어촌 학교장(교감), 교육청 정책사업 담당자 및 연구사, 작은학교교육연대 회원학교 교사, 교육공동체 관련 담당자 등 농어촌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키워드 중심 재분석을 통해 농어촌 교육 활성화 요인 및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방안 도출함

나. 농어촌 교육 활성화 요인

- 농촌 학교의 사례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농촌 학교 활성화에는 혁신을 주도한 교장의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따라주는 교사, 이들 학교구성원이 만들어낸 농촌형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주민의 활발한 학교운영 참여 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교육공동체적 접근

-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시킨 대부분의 사례는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부모, 주민들의 교육공동체적 태도를 들 수 있음. 이러한 사례는 교장이 주도한 경우 보다는 교사들의 집단적 노력에 의한 경우가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남. 교사집단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에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더해졌을 때 교육공동체적 접근에 따른 활성화 사례를 뚜렷이 볼 수 있음
- 교육공동체적 접근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교원들이 전문가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 ‘반성적 대화’, ‘교육실천의 공유’, ‘학생 학습에 대한 초점’, ‘상호협력’, ‘규범과 가치 공유’라는 전문가 학습공동체의 요소(Louis, Marks & Kruse, 1996)가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 교사로서의 실천적 행위에 대한 자각(반성적 대화), 실천 결과의 탈사유화(deprivatization)(교육실천의 공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교수-학습 토론(학생 학습에 대한 초점), 복잡한 상황에 대한 집단적 대처(상호협력), 교육과 사회화의 중요성에 관한 도덕적 이해(규범과 가치 공유) 등 전문가 학습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가능성 확보의 문제는 학교 활성화의 요인이자 학교가 활성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도 함. 외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계기로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학교 참여를 이끌어 낸 사례는 많으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향후 학교 활성화가 불투명해 보이는 학교도 있음
- 학교 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학교들은 핵심 활동가를 재생산하는 구조임.

교원의 경우 교장보다는 교사 재생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교 활성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내 교육인적 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유지하였음. 그 결과 학교와 지역간의 지속가능한 연계 협력 체제를 형성하고 있음

□ 교장의 리더십(역량)

- 폐교 직전이던 학교가 불과 몇 년후에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도시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학교로 바뀐 경우, 이면에는 학교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교장의 리더십이 있었음
- 교사들이 초임시절 가졌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움직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나아가 학부모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그리고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학교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를 만들었음
- 학교 활성화 초기에는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된 후에는 혁신적 학교문화의 정착을 위해 교사들에 대한 권한이임과 학부모와 지역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였음. 특히 교사가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한데, 활성화 이후에는 교장이 중심에 서지 않고 환경 조성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혁신의 분위기가 학교풍토로 자리잡도록 하였음

□ 농촌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열정

- 상당수 농촌 학교의 활성화가 교장의 리더십이 먼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교사들이 그 리더십에 동참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여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냈음. 특히 도시 아이들, 학부모와 비교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농촌 아이와 학부모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농촌은 떠나야 할 곳이 아닌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를 걸어볼 만한 곳임을 깨닫게 해주는 교사가 있기에 학교 변화가 가능했음
- 학생의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이 반영된 농촌형 교육프로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였음

-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혁신적인 교장이 떠나간 이후에도 학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학교의 의사결정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풍토를 만들고 지켜낸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했음

□ 농촌형 교육프로그램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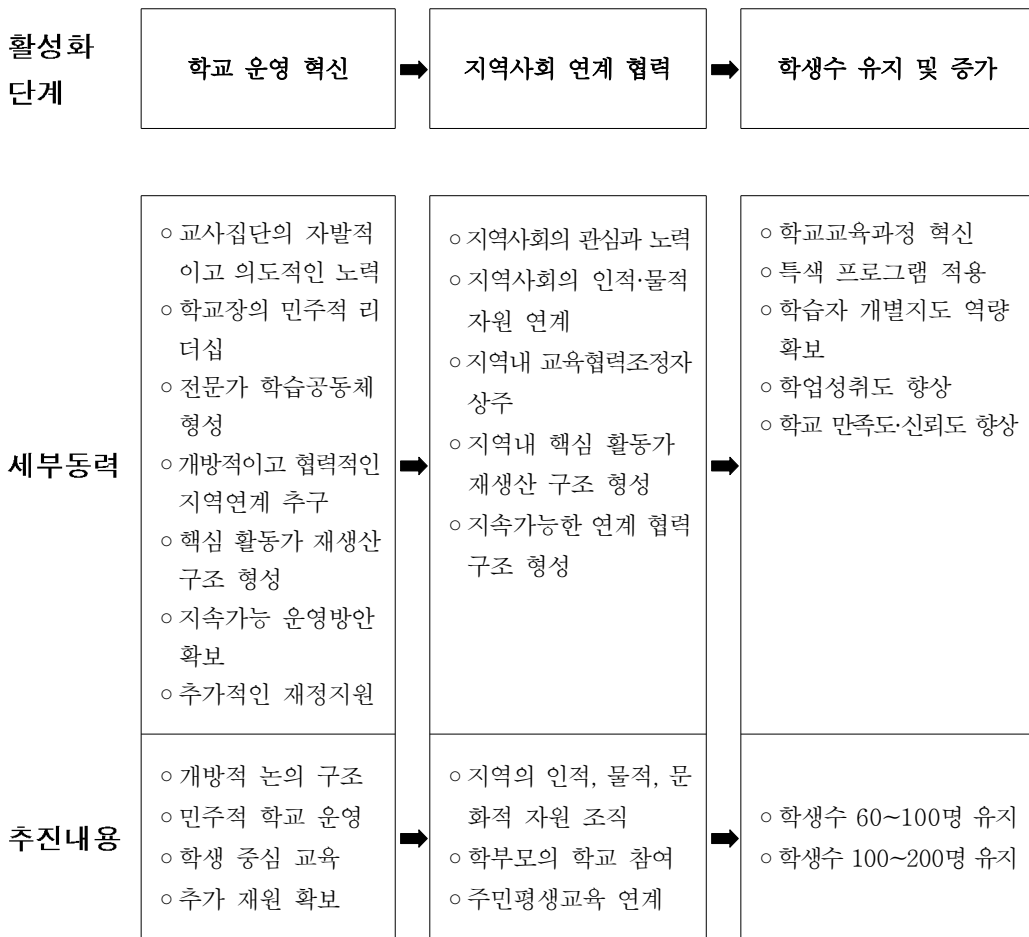
- 활성화된 농촌 학교에서는 도시 학교와는 달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가정에서의 돌봄기능이 가미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더불어 사교육 없이는 힘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있었음
- 자존감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성공해야 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있었음.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및 지역의 성공사례 등 지역 배우기, 지역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은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살 만한 곳이고 희망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음. 또한 농촌지역사회의 사라져가는 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농촌형 교육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었음

□ 적극적인 주민 참여

- 농촌 학교의 혁신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 학교를 혁신시킨 교장과 교사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지역주민의 혁신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그 학교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이러한 지역주민 참여풍토 조성을 위해 대부분의 활성화된 학교는 먼저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있었음.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었음
- 농촌 학교를 학생을 위한 교육 이상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음. 오후 5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하고, 방과후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었음. 특히 아이들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교육, 아이들 문제에 대한 상담지원을 통해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음

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 경로

- 농어촌 학교 활성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학교들에서 ‘학교 운영 혁신(1단계)-지역사회 연계 협력(2단계)-학생수 유지 및 증가(3단계)’라는 과정으로 학교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각 단계의 세부 동력과 추진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 4-2】와 같음



【그림 4-2】 농어촌 교육 활성화 경로

□ 1단계 : 학교 운영 혁신

-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한 학교 사례들은 대부분 교육공동체 형성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혁신하는 일로부터 활성화가 시작되었음
- 학교 운영 혁신을 위한 세부 동력은 △교사집단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노력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전문가 학습공동체 형성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지역연계 추구 △핵심 활동가 재생산 구조 형성 △지속가능 운영방안 확보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보 등임
-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필요조건이라기보다는 충분조건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에 의존한 사례는 향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체적으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반면 교육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학교 운영 혁신을 추구한 사례들은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줄더라도 활성화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학교 운영 혁신을 위한 추진 내용으로는 △개방적 논의 구조 형성 △민주적 학교 운영 △학생 중심 교육 △추가 재원 확보 등임

□ 2단계 : 지역사회 연계 협력

- 학교 활성화 과정은 학교가 우선 내부적으로 운영 혁신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이후 과정에서 지역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지역사회 연계 협력의 세부 동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역 내 교육협력조정자 상주 △지역 내 핵심 활동가 재생산 구조 형성 △지속가능한 연계 협력 구조 형성 등임
- 학교 활성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위한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 조직 △학부모의 학교 참여 △주민평생교육 연계 등임

□ 3단계 : 학생수 유지 및 증가

- 농어촌 학교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학생수의 유지 및 증가로 나타남. 이는 학교의 학생수만 늘어나는 교육귀촌과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증가하는 귀농

귀촌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교 규모 측면에서는 외부학생 유입으로 60명~100명 규모를 유지하는 경우와 학생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100명~200명 선을 넘는 경우도 있음

- 농어촌 학교 활성화로 학생수가 증가하기 위한 세부 동력은 △학교교육과정 혁신 △특색 프로그램 적용 △학습자 개별지도 역량 확보 △학업성취도 향상 △학교 만족도·신뢰도 향상 등임. 이러한 학교 교육의 성과가 해당 지역 주민과 인근 도시 주민에게 알려질 경우 도시 거대학교·과밀학급 대신 농어촌 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관심이 증폭됨

04 시사점

가. 현황 및 문제점

□ 높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비율

- 전남의 경우 6학급 이하 학교, 즉 통폐합 대상 학교 수가 초등의 경우 전체 학교의 39.1%, 중등은 57.3%, 고등은 21.7%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남지역 학생 추이를 예상해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학생 수는 큰 폭으로 줄지 않지만 학교수는 2015-2016년 기준으로 현재의 65%수준으로 자연 통폐합되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전북의 경우 농산어촌 학교 비율이 초등은 전체 학교 수의 62.6%, 중등은 62.5%, 고등은 47.7%로 농산어촌 학교의 비율이 높은 편임(2011년 3월 기준). 또한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수가 초등은 41.9%, 중등은 31.2%, 고등은 4.5%로 초·중등학교의 소규모 학교 비율이 높음

□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현황

- 전남의 경우, 초·중학교는 1면 1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군 단위별로 1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1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이른바‘거점 고등학교’정책으로 지역 고등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임.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주민 호응도 70% 이상이 찬성으로 나왔으나 막상 추진하다 보니 지역 고등학교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김

-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초·중등학교 1면 1교 유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통폐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유치-초-중등 급별 통합학교를 연구 중임. 이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한 울타리 내에서의 외형적 통합이 아닌 교육과정 교류, 교사 교류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통합학교를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중등교사가 초등교육을 일부 담당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 전북의 경우“학교 단위 통폐합”사업과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역량강화 정책이기도 한“스스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농산어촌 학교”를 만들기 위한 소규모 학교의 자구 노력을 유도함
- 하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이 통폐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위해 교육청에 학교 통폐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 지역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통폐합 추진

- 위와 같이 전남 및 전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의 요구이든 교육 당국의 정책적 투입이든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재정 효율성의 측면이나 행정 편의주의적 특성이 강함. 그렇다 보니 도내 혁신학교 사업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보이던 학교가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그 특성이 깨져버린 사례가 있음
-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통폐합을 통한 일시적인 인센티브만을 바라고 지역 교육청에 통폐합을 요구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 행정 당국은 지역적인 관점보다는‘주민의 요구’라는 단편적인 당위성으로 통폐합을 추진함

나.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적정규모’의 재개념화

- ‘적정규모’에 대한 개념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재정 효율화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학생 수 120명 이하’, ‘60명 이하’ 등의 절대적이고 양적인 틀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적정규모라 하는 것이 은연중 교과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음. 학교가 유지되려면 적정규모가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는데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학생이 5명 있다거나 10명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들여다보는 프레임을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간담회 중에서 : 전남 혁신학교 담당자 김춘성 교사>

- 따라서 ‘적정규모 개념’은 산업화시대 인구도시화 측면의 양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작은 지역에는 작은 학교’, ‘효과적인 학교는 모든 규모에서 가능하다.’는 관점의 질적 개념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함
- 즉,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논리 기재로서 단순 처방적 성격의 적정규모가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가지도록 촉진하는 측면에서 예방적 성격의 적정규모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함

□ 농어촌을 유형화·세분화한 맞춤형 정책 필요

- 일반적으로 농어촌이란 지역이 가진 단편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사업이 구상·추진되는 것이 아닌, 농어촌이 가진 다각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그것을 유형화·세분화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농어촌 교육 및 학교의 살리기가 가능할 것임

모든 농어촌을 한 프레임으로 놓고 학교와 농어촌의 살아가는 문제를 보면 정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생략...○○지역은 실제로 3개의 학교가 통합되었으나,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3개의 학교를 합쳐도 100명이라고 보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읍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합치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근데 학부

모들이 찬성한 이유가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데 이 지역은 편모나 편부가정,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 있는 아이들이 60%에 육박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니 찬성이었다...생략...또한 주변에 전남 상위 5%에 드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혹시 합쳐지면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도 한 몫을 하였다...생략...실은 3개의 학교 중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학교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꺼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 간담회 중에서 : 전남 혁신학교 담당자 김춘성 교사>

- 결국 위의 사례처럼 지역특성에서 오는 학생들의 보육 문제는 학교 통폐합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였고, 다른 방안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과제였음. 위 사례와는 반대로 농어촌 학교 살리기의 입장에서 지역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투입할 때에도 농어촌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유형화하고, 세분화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교육공동체 기반의 지역교육협의회(가칭)의 설치 및 구성원의 다양화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농어촌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육과 학교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공유하는 ‘지역교육협의회(가칭)’이 설치·운영되어야 함. 실제로 지역 사회에도 교육 관련 협의회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협의회의 명칭이 뭐든지 간에 교육 전반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뒷받침할 수 있는 협의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과제이다. 모든 지자체마다 관련 협의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 특히 논의 주체가 읍 중심이고 지역이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읍 중심의 몇 개 학교에 편중되고 있다.

<전문가 간담회 중에서 : 삼우초등학교 송수갑 교감>

- 결국 지역의 교육협의회는 지역 전체 차원에서의 교육에 대한 과제 해결을 위한 모임으로 성장해야 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그 역할이 예산의 배분을 넘어 지역의 교육의 지향점 모색 및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 과제 해결을 모색하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임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집행의 재구조화 필요

-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이 소위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에 투자하고 있음. 하지만 투자되는 예산이 대부분 소모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는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지자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의 경우 25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10억원 정도가 급식에 쓰여 지고, 나머지 15억원 정도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돈인데, 일단 소모성 경비가 많고, 무의미하게 지원되고 있다...생략...특히 지자체 자체가 영어교실, 영어캠프 운영 비용 등에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생략...

<전문가 간담회 중에서 : 삼우초등학교 송수갑 교감>

- 따라서 지역의 실질적 교육 기반이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로 지자체들이 제정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설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되는 경향이 대부분임. 그러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투자된다면 좋을 것임

□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 시스템 구축 필요

-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들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함. 마찬가지로 농어촌 교육 및 학교를 살리는 정책들도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전남은 혁신학교 예산을 출발은 1억으로 했는데...생략...1억원의 예산 중 2천만원은 교무행정 지원하고 8천만원에서 매년 줄여서 마지막에는 2천만원만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생략...그 이유는 돈 때문에 부러운 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변화를 담고 싶게 만드는 의식의 전환이 목표이다...생략...그래서 혁신학교 지정을 심사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곳은 다하고, 교원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인사가 필요하다면 마련해주고, 그래서 3년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무엇이 변화되더라...생략...그 때 가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생략...

<전문가 간담회 중에서 : 전남 혁신학교 담당자 김춘성 교사>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결국 농어촌 교육 및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된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들이 투입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우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농어촌 교육 및 학교가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향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학교의 문화를 무시한 일방적, 획일적 정책 투입이 아니라 맞춤형 정책이 체계적으로 설계·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형 자율학교 모델과 정책 필요

- 농어촌 지역이란 특성이 고려된 자율학교 모델과 정책이 구현되어야 함. 이러한 모델이 개발·구현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과 학교는 활성화될 수 있음
농촌자율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교사 전반을 두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도시로 가고 싶다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농촌에 정착하려는 교사들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생략...교육적인 자기 삶의 살고 싶다는 것이...생략...분교라는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만 나오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교사집단도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 40개 혁신학교가 있는데 도시형 학교는 5개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촌이기 때문에 이 교사들은 재미를 느끼고 교육적 헌신도 하고 싶은데, 인사이동 문제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일부 풀어 놓기는 했는데, 불안정한 상태이다.

<전문가 간담회 중에서 : 남한산초등학교 황영동 교사>

- 즉, 첫번째로 도시와 다른 '농어촌'이라는 특성에 맞는, 두 번째로 각 농어촌마다 특성에 맞는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 교육과정, 교원, 학교 인프라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형 자율학교 모델 정책이 필요함
- 또한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것은 정책의 투입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교사들의 헌신과 책무가 담보되어야 함. 실제로 농어촌 학교의 본교와 분교 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분교 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 모델을 구현 추진해야 함. 또한 학교 교사들의 순환근무에 대한 인사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하며, 농어촌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제5장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1.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전략 및 추진 구조
2. 법적 기반 강화 및 제도 개선
3.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4. 농어촌유학 지원 사업
5.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
6. 정부 및 민간 연계 사업

제 5 장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의 농어촌은 다양한 사회 변화들이 분명히 들어나는 최전선에 있음. 이는 도시의 미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어촌 교육의 취약성은 도농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농어촌의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위협하고 있음.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이농의 주 원인인 농촌 학교의 폐교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정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농어촌 교육(학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 자생적 공동체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하겠음

01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전략 및 추진 구조

가. 지속가능한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아이들이 귀해지는 시대’로 진입

-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기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즉, 도시·농촌 할 것 없이‘아이들이 귀해지는 시대, 마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곧 학생들이 줄어들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학교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지금 당장은 극과소화 되는 농촌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인구 유출이 심한 부도심 및 도시 외곽 지역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 즉,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지역적 측면에서 농어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사회 현상의 측면에서 교육 분야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작은 학교에 대해 재정 효율화, 교육력 제고와 같은 효율성·효과성 관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골에 살면서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한명 한명이 미래 사회에 활동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는 교육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적·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 정적 관점에서 동적 관점으로 정책 관점 전환 필요

- 농어촌 교육 정책 투입의 관점을 구분한다면 정적 관점과 동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임. 정적관점은 1970~80년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도시화·공동화 되던 시기에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처방적·일괄적으로 투입되던 정책 관점을 의미하고 동적 관점은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인으로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농촌 현실에 적용되어야 할 유기적이고 유연한 정책 관점을 의미함
- 미래의 농어촌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농어촌시장 세계화에 따른 FTA문제, 국제화에 따른 다문화 가정 및 자녀 문제, 지역격차에 따른 삶의 질 불균형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얽혀서 발생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농어촌 관련 정책 관점을 설정할 시, 내·외적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 문제를 예측하면서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의 동적 관점이 필요함

□ 조장적·악순환적 정책이 아닌 예방적·선순환적 정책 투입 필요

- 지금까지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책 투입은 문제 개선을 위한 예방적·선순환적 성격이 아닌 조장적·악순환적 정책이었음. 대표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장기적·유기적인 성격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단기간에 나타날 교육 재정적 효과를 위해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상 학교 및 학부모들에게 통폐합을 권장하는 조장적·처방적인 성격의 정책이었음
- 더욱이 통폐합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논리는 그 교육적 효과조차 면밀하게 조사 및 검토되지 않은 시점에서 작은 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강요되고 있음. 또한 작은 학교로 인한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작은

학교 자체가 비교육적이며 교육적으로 황폐한 곳으로 치부되고 있음

- 특히, 통폐합의 기준으로 ‘교육 회복 및 활성화 가능성’, ‘지역 사회 내 학교가 가지는 역할 및 기능’ 등과 같은 질적인 기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적정 규모’라는 양적이고 절대적인 기준만을 적용함으로써 활성화와 개선의 여지가 보이던 학교들마저 통폐합시키게 됨. 즉, 통폐합을 지연시키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실험을 통해 학교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화 징후가 보이는 지역 및 학교에 정책을 선행 투입해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향후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들은 현상 및 문제보다 앞서서 투입되어 그것을 더욱 악화시킬 수 조장적·악순환적 성격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성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예방적·선순환적 성격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

근시적 교육재정 효율화가 아니라 거시적 국가재정 효율화 고려

-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적 논리는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화를 통해 통폐합에 따른 학교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절감으로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임
- 본 보고서의 제3장 3절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효과에서 제시했듯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 재정적 효과 그 자체도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유출, 지역 경제 황폐화로 인해 다른 재정투융자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점도 면밀히 고려해야 함. 즉, 농어촌 교육 문제는 특정 부처 관점의 근시적 교육재정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거시적 재정효율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생활과 삶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적 관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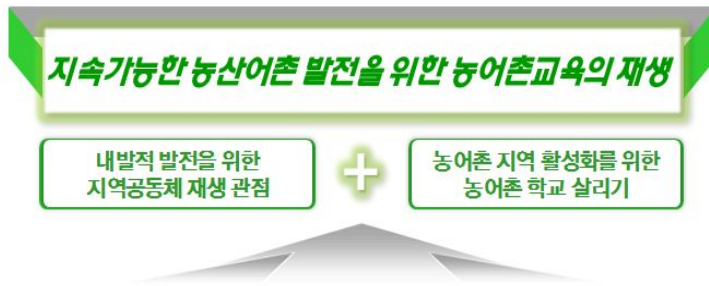
- 이제 학교에서만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음. 학교 교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도 끊임 없이 학습하게 되며 그 학습은 인간의 생활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음. 이처럼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혼자 자라는 ‘내 아이’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데 있어서는 교사나 학부모 개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먼저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이루어진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 지자체, 교육행정, 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합적인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활동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임

나. 비전 :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어촌교육의 재생

-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비전은“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어촌 교육의 재생”으로 설정함
- 이는 지속가능하고 내발적인 발전을 위한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재생의 관점과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연계함으로써 가능할 것임. 즉, 지역 주민, 학생, 학부모 등 농어촌에서 생활하며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교육 주체의 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농어촌 교육 재생의 토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 내 교육 주체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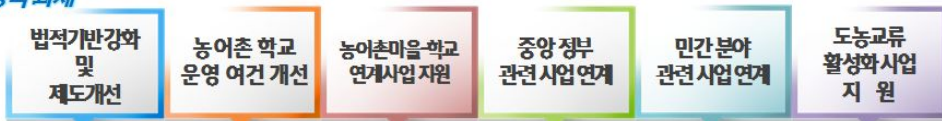
비 전



전 략 :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관점

- 01 농어촌 인지적 정책 관점에서 교육지원 정책 지원
- 02 교육 주체간의 파트너십(지역주민과 학교협동) 구축
- 03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활성화 전략 모색

정책 과제



【그림 5-1】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재생 관점

- 현재 농어촌 교육 문제의 뿌리는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경제적 생산성의 부족에서 시작되었음. 근대화·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산어촌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고 이는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었음. 이 같은 농어촌의 사회적 변화는 지역 내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의 부산물로서 농어촌 학교의 과소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지역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음
- 농어촌 교육의 해법은 지역 공동체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며, 건강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요청됨.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교육공동체는 새로이 나타난 개념이 아님.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자기완결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족 연합체로서 지역 주민이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지역마다 고유의 교육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 이는 교육력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역사회가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하나의 생태계로서 우리가 사는 농산어촌 지역은 생활의 장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경제적 욕구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복지적 요구 등)를 충족시키는 공간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어촌교육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복원되는 상태를 지향해야 함
- 이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모든 부문들 간에 지역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 단체, 기업, 행정 등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기를 유발하여야 함. 지역 학습체제는 단순히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쇠퇴해가는 지역의 부흥(renaissance)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함
-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높아가고 이에 따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개념이 지역의 성장을 단순한 경제성장으로 단정 짓지 않고 사회적 자본의 성장, 즉 지역 공동체의 형성으로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학교를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장소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만들어 어른과 아이,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

- 농어촌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교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하락하고 있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약하다는 것임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어촌학교 정책은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1980년대 추진하였던 소규모학교통폐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그동안 5452여개의 농어촌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서 사라졌고 이에 농어촌 지역 재생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 재생의 방법은 후속 세대를 위한 농촌학교살리기와 연계되어야 함. 오늘날 농촌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학교가 문을 닫게 됨으로써 농촌 지역은 정서적으로 공황상태를 맞고 있고, 지역의 후계 인력 양성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촌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도시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을 초래하고 있으며 농촌 학생들의 경우는 다양한 학습기회 부족으로 인해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더욱이 소규모학교통폐합 정책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농어촌 학생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하고 있는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무너져 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둘째, 지역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셋째 학생을 포함한 전 주민들의 역량 개발에 필요한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다. 전략 :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점

□ 농어촌 인적적 정책 관점에서 교육지원 정책 지원

- 지난 40 여년 동안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농어촌 학교에 대한 관점은 「농촌학교의 문제」 = 「교육정책 문제」 라는 등식으로 여

겨 농어촌 인지적 정책 관점이 전무하였음. 농촌 학교의 문제를 교육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임. 물론 이러한 관점은 농어촌 교육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당면한 해결과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모든 농촌교육 문제의 조건이 독립된 하나의 사회문제(즉 교육문제 만의)로서 취급되어도 올바르게 현상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인가.

- 과연 도·농교육격차 문제가 해소된다고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이농을 멈추고 “돌아오는 농촌”은 실현될 것인가.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한다면 그것은 너무 순박한 바램이라고 생각됨. 농촌교육 문제는 산업(농업)문제, 사람(농업인)문제, 지역(농촌)문제의 3가지가 사회구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법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따라서 소규모학교통합 정책은 농촌 인지적 관점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교육 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지역 개발 정책과의 연계, 문화 관광부의 농촌 문화지원정책과의 연계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과제임. 따라서 매해마다 농식품부에서 농촌 학교 및 평생교육의 농촌 영향평가 지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 과제를 발굴 지원하여야 함과 동시에 지자체 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함

□ 교육 주체간의 파트너십(지역주민과 학교협동) 구축

- 농촌 지역의 문제와 농촌 학교의 문제는 그 성격이나 심각성이 같으며, 또한 상호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 해결과 교육 문제의 해결은 농촌 지역과 농촌 학교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이용 가능한 교육 시설을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함
- 따라서 농촌 학교를 살리는 것이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현안과제로 지역과 학교의 협동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지역 주민과 교사간의 협력 없이는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지역민)의 협력으로부터 시작됨
- 농어촌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관련 주체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의한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교육경비지원을 비롯하여 학교 급식지원, 학교시설 지원, 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예산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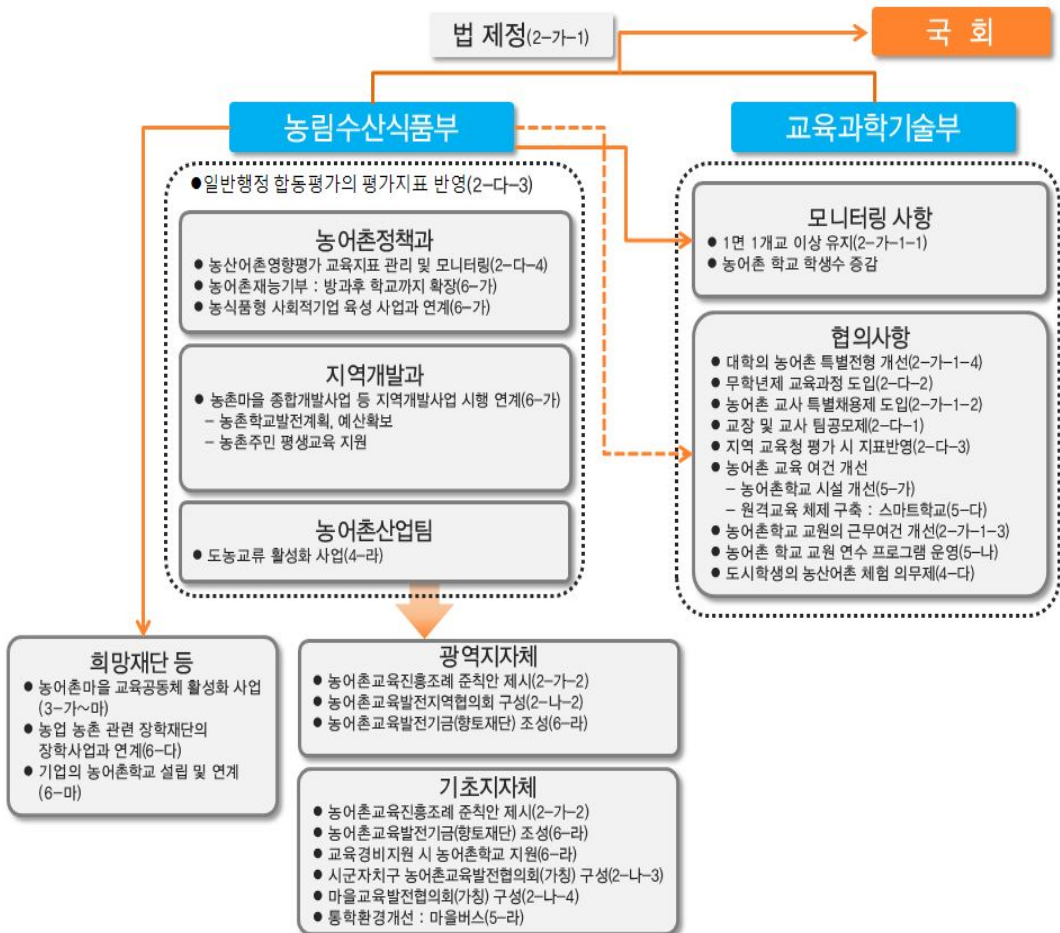
원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농산어촌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활성화 전략 모색

-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농촌 문제와 관련해서 농촌 학교를 효율성 중심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음. 특히 전통적인 농도(農道)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전남, 전북, 강원 등)의 경우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과 관련하여 지역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농촌 지역이 붕괴되면 도 전체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따라서 해당 지역 고유의 문제를 중앙정부의 방식이나 타 지역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임. 호주의 마운트에브린(Mt. Evelyn)이라는 마을은 고유한 평생학습마을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 정책의 가장 큰 의미로 “지역적 요구와 도전(local needs and challenges)에 대한 지역적 해법(local solution)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함.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 지역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지역 나름대로 찾아야 함
- 많은 실태 분석에서 농촌 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여 획기적인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교육청의 교육행정 서비스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임. 현재 이러한 불만족의 핵심 요인은 지역 주민과 학교간의 소통이 부족하여서 생기는 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동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만들어지지 않을 상태를 반증하고 있는 것임. 이에 교육청은 지역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고유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
-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할 경우에도 기존의 중앙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고유의 정책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임. 예를 들면 현재 행·재정적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분교제도 폐지하고 교사 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농산어촌학교 수석교사제나 장기(15년 이상) 근속 인사,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는 공문서 분류체계 시행, 복식수업·상치교사 문제의 해법 찾기 등의 제도가 구상되어야 함

라. 추진 구조 및 역할 분담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추진 구조 및 역할 분담은 아래 【그림 5-2】, <표 5-1>와 같음. 연계·협력 및 역할 분담의 주체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수산식품부 내 농어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어촌산업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등이 있을 것임



【그림 5-2】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추진 구조

<표 5-1>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역할 분담

정책과제	추진사업	주관 및 협의주체			
		농림수산 식품부	교육과학 기술부	지자체	
2. 법적 기반 강화 및 제도 개선	가. 법적 기반 강화	1)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	○	
		1)-1. 절대학교 지정(1면 1개교 이상) 조항 삽입		○	
		1)-2. 농어촌 교사 특별 채용제 도입		○	
		1)-3. 농어촌학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	○	
		1)-4.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개선		○	
	나. 운영 기구 설치	2) 농어촌 지자체를 위한 농어촌교육진흥조례 준칙안 제시	○		○
		1) 중앙 농어촌교육진흥위원회(가칭) 구성	○	○	
		2)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법정 기구 실효화	○	○	
		3) 시군자치구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가칭) 구성	○	○	○
	다. 제도 개선	4) 마을 교육발전협의회(가칭) 구성	○		
		1) 교장 및 교사 팀공모제 실시 / 근무 기한 연장		○	
		2) 무학년제 교육과정 도입		○	
3)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합동평가의 평가지표 반영		○			
3.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4) 농어촌 영향평가의 교육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			
	가.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	○	○		
	나.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지원 사업	○	○	○	
	다. 기초지자체 협력 교육 지원 사업	○	○	○	
	라.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컨설팅 및 평가	○			
4. 농어촌 유학 지원 사업	마.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	○	○	
	가. 농어촌유학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		○	
	나. 농어촌유학센터 지원 사업	○			
	다. 도시 학생의 농어촌 체험 의무제 시행	○	○	○	
	라. 농어촌학교의 도시민 홍보 지원	○		○	
5.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마. 농어촌 학교를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	○		○	
	가.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 지원		○	○	
	나. 농어촌 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다. 농촌형 스마트 교육 체제 구축		○	○	
6. 정부 및 민간 연계 사업	라. 농어촌 학생 교통 편의 제공 : 마을버스 지원	○		○	
	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어촌개발정책 사업과 연계	○			
	나. 각 부처의 교육문화복지 정책 사업의 농어촌마을/학교 신청 시 인센티브(가점) 부여	○	○		
	다. 농업·농촌 관련 장학 재단의 장학 사업과 연계	○			
	라. 기업의 농어촌 학교 설립 및 연계	○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일반행정 합동평가의 합동 평가의 평가지표 반영(2-다-3)

농림부 → 국회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제안
- ※ 국회의원 연구모임(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농어촌발전포럼) 공청회 제안
 - 주제(예) 1면 1개교 이상 절대학교 지정, 농어촌교사특별채용, 특별법 제정 등

농림수산식품부 → 교육과학기술부

- 모니터링 사항
 - 1면 1개교 이상 유지(2-가-1-1)
 - 농어촌 학교 학생 수 증감 추이
- 협의사항
 -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개선(2-가-1-4)
 - 무학년제 교육과정 도입(2-다-2)
 - 농어촌 교사 특별채용제 도입(2-가-1-2)
 - 교장 및 교사 팀공모제(2-다-1)
 - 지역 교육청 평가 시 지표 반영(2-다-3)
 - 농어촌학교 시설 개선(5-가)
 - 농촌형 스마트 체제 구축(5-다)
 - 농어촌 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2-가-1-3)
 - 농어촌 학교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5-나)
 - 도시 학생의 농산어촌 체험 의무제(4-다)

농림부 → 농어촌희망재단

-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3-가~마)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농업·농촌 관련 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연계(6-다)
- 기업의 농어촌학교 설립 및 연계(6-마)

□ 농림부 → 부서 간

- 농어촌정책과
 - 농산어촌 영향 평가의 교육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2-다-4)
 - 농어촌 재능기부 사업의 범위를 농어촌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확장(6-가)
 - 농식품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6-가)
- 지역개발과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 시행 연계(6-가)
- 농어촌사업팀
 -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4-라)

□ 농림부 → 광역지자체

- 농어촌교육진흥조례 준칙안 제시(2-가-2)
-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2-나-2)
- 농어촌교육발전기금(향토장학재단) 조성(6-라)

□ 농림부 → 기초지자체

- 농어촌교육진흥조례 준칙안 제시(2-가-2)
- 농어촌교육발전기금(향토장학재단) 조성(6-라)
- 교육경비지원 시 농어촌학교 지원(6-라)
- 시·군 자치구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가칭) 구성(2-나-3)
- 마을교육발전협의회(가칭) 구성(2-나-4)
- 농어촌 학생 교통 편의 제공 : 마을버스 지원

02 법적 기반 강화 및 제도 개선

- 현재 농어촌 지역의 교육 및 학교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명확한 관련 규정과 함께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또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중앙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 및 방안의 모색과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해야 함. 도 차원에서는 조례의 제정과 함께 정책이 실제 시·군·구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평가토록 함

가. 법적 기반 강화

1)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가칭)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필요성

- 현재 농어촌 교육을 진흥을 위한 법률은 1967년 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과 40여 년이 지난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는 개별 법령에 일부 조항들이 삽입되어 산발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 등에 한정된 정책으로 농어촌 학교에 대한 대책이 아니며, 학생에 대한 혜택이나 교육진흥보다는 교원들에게 수당과 승진가점을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이며, 의무교육 진흥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의 고등학교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임의조항이 대부분으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실정임
- 농어촌교육 지원 관련법 제정에 대한 그 동안의 국회와 학계의 요구와 노력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법 제정 시 검토되었던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방안

구분	1안) 특별법 제정	2안) 관련법의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위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 통합·조정 (농산어촌 교육 + 학교교육)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학교 외)	학교교육
과제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폐지 (일부 조항 흡수)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의 교육 관련 조항 삭제(조항 흡수)	삶의 질 법 내 농촌 교육 지원 조항 보강	관련법 개정 (조항 수정·보완)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 초·중등교육법 ▶ 교육공무원법 등

- 1안) 특별법 제정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대체 입법화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특별법에 흡수하고 폐지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흡수하고, 관련 조항 삭제
 - 국회와 학계가 구상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 흡수
- 2안) 관련법 개정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의 도서·벽지 개념의 재정립 : 법의 적용범위를 농산어촌 전체 지역으로 광역화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당연 규정으로 개정
 - 이 외에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 개정

□ 법의 구조와 내용 : 선행 관련법과 국회와 학계가 구상한 법안의 내용 종합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일부 조항

- ▶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教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教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 ▶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

-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제20조)
-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제21조)
- ▶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제22조)
-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제23조)
- ▶ 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제24조)
-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제25조)
-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제26조)
-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제27조)
- ▶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제28조)

● 국회와 학계가 구상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

- ▶ 위원회 및 실행 기구의 설치
- ▶ 자율학교 지정
- ▶ 1면 1개교 이상 유지 및 폐교의 특례
- ▶ 방과 후 지원
- ▶ 교원의 배치 및 우대 : 우선 배치, 별도 정원, 장기근무, 처우 개선, 업무 경감 등
- ▶ 교원 특별 채용 : 10년 의무 복무
- ▶ 학습·보호시설 : 마을 공부방 등
- ▶ 주민교육지원 : 지역사회문화센터 설치 등
- ▶ 대학 특례 입학
- ▶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농어촌 교육발전 기금 조성 등

<법 제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

- 농어촌 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중앙-광역-사군·자치구)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 지원 실행 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지자체의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지역 근무 교원의 인사와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대학 특례 입학에 관한 사항
- 교원 양성 대학 졸업자의 농어촌 학교 특별채용 및 의무근무연수에 관한 사항
-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도시 학생의 농산어촌 체험 의무제 시행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지역의 자율학교 허용 등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주민을 위한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농어촌 학교의 방과후 교실, 마을단위 공부방,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학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1. 절대학교 지정(1면 1개교 이상) 조항 삽입

필요성

- 2009년 현재 전국의 1,205개 면지역 가운데 초등학교가 없는 곳은 21개이며, 그 중 14개의 면지역은 분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가 없는 면은 397개로 나타난다. 이는 학생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1면 1개 학교 이상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절대학교 지정 필요

추진방안

- 특별법 내 1면 1개 학교 이상 절대학교 지정 조항 삽입
- 절대학교 지정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반영
- ※ 자율학교 운영(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농촌형교육과정운영 등),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주민 평생교육을 위한 거점 시설 등 복합적으로 활용
- ※ 절대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1) -2. 농어촌 교사 특별 채용제 도입

필요성

- 현재의 농어촌지역 근무 교사는 본인 희망이라기보다는 강제순환 보직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사 상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라는 인식이 강함.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나 지역사회학교로서의 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음

추진방안

- 농어촌 출신 학생이 학교장(교육장)의 추천 혹은 농어촌 특별전형에 의해 교대·사대에 입학하고, 졸업 후 임용을 통해 농어촌 학교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 실시
 - 교대·사대 입학 시 수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 학교장(교육장) 추천을 받는 농어촌 학교장(교육장 추천제), 정시의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입학
 - 지역별 초·중등 임용시험에 지역의 농어촌 학교 비율을 반영한 농어촌교사 특별 전형을 신설하여 임용 시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 실시
- 예) 초/중등 교사 선발 인원 : 일반(90명) / 장애(3명) / 농어촌(10명)
 - ※ 해당 시·도의 농어촌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10%임을 의미함

1) -3. 농어촌학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성

- 농어촌 학교는 거대 규모의 학교에 비해 교사의 수가 적은 것이 일반적이나,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업 및 행정 업무량은 교사의 인원과 상관없이 학교마다 비슷함

- 더욱이 교사의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한 명의 교사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은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임

추진방안

- 농어촌 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점 및 장기 근속자 우대
- 농어촌 학교 교사의 근무 수당 지원 및 현실화
- 행정사무보조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 농어촌 학교 교직원 사택 운영 및 외부 숙소 임대료 지원
- 농어촌 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 기회 우선 부여 등

1) -4.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개선

필요성

-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제14호 가목에 의거 시행중인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대학마다 상이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도 적용에 있어 읍지역 학생과 면지역 학생의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농어촌특별전형 제도 악용을 위한 위장전입의 여지가 있음
- ※ 2012학년도 기준 전국 농어촌 특별전형 경쟁률 0.98 : 1(미달을 의미함)
- ※ 2012년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학교 기숙사 등의 주소지로 부모가 위장전입을 해 부정 입학이 의심되는 사례 479명 적발, 그 중 7명만 입학 취소 처분 <한국일보 2012. 08. 09>

추진방안

- 농어촌특별전형의 확대 : 현재 모집인원의 4% 이내 ➔ 3년 후 6% 까지 상향
- ※ 모집상한 : ('96년) 2% 이내, ('97년~'05학년도) 3%이내
- 대학별로 상이한 농어촌특별전형 자격기준의 통일 및 강화 필요

- 위장전입 방지 및 실질적인 농어촌 특별전형의 적용을 위해 모든 대학 선발 전형에서 ① 학생 본인 농어촌지역 초·중·고교 9년 이상 이수 및 ② 학생+학부모 농어촌 거주 요건을 3년(기존)에서 6년 이상으로 확대된 기준 동시 적용(①+②)

<표 5-2> 연도별 농어촌특별전형 자격 기준

대 학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가형) 본인+부모거주	(나형)본인 교육과정 이수	(가형) 본인+부모거주	(나형)본인 교육과정 이수	(가형) 본인+부모거주	(나형)본인 교육과정 이수
서울대	중·고교 6년 이수 + 고교 3년 거주	초 3년 이수 + 중·고교 3년 이수	중·고교 6년	9년(중·고교 6년 포함)	중·고교 6년 이수 + 고교 3년 거주	초 3년 이수 + 중·고교 3년 이수
연세대	중·고교 6년 거주	12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고려대	고교 3년 거주	12년	중·고교 6년 거주	12년	좌동	좌동

- 면지역 이하 소재학교 및 거주자 / 장기간 농어촌 학교 재학 및 거주자 가산점 필요
 - 농어촌 특별전형 내에서도 면단위 이하 지역 농어촌학교 재학생 및 거주자, 초 + 중 + 고등학교(12년이상)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및 거주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준의 가산점 적용이 필요함
- 대상지역 설정에 있어 농어촌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특별전형 지역 판단을 위한 근거 기준에 대해 교과부가 대학에 제시(통계청의 읍·면 단위의 인구 규모, 농지 비율, 농가 인구 등의 자료 반영)

2) 농산어촌 지자체를 위한 농어촌교육진흥조례(가칭) 준칙안 제시

필요성

- 농산어촌교육 관련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 되는 농어촌교육진흥조례는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전체적인 체제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대학 특례 입학, 교원의 수당 및 가산점, 의무복무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할 수 없지만,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농산어촌 교육 진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들은 보다 세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음

□ 추진방안

-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농어촌교육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준칙안 제시

<광역시·도의 조례에 반영할 내용>

- 광역 차원의 농산어촌 교육발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광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실행 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주민을 위한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농어촌 학교의 방과후 교실, 마을단위 공부방,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학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반영할 내용>

- 시·군·구 차원의 농산어촌 교육발전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시·군·자치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실행 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주민을 위한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농어촌 학교의 방과후 교실, 마을단위 공부방,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학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현재 지자체들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4% 정도를 학교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4%를 상향 조정하여 농어촌 학교에 지원하도록 함

나. 운영 기구 설치

1) 중앙 농어촌교육진흥위원회(가칭) 구성

필요성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범 부처 차원에서 관계관으로 구성된 운영 기구를 설치해 정책을 공동·협력하여 구상·추진해야 함. 이는 소관 부처 간 법·제도적인 상호 보완과 함께 정책의 통합 조정이 용이할 것임

추진방안

<삶의질위원회 격상 후 산하에 소위원회 구성>

- 현재의 삶의질위원회의 위상 격상(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하고, 산하에 소위원회로 '농촌교육진흥위원회(가칭)'을 설치·운영
- 삶의 질 특별법에 농촌학교와 관련된 지원 및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내야 함(현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실효성과 관련된 장치가 미흡)

<위원회 독립 설치 : 특별법 제정 시>

- 특별법 제정 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삽입하여 독립 기능과 역할 수행

2)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법정 기구의 실효화

필요성

- 농산어촌 교육 및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과 정책이 구현되어야 할 것임

□ 추진방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가 법정 기구로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함

※ 지자체에 조례 제정 권고시 포함시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 산하 농어촌교육발전지원센터 운영(광역/시·군·자치구)>

- 필요성 : 농어촌 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은 결국,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부서가 될 것임. 하지만 이들은 신분의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협의회 산하로 농어촌교육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방안

- 설 치 :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

- 주요역할 : 영유아 보육, 청소년방과후 및 정규 교육지원, 지역교육협의체 구성·운영, 마을/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을리더/학교 교사 공동체 함양 전문 연수 지원, 강사 BD구축, 농어촌 자원 및 교육 요구 조사분석 등

- 운영방법 :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대학이나 기관에 프로젝트로 위탁. 평가 후 확대. 또는 사회적 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형태로 지원

※ 종사(전담)인력에 대한 농촌후계자 지정 및 인건비 지원

- 향후 관련법과 지역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시·군·자치구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가칭) 구성

□ 필요성

- 학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은 바로 시·군 단위임.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추진방안

- 구성 : 교육청,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지역의 기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
- 내용 : 지역 현안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 실시
※ 시·군·자치구의 조례 제정 권고 시 반영

4) 마을 교육발전협의회(가칭) 구성

필요성

- 지역(혹은 마을) 단위의 교육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동창회, 주민회, 면단위 행정 등 다양한 자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여 마을의 교육과 관련된 현안 과제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해야 함

추진방안

- 1단계 : 농어촌 마을 지원 공모 사업 시 필수 조건으로 명문화
※ 마을종합개발 사업시 필수지표로 삼입(구성현황, 운영 실적 등)
- 2단계 : 지자체 조례 제정 시 반영토록 권고

다. 제도 개선

1) 교장 및 교사 팀 공모제 실시 / 근무 기한 연장

필요성

-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는 곧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높은 교장과 교사들이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학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직 교사의 경우 타지역으로의 의

무적 전출 제도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 추진방안

- 농어촌 학교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교장, 교사를 팀으로 구성·공모
 - 근무기간 : 4년(무기한 연장 가능)
 - 교장의 자격 및 권한 : 전임교원 근무 경력 15년 이상인 자. 교원의 초빙 권한 부여
- 교장 및 교사 팀공모제로 근무하거나 기존 농어촌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의 의무적인 전출 없이 근무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특별 규정 적용 검토
 - 농어촌 지역은 희망자에 한하여 순환보직의 특성을 가지는 교원의 근무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검토 필요
 - 현행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원 인센티브(수당 및 승진 가산점)에 대해 교사가 평생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일정 기간(3~5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인센티브 적용의 평등성에 대한 논란(도서·벽지 지역에 오래 있어서 수당 및 승진 가산점을 많이 받는다는)도 없어질 것이며, 의식 있는 농어촌 교사 활동의 지속성도 보장될 것임

2) 무학년제 교육과정 도입

□ 필요성

- 미래사회는 창조자(Creator)로서의 능력이 요구됨(김경애, 2011). 즉 미래에는 다극체제, 다문화, 다민족시대, 국가 간 인력이동 가속화 등의 환경 속에서 창의성과 감성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며, 이는 다양한 체험 활동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줌(이기봉, 2011).
- 따라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사례처럼 학생들의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발달을 목적으로 1년 동안 시험 없이 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무학년제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아일랜드는 15살이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해보며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게 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시작되었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는 거셴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조한혜정, 2012)
- ▶ 전환학년제 운영 학교의 교사와 실제로 경험한 학생 및 학부모들은 전환학년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Jeffers, 2007), 교실 밖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생 간 관계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장기간의 직업 체험을 통해 성인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성 함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기봉, 2011)
- ▶ 실제로 OECD 국가의 청소년 생애 핵심역량을 비교한 결과, 아일랜드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서 1위를 나타냈고(한국은 21위로 최하위 수준), 자율적 행동 영역에서도 6위를 나타냄(OECD, 2006)

-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학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 모형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것도 필요

3)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

필요성

-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들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함. 따라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합동평가지표에 농어촌 교육 및 학교 부문을 반영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임

추진방안

<일반 행정>

- 도시 지역은 마을/학교와 농어촌 마을/학교와의 교류 지원 실적 등
- 농어촌 지역은 관련 조례 제정 유무, 마을-학교 연계 사업 지원 실적, 전담부서 및 전담 공무원 배치, 도시 지역의 지자체들과 마을/학교와의 교류 관련 지원 실적 등

<교육 행정>

- 농어촌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농어촌 학교를 활용한 주민 평생교육 지원 실적
- 농어촌학교 시설 여건 개선 등

4) 농산어촌 영향평가의 교육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성

-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마다 정부 차원에서 교육지표를 설정하여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하며, 농산어촌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 구조와 함께 관련 기관들의 관심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

추진방안

-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하여 지속적인 지표 관리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직접 실시

<교육지표>

- 1면 1개교 이상 유지, 농어촌 초·중등학교 수 증감, 농어촌 학생수 증감, 농어촌 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실적, 농어촌 관련 예산 지원 실적 등

03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교육공동체가 구축되는 것이 매우 필요함. 지역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농촌교육과 더불어 농어촌 학교의 부족한 인적자원 문제가 해결 가능함
- 한 마을에 대규모 예산 집중 투자 지양, 단계적 시범 투입 후 점진적 확대
 - 1단계 : 농어촌희망재단 연계 시범사업 추진(자생성장모델지역 지정, 선도지역화)
 - 2단계 : 시범 사업 결과 평가 후 농어촌희망재단 및 농림수산식품부 본 사업화
 - 3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활성화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투자 연계
- 농어촌 교육공동체 활성화 정도 및 활동 영역을 고려한 시범 사업 유형의 다양화
 - 교육소외계층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
 -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사업
 - 지역 재생을 위한 기초지자체 협력 교육 지원 사업
- 사업의 규모 및 유형에 따른 단계별 추진 절차 적용

단 계	예산 규모	사업 내용	지원 방식
1단계 (2013)	2000만원 이내	▶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시범사업) ▶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사업(시범사업)	직접 지원 (장학재단)
2단계 (2013 ~2015)	5000만원 이내	▶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확대사업) ▶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사업(확대사업) ▶ 기초지자체 협력 교육 지원사업(시범사업)	직접 지원 (장학재단+농림수산식품부)
3단계 (2016~)	5,000만원 ~ 1억원	▶ 기초지자체 협력 교육 지원사업(확대사업)	직접 지원(70%) 및 지자체 대응투자(30%) (장학재단+농림수산식품부+ 기초지자체)

- 컨설팅 및 평가
 - 권역별 전문 컨설팅위원단 구성, 사업 및 규모에 따른 현장밀착형 지원 및 컨설팅 실시
 - 전문가와 현장간 컨설팅 방법의 다양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의 전체 및 개별 사업 평가 지표 체계화, 향후 사업 방향 반영

가.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

□ 사업방향

- 교육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 촉진
- 교육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
- 지역주민(학부모) 참여율과 관심도 제고
- 귀농·귀촌인의 역량 적극 활용

□ 사업대상

- 기존 교육문화시설 :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배움터(농어촌 지역 작은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기관 등)
- 마을배움터(프로그램 + 시설 등) : 지역주민들에 의해 마을회관, 지역 교육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배움터
- ※ 배움터는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체제를 가지고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및 조직을 의미

□ 사업내용

- 개별 배움터 및 배움터 연대 지원(프로그램)
 -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교육소외계층(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
 -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는 단체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프로그램 개발비도 함께 지원 가능
 - 교육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자유주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용 지원
 - ※ 예시 : 학습동기부여, 학습증진, 예체능적 소양개발, 진로교육, 인문학적 소양개발, 가치관 및 세계관 정립, 주제가 있는 현장체험 등 교육소외계층(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유주제 교육 프로그램
- 주민에 의한 자발적 배움터 형성 및 운영 지원

- 지역 주민의 자체적인 마을배움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지원 및 관리함. 공동체적 관점에서 마을배움터 운영위원회의 설립 및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지역 교육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초석 단계임
- 지역주민의 자체적인 ‘마을배움터운영위’ 결성과 활동의지 고양 프로그램 비용 지원
 - ※ 예시 : 부모교육 프로그램(아동·청소년 이해 등), 1·3세대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역학 프로그램 등
-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교육적 환경개선 방안으로 마을배움터의 물적 환경(장소 및 기반시설)제공
- 마을배움터의 운영은 마을 주민 주도로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 실행하며, 사업지원 후(초기)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운영위원회의 자체적 교육활동(분야별 일일교사)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지원 사업에 따른 배움터지원 사업 모형(지원체제/ 프로그램/운영매뉴얼 등) 개발

□ 추진전략

- 교육소의 아동·청소년의 요구에서 출발한 배움터 프로그램 구성 및 배움터 운영에 관한 협력적 관계 구축
 - 교육적 소외집단을 중심에 놓고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연계, 인력배치
 - 배움터 운영에 대한 실무적·연수적 능력 검증 및 결과에 따른 계약기간 설정
- 초기에는 배움터 프로그램 비용 지원으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지역의 자립기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
 - 지역의 교육적 소외집단을 위한 기존 자원들 검토
 - 기존의 각 사업들을 연계와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검토
 - 기존 자원과의 역할분담 및 지역의 재정자립 기반 확충
- 교육소외계층(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필요성, 적합성 및 참여가능성 고려, 단기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성취목표가 뚜렷한 교육프로그램 지향
-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돌봄을 넘어선 ‘교육’의 기회 제공하고,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설계

□ 기대효과

- 교육소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선 지역 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초석 단계 마련
-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도모 현장에서의 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촉진
-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노하우를 현장의 배움터와 연계시키고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의 활용 촉진

나.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지원 사업(CLN : Community Learning Network)

□ 사업방향

- 지역 역량을 중심으로 한 자생 모델로 지역 학교와의 관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농어촌교육공동체 모델로 성장하도록 지원함
- 현재 지역 역량의 갖추어졌으나 재정적 이유로 성장의 효과가 급성장하지 않는 지역에 사업을 투여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교육공동체(CLN : Community Learning Network)구축을 목표로 함
- 지역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극 과소지역: 봉화, 진안, 청양 등), 빈곤의 악성 고정화된 지역(구 탄광촌 정선 등)을 긴급 지원(SOS) 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역 재생을 위한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추진함
- 극과소지역의 교육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여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의 농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 시설·장비를 학생들의 교육 및 주민의 평생교육에 활용되도록 하고, 기관에서도 다양한 특색 사업을 개발·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함



【그림 5-3】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지원 사업 교육공동체 성장 단계

□ 사업대상(단계별 접근)

<표 5-3>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지원 사업 대상의 단계별 접근

효과성 고려	단계	사업대상	세부내용
단기적 파급효과 (우수사례 발굴) ↑ 투입효과 ↓ 장기·점진적 효과 (양질적 확대)	1단계 (시범 운영)	자생성장 모델지역	▶ 지역리더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복원 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지역의 독자적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지역
		자생성장 가능지역	▶ 주민이나 지역리더가 지역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있어 자생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단계 (사업 확대·정착)	SOS 지역	▶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위기 현상이 증대·재생산되는 지역
		극과소 농촌지역	▶ 농촌의 극과소화로 인한 학교 통폐합의 진행과 조손 가정 증대 등의 위기 요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1단계 : 사업 초기에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단기적 과급효과를 위해 자생성장 모델지역 및 자생성장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함
 - ※ 사업 대상 선정 시 기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마을공동체의 특성 가운데서도 교육공동체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시범운영의 결과를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유형화, 지역 재생을 위한 교육공동체 설립·운영 매뉴얼, 자료집 등을 제작하여 2단계 후속 사업 대상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
- 2단계 : 사업 확대·정착기 사업대상들은 1단계의 자생성장 모델지역 및 가능지역보다 지역적 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식이 더욱 미비한 상황이므로 장기적·점진적 관점에서 지역 특정 분야의 교육여건 변화 및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기존 민간단체들 및 지역 자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 강구)을 먼저 수립해야 함

□ 사업내용

- 교육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 외부 자원들을 연계하여 지역을 단위로 공동체 네트워크(Community Learning Network) 지원망을 구축하는 지역 네트워크형 거점사업을 지원
- 이를 위해 지역 또는 특정 분야의 배움터, 관련기관, 학교, 협의체, 농업 관련 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농협)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직·간접적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
- 교육소외계층(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진행, 공동사업, 관련기관 간 연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일체를 지원하고, 장학재단의 모든 지원사업의 종합적·실험적 적용으로 사업간 구분 없이 지역의 교육 네트워크 구축 목표를 위해 상호 연동·연계하여 추진
- 농어촌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화
 -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지원
 - ※ 예시 : 도·농간 상호 생활-경제형 교육 프로그램(1사 1촌 운동, 1 공공기관 1촌 자매결연 프로그램 연계), 생산자~소비자 간 생산-체험 교육계약 프로그램 등

-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세미나, 포럼 개최 : 지역주민 학습동아리 조직 및 운영(연령별, 성별, 계층별 등 소규모 단위 활성화)
- 농어촌 작은 학교 및 배움터 살리기 네트워크 구축 사업화
 - 농촌학교에 대한 관련 정부 사업(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농촌형 교육복지사업, 학교평생교육,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우수고등학교사업 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학교 공동체를 구축함
 - 작은 학교(농촌지역) 살리기 네트워크 구축 과제
 - ▶ 지역(농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리더 육성 : 작은 학교 담당자(교사 및 지역운동가)의 다양화 및 전문성 강화
 - ▶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종합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지역 지원 담당전문가 풀 구축 : 교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농촌지도사, 새마을지도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마을대표(이장, 반장) 등
 - ▶ 작은학교 살리기 담당교사 및 지역실천 전문가들의 실천 사례 공유(소식지, 사이버 레터 운영) 및 소그룹 토론을 위한 Network 협의체 구축
 - ▶ 지역사회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예시 :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랑, 향토사, 지역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작은학교 살리기 신지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장려금 지원(공모)
 - ▶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개발, 우수 프로그램 보급
 - ※ 예시 : 주말 활용 녹색 농촌 체험프로그램 등 도-농간 교육 프로그램,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 배움터 운영자 교육프로그램, 공동육아 프로그램 등

□ 추진전략

- 현실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작
 - 자질과 경험이 있는 지역리더(지역 운동가, 장인, 예술가, 전문가 등)에 관한 교육공동체 발전 가능성 검토
 - 철저히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주체의 준비정도에 기초한 사업 추진
 -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바탕으로 사업내용 구상
 - 지역 사업주체의 역량 점검(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준비된 역량 정도 파악)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지역 거점센터 구축을 일차적으로 진행하고, 지역자원 연계와 사업 확대를 순차적으로 진행
 - － 교육적 소외집단을 중심에 놓고 센터 및 기관 배치
 - －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인지 여부 검토
 - － 실질적인 교육기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 혹은 자원(학습, 복지, 문화, 건강, 진로, 정서 등)의 활용 모색
- 교육적 소외집단에 대한 기존 자원과의 원활한 연계 및 통합시스템 마련
 - － 지역의 교육적 소외집단을 위한 기존 자원 검토
 - － 기존의 각 사업들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검토
 - － 기존자원과의 역할분담 고려
- 시범사업을 통한 모형개발 및 타 지역 확산을 위한 단계적 추진 계획 마련
 - － 표준화할 수 있는 모형 구축 및 모형 개발
 - － 정부나 국가시책이 아닌 민간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 가능성 검토
 - － 우수 교사 및 지역그룹은 선진국 지역사회학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단기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지역 혹은 특정분야의 교육여건 변화 및 조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민간단체 및 지역자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 수립
- 지역 혹은 특정분야의 여건과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적합한 교육사업 기획
- 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기관 혹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독립 성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 지향적 사업운영방식 도입

□ 기대효과

-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 여건 향상
- 지역주민(학부모)의 참여율 및 관심 증대
- 지역의 주민에 대한 교육적 자생력 강화
- 지역 내 공동·협력 사업의 촉진 및 강화

다. 기초지자체 협력 교육 지원 사업

□ 사업방향

- 주민 주도로 마을 교육공동체 및 네트워크가 촉진되었거나,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교육여건이 총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자체의 교육지원경비(지자체 예산의 4~8%) 적극 활용을 통한 대응투자 활성화
- 지자체 설립 향토 장학재단 및 독자적인 공공 교육지원사업과 연계 방안 모색
- ※ 지자체 설립 향토 장학재단(예) : 서천, 순창, 나주, 금산 등

□ 사업대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한 신 활력지역(낙후지역16) : 70개 시·군 지자체

□ 사업내용

- 인구 5만 내외의 낙후지역(군단위)에 지자체 및 교육청을 공적 파트너로 하여 지역사회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함. 권역별로 지자체의 교육적 의지가 강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협약(MOU) 체결
- 지역 교육공동체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주민 공동교육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학의 파트너십 구축 및 교육 협력 사업 실시
- 지원내용
 - 지역별 재단 지원금 : 1지역 기준 5천만원~1억(평가에 따라 3~5년간 차등 지원)
 - ※ 조건 : 재단 지원금의 30%정도의 금액을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
 - 지역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운영 : 지역주민 학습동아리 조직 및 운영(연령별, 성별, 계층별 등 소규모 단위 활성화), 주민자치대학 설립 운영 등

16) 활력지역(낙후지역) 선정 : 인구, 산업경제, 재정 측면의 3개 분야에 대해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 주민세, 재정력지수 등의 지표를 적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 하위 30% 시·군. (세부 현황은 부록 참조)

□ 추진전략

- 관주도의 생활 정주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 시행
- 지역이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을 발굴
- 사업 및 프로그램은 교육참여, 연구개발, 마케팅, 특화사업, 지역인재 육성 추진 등을 포함하는 종합프로그램 성격으로 유도
- 지자체, 대학, 기업, 민간단체, 언론, 연구소 등 지역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재 육성과 참여활동, 교육, 연구개발, 프로그램 마케팅 등을 위한 지역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 노력하는 구조 형성

□ 기대효과

- 책임있는 파트너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지역 교육 여건 향상
- 지역주민(학부모)의 참여율 및 관심 증대
- 지역 주민의 교육적 자생력 강화
- 지역 내 공동·협력 사업의 촉진 및 강화

라.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사업방향

- 사업 초기에는 권역별 전문 컨설팅위원단 구성, 사업 및 규모에 따른 현장밀착형 컨설팅 실시
- 전문가와 현장간 컨설팅 방법의 다양화,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 지속가능성 확보
- 궁극적으로 컨설팅을 위한 정규 직원, 컨설팅 전문위원회 풀, 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 연구개발 팀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적 접근 필요
-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의 전체 및 개별 사업 평가 지표 체계화,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사업들에 대한 계획 및 운영 매뉴얼 제작, 향후 사업에 반영

□ 사업대상

-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사업, 기초지자체 협력 교육 지원 사업 대상 마을 및 기관단체

□ 사업내용

- 현장밀착형 전문 컨설팅 실시
 -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비전 공유 강화 : 설명회, 책자, 교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들이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역 재생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도록 유도
 - 현장밀착형 지원 및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배움터 및 사업대상별 형태, 규모, 지역적 특성에 따라 컨설팅 방법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예) 상호 멘토링, 교환프로그램, 그룹 컨설팅 등
 - 전문가와 배움터, 사업대상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개별 배움터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간소화하고, 공개수업, 배움터 간 상호방문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학습 및 성장 도모
- 사업 발전을 위한 평가 실시
 -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 지역배움터 네트워크 사업, 기초지자체 협력 지원 사업 등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성장과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종단 평가 실시
 - 질적 평가 방법 중심이나, 양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 등도 동시 진행
 - 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인센티브, 지원규모의 조절, 포괄예산제, 차기평가면제, 다른 배움터 및 사업대상에 대한 멘토지위 부여 등 다양한 형태로 환원적 구조를 가지도록 함
- 사업별 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평가 지표 및 운영매뉴얼, 실무지침서 개발
 - 사업 주체의 관점에서 우수사례 발굴 및 활성화, 특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모델을 유형화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함. 이를 통해 사업 대상에 대한 단계별 접근(1단계→2단계)에서 후속 사업 대상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후속 사업 대상들을 또 다른 유형의 선도모델로 발전시키는 전략 구상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업 대상의 관점에서 사업의 지원, 계획, 운영,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 지침서 개발을 통해 사업의 경험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사업을 주체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추진전략

- 1단계 : 컨설팅 전문위원단 구성
 - 교육 및 교육공동체 전문 위원, 농어촌마을 전문 위원, 컨설팅 보조원 등 3인 이상의 컨설팅 전문위원단 구성
 - 대학, 연구소와 같은 전문 조직과의 협약 체결
- 2단계 : 컨설팅 전담 직원 확보 및 권역별 맞춤 컨설팅을 위한 전문위원단 풀(pool) 구성
 - 재단 내 컨설팅 및 평가를 위한 전담 상근 직원 확보(1~2명), 업무 지속성 보장
 - 연차별 컨설팅, 평가 누적을 통한 권역별 전문위원단 풀 구성
- 3단계 : 전담 직원 확대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업 컨설팅 및 평가 연구개발팀 구성
 - 전담 직원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컨설팅/평가/연구개발 등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연구개발팀 구성

□ 기대효과

-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사업의 양·질적 확대 도모
- 현장밀착형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한 인접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모색

마.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 사업 방향

- 지역주민과 학교, 그리고 마을에 소재한 기관·단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 해의 성과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 활동의 의욕 고취 및 지역적 인식 확산 도모

- 기존의 마을 축제와 연계하고, 민·관·산·학 등 지역의 모든 기관과 주민이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사업 내용

-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개최
 - 어울림 한마당 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 한마당 분야별 역할분담 및 내용 구성
 - ※ 주요 내용 : 사례발표, 홍보부스 운영, 세미나, 체험마당 등 운영
 - 자매결연지역 및 도시에 홍보, 마을 축제와 연계하여 운영
-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 전국의 농어촌마을 교육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 ▶ 분야 : 배움터 운영,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역 리더 등
 -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마을 사례 발표회 개최
 - ※ 발표회 개최 전 표창 : 대상(대통령), 최우수(총리), 우수(장관)

□ 추진 절차

- ① 계획 수립 및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 ② 신청서 제출 : 광역시·도 ↔ 시·군 자치구 ↔ 교육공동체
- ③ 심사 및 선정, 개최지 선정 : 농림수산식품부

□ 기대효과

- 농어촌 교육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파급효과 극대화
-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기관·단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촉진

04 농어촌유학 지원 사업

- 농어촌유학 전원생활에 대한 도시민들의 동경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어촌을 살리고자하는 공감대를 토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농어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의 전인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며, 부수적 결과로서 농어촌 학교의 살리기가 가능하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기회가 생겨나고 폭넓은 배움의 경험을 갖게 되며, 도농 주민들 간에 형성된 유대관계는 산지에서 직접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게 되는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가. 농어촌유학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 사업 방향

- 농어촌유학은 일시적 체험학습의 행사가 아니라 도시학생의 전인교육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따라서 일회성·단기성의 맛보기식 유학이 아닌 수요자에 맞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관건임
- 개별 농가형에서부터 농가 결합형,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복합형으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단일 센터 지원보다는 농어촌 유학을 위한 공동체(농가 결합형, 농가-센터 복합형, 마을공동체형) 지원을 지향해야 할 것임

※ 농어촌 유학 유형 및 기본 특성

유형	기본 특성
농가형	'시골부모'라 불리는 활동가가 자신의 집에서 유학생들의 생활을 돌보면서, 해당 지역의 학교로 통학을 하는 형태
농가결합형	같은 지역의 농가들 여럿이 함께 연합하여 농어촌 유학을 진행하는 형태
센터형	다수의 농어촌 유학생들이 독립적인 체험교육 및 숙박공간에서 '농어촌유학 교사(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형태
복합형	농어촌 유학생들이 '센터'와 '농가'에서 번갈아가며 생활을 하는 형태의 모델로서 센터형 + 농가결합형의 결합형 모델로, 마을형 또는 공동체형이라고도 불림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2011). 농어촌 유학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 한국농어촌공사. p. 11.

□ 사업대상

- 개별 농가 및 농어촌유학센터에 집중투자하기보다는 농어촌유학 경험이 있고 개별 농가에서 농가 결합형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가 공동체 선별·지원
- 농가 공동체의 활성화 통해 지역 내 농어촌 유학 관련 농가-센터가 결합하여, 마을 공동체 자체가 농어촌유학 특구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역활동가 학습공동체 지원 및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마을 리더)이나 귀농귀촌인 중에서 농어촌 유학에 적극적인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공동체 형성 및 지원
 - 지침 및 규칙 생성, 활동프로그램 구상,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등 관련 학습활동의 지속적 실시
 - 농어촌 유학 우수사례 탐방 및 1~2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시범 적용
 - 지역 내 지원 기능(홍보 및 접수, 지역간 소통,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지자체 및 농촌유학센터, 마을사무장,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과 연계방안 모색 등
- 농어촌 유학 마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농어촌유학을 위한 실행지, 지역 학교, 지역사회가 삼위일체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역 학교와 인근 주민들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중요함
 - 협의체 구성은 마을 이장 및 주민, 농가 및 농가 공동체 대표, 학교장, 농어촌 유학센터장,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됨
 - 관주도의 형식적 협의체 구성이 아닌 마을공동체 중심의 민-관 협력, 실질적 협의체 구성
 - 협의체가 규모화 되면 교육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교육 및 상담, 참여 농가 관리·운영, 도-농 교류 연계(도시와의 결연 관계), 시설 및 기관 관리, 내부 평가 및 피드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소위원회 및 협의회 내 분과를 설치하여 주민 및 활동가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

□ 추진전략

- 기존의 농어촌 유학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고려
 - 농어촌유학센터 지원 사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과 연계 및 차별성 모색
 - 예산의 중복 투입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의 철저한 선별
- 농어촌 유학을 위한 마을공동체 및 교육공동체 선별 지원
 - 센터규모 이상의 체제를 갖춘 기관 지원을 지양하고, 주민으로부터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생한 농가 공동체 우선 지원
 - 공동체의 성격은 자발적인 공동의 학습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공동체적 성격을 띠어야 할 것임
- 마을단위 협의회 구축 및 지역 내·외적 네트워크 활성화
 - 농어촌 유학 활성화 체제와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단위 협의회 구축
 - 도시민과 농어촌 지역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도시-농촌 간 win-win 네트워크 전략 구상
- 농어촌 유학 사업의 비전·목표와 전문성 확보
 - 지역 발전과 농어촌유학에 대한 공동 이념과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감하는 계기 마련
 - 지자체 및 지역 교육지원청, 지역 공공기관의 다각적인 참여 유도
 - 지역 활동가(리더) 및 주민, 귀농·귀촌자, 농가 공동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가진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참여와 논의의 장(場) 마련

□ 기대효과

- 도시민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를 통한 농어촌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활성화
- 농어촌 유학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협의체 구성 촉진
- 전인교육 측면에서 도시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농어촌 인지도, 친밀감 및 생태 주의적 관점 촉진
- 지역 주민 및 귀농·귀촌인, 지역활동가, 교사, 학부모, 행정 등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

나. 농어촌유학센터 지원 사업

□ 사업방향

- 도시 학생과 그 가족들이 농어촌 경관과 자연·역사·문화유산을 공유함으로써 인성함양 및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학생 수가 줄어든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지역밀착형 농어촌유학센터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함. 센터의 구성원과 프로그램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역과 유리된 센터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음. 따라서 농어촌유학 관련 지역 공동 협의체가 구성되어, 센터-마을 주민-지역 학교 간 연계·협력이 활발한 곳을 우선 지원
- 단독 센터형보다는 농가결합형과 센터형이 결합된 복합형(마을형, 마을공동체형)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센터를 선정하여 우선 지원함. 복합형이라 하더라도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센터는 지원 기능으로 진행되는 농가중심의 복합형이 있고, 센터가 모집,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 도시 부모 관리 등의 기능을 맡고 일반적인 생활 지원 및 지도를 농가와 마을이 맡는 센터중심의 복합형이 존재하는데, 농가와 센터의 사업에 대한 참여 비율에 따라 지원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유학센터
 - 목적 : 농어촌유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의 작은 학교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교육 + 지역성 + 공익성)
 - 운영 :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
 - 구성 : 지역주민 또는 귀농·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공동체)
 - 형태 : 농어촌 유학센터를 운영 중이며, 1년 이상 장기체류 학생 유치 실적이 있는 센터형, 복합형의 농어촌유학센터

□ 사업내용

- 농어촌 예비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단기, 1개월 이하)
 - 농어촌 유학 홍보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들의 방학을 활용한 단기 체험 형식(단기 캠프)의 농어촌 예비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어촌 유학에 관심이 있는 도시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단기간 캠프를 통해 지역과 센터, 운영자, 활동가 등을 접해보고 장기 농어촌 유학에 참여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임
 - 도시 학부모 및 학생의 입장에서 단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을 경우 센터뿐만 아니라 농어촌 유학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단기 프로그램은 기관 인지도 및 장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착·안정화 단계에 있는 센터를 선별하여 지원
- 농어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장기, 1년 이상)
 - 지역 특성 및 여건과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해당 농어촌유학센터만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프로그램 대상을 도시지역 및 인근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 / 도시지역 학부모 / 인근 지역 주민 등으로 분화하여 체계적 접근
 -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센터 내 프로그램 전문 교사 확보, 프로그램 전문 교사들의 직무 연수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지역조사, 도시문제조사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도시-농촌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홍보
 - 초기에는 농어촌유학센터(농어촌 학교)-도시(도시 학교) 간 자매결연, 더 나아가 도시-농촌 간 기초 지자체(시·군·청) 및 교육행정(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으로 장기적인 농어촌 유학 사업에 대한 수요-공급 구조 확보
 - 농어촌유학을 위한 홍보물, 운영매뉴얼, 온라인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개설 등 도시민과 연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구축
- 시설 개·보수 및 체험교육 인프라 구축
 - 센터는 숙박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청결한 숙식공간, 체험 활동을 위한 논과 텃밭, 친환경 먹거리 수급 체계 확보 등이

필수적인 요건임

- 텃밭, 논과 같은 체험학습 공간의 경우 센터 소유의 밭과 논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연계 차원에서 인근 농가의 도움을 얻어 확보할 수 있음. 또한 도시의 다양한 질환과 아토피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하는 텃밭과 논은 유기농을 원칙으로 해야 함
- 농어촌유학센터 및 농가의 필요 시설 요건은 아래 <표>와 같음. 이상의 시설 개·보수 및 농어촌 유학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적 지원이 필요함

<표 5-4> 농어촌유학센터 및 농가 시설 요건

구분	시설 및 공간	가이드	비고
센터 필수	유학생 숙소	▶ 아동 1인당 2.5㎡ 이상(숙박 아동 기준)	
	지도교사(활동가) 숙소	▶ 아동 6인당 생활지도교사 1인 이상, 교사당 독자 공간 제공	
	지도교사 사무실	▶ 교사당 3.3㎡ 이상	
	공동 생활공간(실내 모임 공간)	▶ 이용 아동 1인당 1.5㎡ 이상	
	식당 및 부엌	▶ 아동 취사 및 설거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욕실 및 화장실	▶ 성별 분리	
	실외마당(야외 공간)		
	세탁실 및 건조 공간	▶ 건조기능 포함(우기 때 사용)	
	센터 내에 구비해야 할 교육기자재	▶ 놀이 용품 포함	
센터 권장	도서실, 개인 학습 공간		
	공연공간(대강당)	▶ 공동생활공간과 겸용 가능, 공연 가능 시설 필요	
	목공예실 등 취미교실		
농가 필수	유학생 숙소	▶ 방 1당 아동 3인 이하, 성별 분리	
	욕실 및 화장실	▶ 수세식이나 친환경식	
농가 권장	학습 공간		
	텃밭		
	가축		

※ 자료 : 김인호·하태욱·박근덕·윤수연(2011). 농어촌유학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p. 27.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농어촌 유학을 하기 전과 후 학생의 변화, 학부모의 의식 변화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농어촌 유학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분석을 실시하고, 차후 사업 및 정책 방향의 근거 자료로써 활용
- 농어촌 유학생들이 센터에 들어온 이후 교육·건강·생활 등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생활 전담 교사(코디네이터)의 확보 확대(교사 1인당 학생 5~6명 수준)

※ 유학생들이 생활하는 센터에 대한 보험, 유학생들의 상해 보험비 지원 포함

□ 추진전략

● 공동체적 관점의 지역 밀착형 농어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으로 전향

- 사업 대상 선정 시 농어촌유학 관련 마을 공동 협의회 구축이 완료 혹은 진행 중인 지역의 농어촌유학센터를 선정. 마을 공동 협의회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구성원 간 학습활동, 기타 교류·연계 활동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가진 협의회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필요
- 공모 후 서류 심사 및 평가 및 사업 후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에도 지역 협력 여건, 협의회 구성,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공동체적 관점의 평가 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

● 지역 주민 참여 및 연계 방안 모색

- 몇몇 지역의 경우 외부 자원의 투입으로 활성화 되었지만 지역과 유리된 농어촌유학센터와 지역 주민들 간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외부 활동가가 지역에 들어가서 센터를 건립·구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과 연계·협력이 필수적임
- 지역 출신의 활동가, 귀농·귀촌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활동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농어촌 유학을 통해 지역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감해야 함
- 센터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센터 행사와 지역 축제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지자체 자부담(대응투자) 반영 및 농어촌유학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사업 예산 지원 형태를 국고 50%, 지자체 자부담 50%로 설정하여 사업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부담 예방
- 이러한 사업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농어촌 유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유도
- 또한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된 지역의 지자체에서 농어촌유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어촌유학 활성화 도모

예) 전라북도의 농산어촌 유학지원조례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로 질관리 도모
 - 일부 농어촌유학센터의 경우 유학 교사의 자질 부족 논란과 학생의 변화 및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개선 시도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농어촌유학생 유치 및 사업 실적에 따라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의 차등지원, 공모 시 패널티 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가칭) 및 농어촌유학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가칭)과 연계 방안 모색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농어촌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농어촌유학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은 공동체적 관점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자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임
 - 따라서 두 개 사업이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체제와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이라면 본 사업은 그 체제 속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연계·협력 및 역할 분담하여 농어촌 유학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추진절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도, 시·군
- 사업추진절차



기대효과

- 공동체적 관점의 농어촌유학센터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농어촌유학 홍보 및 농어촌유학생, 학부모 전입으로 학교 및 지역 활성화
- 농어촌유학 관련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 교육 협의체(네트워크) 구성 촉진
- 교육공동체 관련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한 복합형 농어촌유학센터의 활성화 촉진

다. 도시 학생의 농어촌 체험 의무제 시행

필요성

- 도시학생의 인성교육과 자립심,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시행은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자라나는 도시어린이의 농업·농촌 체험학습은 도농교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조건임

- 서울시 1개 초등학교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전과 후를 비교·분석한 조록환(2009)의 “농촌체험을 통한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 효과”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농촌 체험이 초등학교생들의 정서 지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발간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농어촌체험의 촉진에 관한 조사(2003.3)’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체험학습은 농업과 농촌 주민, 자연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앞으로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의 교육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농협조사연구소, 2004).
 -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 현실 세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학습의욕을 향상시킴,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느낌, 주민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익힘
 - 학교에 미치는 효과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종합학습시간 및 각 교과목의 학습지도에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함, 농촌체험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가 실현되고 있음, 가정, 지역사회, 행정기관 및 농촌과의 제휴를 통해 ‘열린 학교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음
 - 농촌에 미치는 효과 : 사람 활성화(농업 종사자로서 자신감과 활력 증진, 농가의 일상생활에 활기 부여, 이야기꾼, 메밀국수 명인 등 지역 인재발굴로 이어짐), 지역 활성화(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음, 지역 지원을 되돌아보는 계기 마련, 경제적 효과 발생,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인지도 향상 기여)
- 또한 2008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이 연대하여 초등학교생의 농어촌 장기숙박체험 프로그램인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프로그램”(일명, 「고향어린이 꿈 학교」)을 운영하고 있음(농어촌 교류기간 5일 내외, 매년 2만3천개 학교 전체학생의 참여를 목표로 함)

□ 추진방안

- 도시 초등학생과 체험마을 간의 교류체험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도시지역 30개 초등학교를 올해의 팜 스쿨(Farm School)로 선정하여,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지만, 범위도 극히 제한적이고, 정규교과일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형식적이고 일회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도시어린이들의 농업·농촌 이해를 증진하고 자연환경을 체험토록함으로써 먹거리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장기체험프로그램을 정례화, 제도화하여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교과부, 행안부의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며, 도시어린이의 수용을 위한 농촌의 여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함.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에서의 숙박체험학생 수용체제 및 시설정비, 체험마을과 초등학교 간의 연대 협력활동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라. 농어촌 학교의 도시민 홍보 지원

□ 필요성

-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요구, 학교 부적응 또는 건강 상 이유로 도시를 떠나 농어촌 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음
- 대다수 농어촌 학교가 교육정책 이외에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 따라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안

- 홍보 대상(예)
 - 농어촌 학교에서의 다양한 농촌 체험
 - 산촌유학 프로그램
 - 도농 교류와 관련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 각종 농업 관련 장학 재단의 사업 등
- 농식품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역할분담
 - 농식품부 : 지자체, 교육청 등에 농어촌 관련 정책 홍보
 - 지자체 :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 농어촌 홍보(도시 : 구청 및 주민센터 등에 홍보)
 - 교육청 : 도시지역 교육청에 홍보

마. 농어촌 학교를 활용한 문화행사(작은음악회, 마을축제 등) 개최 지원

필요성

- 분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작은음악회나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도시민들에게 농어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추진방안

- 농수산식품부 공모(직접) 또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진흥사업과 연계
- 주요내용 : 메인행사, 마을장터, 체험 프로그램 등

05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

- 학교에 대한 기존의 정부 정책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학교이라는 큰 틀 속에서 농어촌 학교를 정책적으로 지원했었음
- 이는 도시학교와 시설, 인력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 학교는 도시학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정책적·제도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함

가.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 지원

필요성

- 도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비해 농어촌 학교들은 개교의 역사가 긴 곳들이 많음. 이는 곧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매우 노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지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일수록 더욱 그러할 확률이 높음
-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능토록 복합 시설로 개선하는 확장된 시각이 필요함. 특히 도농교류 차원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고려로써 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추진방안

- 특히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함. 지자체 자체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지원 내용으로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다목적실 및 교재·교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대도시 위주로 교육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은 학생을 위한 다목적실 및 교재·교구가 미흡함
 - 농어촌학교 시설 여건 개선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교과부
- ※ 농어촌 영향 평가 지표 반영 : 농림부

- 교육 경비의 일정부분 시설 여건 개선 투자 : 지자체(※ 농림부 제안)
- 향토 재단의 장학사업 예산 중 일정 부분 투자 유도 : 농림부

나. 농어촌 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성

- 농어촌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함께 농어촌 교육을 위한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농어촌의 특수한 교육 여건과 농어촌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운영 및 소인수 학급 운영과 농어촌 학부모 교육상담 등 교육 전문성을 갖춘 농어촌 학교 교원 필요
- 농어촌 주민 평생교육 추진, 지역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추진할 지역 전문가 필요

추진방안

- 대상 :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 및 농어촌 학교 근무 희망 교원
- 연수 사업 운영 : 전국 단위 전문 교육기관(교대, 사대 등) 선정·위탁 및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 전문과정 개설
- 연수 프로그램 내용 : 지역발전을 위한 농어촌 학교의 역할, 소인수 학급 교과 지도 방법, 농어촌 학생의 다면적 역량(학력, 기본 생활 능력, 신체·정서적 건강, 사회·문화적 소양) 강화, 지역 교육공동체 사업 운영, 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연계 등

다. 농촌형 스마트 교육 체제 구축

필요성

- 이른바 ‘스마트 교육’ 체제 중심의 학교교육정보화 사업이 교과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농어촌 학교는 대도시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 뒤처지고 있음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스마트 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수업’ 등은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그 필요성이 더함
- 다양한 사회 체험과 문화적 역량의 배양이 요구되는 농어촌 학생과 다문화 가정 비율이 많은 농어촌 학교의 정규 수업과 방과후 학교 운영에 활용할 스마트 교육 체제 구축이 시급히 요청됨

□ 추진방안

- 농어촌 교육 현실을 고려한 농어촌 학생 대상 개별화 맞춤형 스마트 교육 체제 모델 별도 구축
 - 모든 농어촌 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및 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한 농어촌 학교 표준 모델 개발
- ※ 정보통신부의 정보화마을 사업과 연계(농어촌 마을교육센터 사업 추진 시)

라. 농어촌 학생 교통 편의 제공 : 마을버스 지원

□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통 수단이 매우 열악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 활동에 많은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현재 상당수 농어촌 학교에 스쿨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등하교용에 그치고 있으며, 통학 시간이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들은 통학 피로감으로 인해 학습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음
- 등교용 교통 수단 외에 상시 교통 수단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농어촌 학생들은 일과중의 학교밖 교육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도·농간 교육 격차 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주민 평생 교육 역시 교통 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활성화되는데 한계를 안고 있어 마을 단위로 교육 활동 목적의 상시 교통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통학버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과 동시에 통학버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추진방안: 통학버스의 활용도 제고 + 보조 운송수단 강구

- 통학버스의 활용도 제고 : 지역형 통학버스 운영시스템 도입
 - 목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 하는 동시에 학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높여 농촌 학교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현행 시스템 : 농촌지역의 경우, 통상 1면(面)에 1-2대의 통학버스를 학생들의 등하교시 운송수단만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학습 활용을 제외한 시간에는 학교에 정차되어 있음
 - 시스템 개선 : 등하교를 제외한 시간에는 ‘지역사회버스(=마을버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함 → 단기적으로는 현행시스템(소유자 및 운영자 : 학교)을 유지하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다가 장기적으로는 통학버스의 소유 및 운영권을 통학권 단위(=면단위) 지역사회에 넘겨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주민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등을 조직·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함
 -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운영비조달 문제인데, 이는 읍소재지(중심지)와 각 마을(오지)을 연결하는 현행 농어촌버스(일반적으로 시·군단위의 오지마을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주민편의 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를 면소재지까지만 운영토록 하고, 마을까지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시·군의 보조금을 면내의 각 마을과 면소재지를 연결하는 통학버스(=마을버스)의 운영비로 지급함 →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용자부담을 통해 보충할 수 있을 것임. 단,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함
 - 본 시스템의 장단점 : 마을과 면소재지와와의 수시운행을 통해 주민의 편의증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면소재지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면소재지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통학버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비즈니스로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문제점으로는 보조금 배분을 둘러싸고 기존 농어촌버스(회사)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지자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함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농식품부에서 해야 할 일 :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예; 운영 주체육성 및 버스구입비 지원)
-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운송수단의 강구
 - 현행 통학버스의 운행회수 부족과 오지마을의 접근성 부족(도로 협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 등을 일정한 계약 하에 통학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음

06 정부 및 민간 연계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연계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마을과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가 지원 받는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한시적 사업 예산으로 종료 후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민간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농어촌 마을 및 학교 등과 연계를 촉진시킨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임. 또한 기업과 마을 또는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마을 또는 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 세제를 일정 부분 감면시키는 방안도 있음

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농어촌 정책 사업과 연계

필요성

- 농식품부 내에서 농어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과 연계를 통해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추진방안

- 재능기부자와 재능수요마을을 연계·지원하는 농어촌 재능기부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농어촌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
- 기존 농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촌학교의 지역 교류와 관련한 환경생태 체험교육, 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학교 참여 등을 포함시키고, 각종 농촌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해야 함
- 도농교류사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가 함께하는 ‘도농상생협동조합(=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지역학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계함(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짐)
- 농식품부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추진 시 농어촌 마을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

나. 각 부처의 교육문화복지 정책 사업의 농어촌 마을/학교 신청 시 인센티브(가점) 부여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물론 중앙 정부 부처 내 정책 사업들은 농어촌이란 지역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마을

이나 학교가 지원한 경우 심사 시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또 하나의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생태탐방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공모 사업 등
- 여성가족부 :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등
- 환경부 : 우수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
- 보건복지부 :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시니어직능클럽 지원 사업,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등
- 이 외에도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들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음. 또한 공모 시 기관들의 사업 계획이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임

다. 농업·농촌 관련 장학 재단의 장학 사업과 연계

필요성

- 농업·농촌 분야와 관련된 전국적 규모의 다양한 장학재단들의 사업을 농어촌학교에 추가·지원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추진방안

- 우선 장학재단과 농어촌 학교 및 마을 간 장학재단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업이 계획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워크숍,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농어촌 교육 및 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계기 마련 필요
- ※ 관련 장학재단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신농촌문화재단, 농촌청소년미래재단, 한사랑농촌문화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다솜등지복지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연계·협력하여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형 교육복지사업’은 열악한 지역이나 대상을 발굴·지원하고 ‘전문형 교육복지사업’은 민간 영역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육성·확산하고자 함

2. 사업배경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재단은 교육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개인의 성장과 개인을 둘러싼 배움 공동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발전적인 장학사업의 모델, 즉 배움터 교육 지원사업을 제시함

3. 배움터란?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 체계로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교육기관 또는 조직을 의미함

예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4. 2012년 지원현황

- 지원금액 약 76억
- 273개 사업(881개 배움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19,800여명 참여)
- 지원금 주요 사용처 : 강사비, 학습재료비, 간식비 등

5. 사업개요

구 분	사업유형	지원내용
지역형 교육복지 사업	교육복지 중점사업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나 지역을 발굴하여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대지원액: 개별사업(2천만원), 공동사업(6천만원)
	지역교육 네트워크 사업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하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 동시에 이 사업은 지역 특성화된 교육복지 사업모델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최대지원액: 2억 5천만원
전문형 교육복지 사업	주체별 교육사업	각 분야(과학, 진로, 문화, 체육)별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전문성과 성과가 검증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대지원액: 6,000만원(과학 분야는 8,000만원)

6. 읍면단위 지원 현황

- 전체 273개 사업중, 113개 사업(113개 사업 중, 학교 배움터는 39개 사업)

라. 기업의 농어촌 학교 설립 및 연계

□ 필요성

- 기업들의 농어촌 학교를 지원하는 구조 및 유인책을 강구해야 함. FTA 등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농가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상쇄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정책이 농촌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상황임. 이에 기업체의 농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안

- 기업과 농어촌학교와의 자매결연 추진 및 농어촌 학교를 지원하는 기업 사업과의 연계 추진
- 기업의 사립학교 설립·운영 촉진 예) 민족사관고등학교, 천안북일고등학교 등
- 농어촌 학교 재정 지원 시 세제 감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업 대상 정책 사업 시 가산점 부여, 농어촌 발전 유공 기업 표창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임

참고 문헌

- 강만철·최준렬·송현중·손승남·이익수·고재천·이두휴·김준·이용환·최시영(2002). **농어촌교육 진흥방안 연구**. 사단법인 전남교육연구소.
- 강원도교육연구원(2012). **새로운 소규모학교 학교 운영 방안 탐색**. 강원도교육연구원.
- 강원도교육연구원(2012). **강원도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자료집**. 강원도교육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06).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
- 교육혁신위원회(2004). **농어촌·작은학교 교육살리기 전국 토론회 자료집**.
- 국민권익위원회(2010). **소규모학교 통폐합 고충해결 및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 김광선·송미령·김용렬·권인혜·윤병석(2010).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방안 및 농어촌통계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천·박성만·이광호·이진철(2010). **학교를 바꾸다, 교장공모제학교 2년의 기록**. 우리교육.
- 김영철 외(2001). **학급 규모에 따른 교육 효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조년(1998). **지역이 학교요, 학교가 지역이다-풀무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 내일을 여는 책.
- 김정섭·임지은·박천수(2012). **농어촌 지역의 인구, 산업, 일자리 동향과 전망. 글로벌 시대의 도농 상생과 협력. 농업전망 2012: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가치의 재발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춘진 의원실(2010).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소규모 공동체학교-교장공모제를 넘어 교원팀공모제로-**.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나승일 외(2012). **농어촌 교육 발전 종합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 나영성(2012).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희망 만들기: 고산향 교육공동체의 현황과 향후 전망**.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1-10.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2010).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1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2012). 2011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2012).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2).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어업 도시민과 함께 가꾸는 농어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마상진·최경환(2010).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의 역할. 2010 농업전망.

마상진(2012). 농어촌 학교 교육 현황과 관련 지원 제도. 농식품부 전문가 회의.

마상진·조미형·한영광(2012).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평생학습정책/응급의료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2012).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농정이슈 심층토론회(5)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5.

박대식(2013). 고령·양극화시대의 농촌복지정책. 농업전망 2013(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933.

설희순(2006). 지역교사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화교육과정개발 및 방과후 학교 운영. 충남교육연구소·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대전충남민주교수협의회. 농산어촌 지역사회와 학교교육. 제8회 공동학술포럼 자료집.

송미령·박시현·성주인·김광선·권인혜(2009).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병우·양병찬·송병주·이미영·송승용·차동욱·백승우·이소영(2005).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양병찬(2004). 이제는 학교와 지역의 협동이 필요하다. 충남교육연구소. 충남교육연구. 통권 제9호. p.7-10.

양병찬(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충남 홍동 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제14권 제3호. p.129-151.

- 이광호(2010). 새로운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김성천·박성만·이광호·이진철. 학교를 바꾸다, 교장공모제학교 2년의 기록. **우리교육**. p. 10-51.
- 이기봉(2011).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영(2004). **농촌교육 발전에 관한 교육운동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범(2008). 나주시의 교육여건 개선 사례. 지역재단. **농촌교육, 희망 나누기**. 제2차 지역리더포럼 자료집. p.27-36.
- 이혜영(2010).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 이혜영·김지하·마상진·문혜림(2010).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홍규(2004). **일본 학교의 농촌체험학습**. 농협조사연구소.
- 임연기 외(2007). **도·농간 교육격차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임연기(2008). **농산어촌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작은학교교육연대(2009). **작은 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교육.
- 장수명(2003). **학급 규모의 교육재정·경제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장호순(2003).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농정연구**. 통권7호. p.178-186.
- 재정경제부 외(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
- 정민석(2012).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방향과 과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전남교육청. p.1-62.
- 정지용 외(2002). **농어촌 교육 발전 방안 연구**.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 정철영 외(1995). 농촌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른 대응 전략.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7(3). p.13-30.
- 조록환(2009). **농촌체험 정서지능**. 한국농촌관광학회.
- 조성희(2006). **농촌주민과 농촌지역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봉현농촌교육문화공동체**. 공주대사범대학교교육학과·교육연구소. **지역재생과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북해도대학 교육학부 초청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p.193-202.
- 조영옥 외(2004).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 및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 조한혜정(2012). 10-15-20 특별학년제를 제안한다. *한겨레신문*. 2012년 10월 16일자 사설·칼럼.
- 최광익(2011). 강원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강원발전연구원.
- 최경환·마상진(2009). 농촌학교의 활성화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준렬(2008).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정책 분석. *지방교육경영*. 제13권 통합본.
- 최준렬·강대중(2007).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한만길 외(2008).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 한유경(2005). 단위학교 교육비 구조 및 교수학습 활동비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 32(1). P.103-122.
- 황영동(2012). 자생적 학교 혁신 운동-작은학교교육연대 사례.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차 농촌교육포럼 자료집.
- 사토 마나부(2006). 손우정(역).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에듀케어.
- 사토 마나부(2009).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사토마나부 초청 워크숍 자료집.
- 스즈끼 토시마사(2007). 일본 농촌 지역사회교육의 전개와 '지역사회학교'. 공주대 교육연구소.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의 과제 : 농촌교육 지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북해도대학 교육학부 초청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스즈끼 토시마사(2000). 지역을 만드는 배움에의 길 : 전환기에 듣는 폴리호니. 북수출판(일본어).
- Bard, J., Gardner, C., & Wieland, R. 2005. *Rural School Consolidation Report*. National Rural Education Association.
- Conant, James. (1959). *The American high school today: A first report to interested citizens*. New York: McGraw Hill.
- Fox, W.F. (1981). *Reviewing economies of size in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6, 3, 273-296.
- Ilvento, T.W. (1990). In Luloff, A., & Swanson, L. (Eds.) *Education and community*. Boulder: Westview Press.
- Ilseon Choi & Byung Chan Yang(2012).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long learning cities in Korea and Japan: A historical

- sociological approach. KEDI journal of Education Policy.
- Marx, Karl. 1867, 1885, 1894.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conomie*. Hamburg; Ben Forkes (trans.). 1976, 1978, 1981. *Capital: A Cri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t Production*. Swan Sonnenschein, Lowrey, Co.: London.
- Nachtigal, Paul, (Ed.) (1982). *In search of a better way*. Boulder, CO: Westview Press.
- OECD(2001). *What Schools for The Future*. Paris : OECD.
- Reynols, Siân. 1979. *Le Temps du Monde*; Fernand Braudel (trans.).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 3 of 3 vols. Harper & Row, Publishers, Inc.: New York.
- Sher, Jonathan (1992). *Education in Rural america: A reassessment of conventional wisdom*, Boulder, CO: Westview Press.
- Wenger, E.(2007). 손민호·배을규(공역). **실천공동체**. 학지사.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일부개정 2012. 11. 6, 대통령령 제24159호)
- 교육공무원법 제12조(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2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2012. 12. 18, 법률 제11562호)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학교급식법 제9조(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 초·중등교육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4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9호)

-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2007).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이윤석 의원 대표발의(2008).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2008).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2009).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2010).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2011).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부 록

1. 농어촌 학교(우수 사례) 최근 5년간 학생수 현황
2.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 법률안

<부록 1> 농어촌 학교(우수 사례) 최근 5년간 학생 수 현황

경기도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1	2	3	4	5	6	계
	년도							
광주 남한산 초등학교 (▲)	2005	-	-	-	-	-	-	145
	2008	21	25	24	27	25	20	142
	2009	27	22	25	25	26	26	151
	2010	26	27	22	25	25	26	151
	2011	31	31	30	27	25	23	167
	2012	31	31	31	27	25	23	168
포천 외북초등학교 (▽)	2005	-	-	-	-	-	-	151
	2008	11	6	12	16	9	24	78
	2009	6	8	4	11	14	7	50
	2010	8	7	7	8	13	15	58
	2011	5	9	8	5	6	13	46
	2012	7	6	8	10	7	6	44
양평 조현초등학교 (▲▲)	2005	-	-	-	-	-	-	103
	2008	19	23	16	19	12	17	106
	2009	14	20	23	19	20	12	108
	2010	40	25	27	32	22	23	169
	2011	44	51	38	34	42	22	231
	2012	45	55	66	56	43	43	308
양평 세월초등학교 (▲▲)	2005	-	-	-	-	-	-	79
	2008	5	12	8	10	9	9	53
	2009	7	5	13	9	10	9	53
	2010	21	15	8	14	12	11	81
	2011	16	21	24	16	15	10	102
	2012	23	20	22	25	19	15	124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원도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년도 \ 학년	1	2	3	4	5	6	복식 학급/ 단급	계
원주 둔둔초등학교 (▽)	2005	-	-	-	-	-	-	-	98
	2008	15	20	11	10	16	24	-	96
	2009	15	15	19	8	7	15	-	79
	2010	13	17	11	15	11	7	-	74
	2011	26	15	19	15	14	9	-	98
	2012	19	19	10	11	15	13	-	87
평창 면은초등학교 (▲▲)	2005	-	-	-	-	-	-	-	42
	2008	14	15	9	8	11	6	-	63
	2009	19	20	18	12	6	13	-	88
	2010	21	30	24	26	11	5	-	117
	2011	23	22	35	28	24	14	-	146
	2012	18	33	25	34	25	25	-	160
강릉 운양초등학교 (▲▲)	2005	-	-	-	-	-	-	-	37
	2008	-	-	-	-	-	-	23	23
	2009	-	-	-	-	5	7	12	24
	2010	-	-	-	-	4	6	8	18
	2011	17	5	8	6	5	5	-	46
	2012	15	16	11	11	7	7	-	67
영월 봉래중학교 (▲)	2005	-	-	-	-	-	-	-	167
	2008	36	30	49	-	-	-	-	115
	2009	33	35	37	-	-	-	-	105
	2010	40	39	38	-	-	-	-	117
	2011	46	46	42	-	-	-	-	134
	2012	62	50	47	-	-	-	-	159

충청남도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1	2	3	4	5	6	계
	년도							
아산 거산초등학교 (-)	2005	-	-	-	-	-	-	132
	2008	20	20	22	20	18	20	120
	2009	13	14	22	15	23	17	104
	2010	20	19	21	19	19	21	119
	2011	19	22	21	21	18	21	122
	2012	22	21	22	21	19	16	121
홍성 홍동초등학교 (▲)	2005							
	2008	21	14	22	22	17	26	122
	2009	13	14	22	15	23	17	104
	2010	19	14	18	25	18	22	116
	2011	18	21	18	22	30	20	129
	2012	21	19	19	22	23	33	137
홍성 홍동중학교 (▲)	2005	-	-	-	-	-	-	142
	2008	28	36	36	-	-	-	100
	2009	36	29	36	-	-	-	101
	2010	46	38	28	-	-	-	112
	2011	48	47	38	-	-	-	133
	2012	49	52	49	-	-	-	150
공주 우성중학교 (-)	2005	-	-	-	-	-	-	107
	2008	31	44	26	-	-	-	101
	2009	19	30	43	-	-	-	92
	2010	13	21	31	-	-	-	65
	2011	26	14	23	-	-	-	63
	2012	49	29	17	-	-	-	95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1	2	3	4	5	6	특수 학생	계
	년도								
여수 관기초등학교 (▲▲)	2005	-	-	-	-	-	-	-	60
	2008	2	4	6	6	8	5	13	44
	2009	2	3	3	6	8	5	13	40
	2010	26	22	10	11	10	9	14	102
	2011	18	29	24	11	11	9	17	119
	2012	18	19	28	23	16	12	17	133
순천 별량초등학교 (▲)	2005	-	-	-	-	-	-	-	186
	2008	27	25	28	25	23	26	3	157
	2009	22	23	20	31	25	19	4	144
	2010	15	19	25	20	30	22	2	133
	2011	12	17	18	28	22	29	1	127
	2012	14	10	15	18	29	19	1	106
구례 토지초등학교 (-)	2005	-	-	-	-	-	-	-	71
	2008	12	13	8	14	11	7		65
	2009	7	10	12	8	12	11	4	64
	2010	12	8	11	10	9	13	4	67
	2011	8	12	8	11	12	11	4	66
	2012	13	8	11	9	12	12	4	69
고흥 도덕중학교 (▽)	2005	-	-	-	-	-	-	-	74
	2008	21	23	21	-	-	-	-	65
	2009	24	20	22	-	-	-	-	66
	2010	15	21	20	-	-	-	-	56
	2011	13	21	24	-	-	-	-	58
	2012	20	18	19	-	-	-	-	57

전라북도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1	2	3	4	5	6	계
	년도							
완주 삼우초등학교 (-)	2001	-	-	-	-	-	-	43
	2002	-	-	-	-	-	-	53
	2003	-	-	-	-	-	-	82
	2004	-	-	-	-	-	-	77
	2005	-	-	-	-	-	-	77
	2006	-	-	-	-	-	-	81
	2007	-	-	-	-	-	-	85
	2008	21	15	17	24	11	16	104
	2009	14	23	16	21	23	12	109
	2010	19	16	21	16	19	19	110
	2011	19	15	22	16	19	19	110
2012	20	17	17	13	22	15	104	
익산 성당초등학교 (▲)	2005	-	-	-	-	-	-	76
	2008	10	11	10	11	16	19	77
	2009	10	11	12	9	12	18	72
	2010	6	9	11	13	9	12	60
	2011	12	8	10	13	14	9	66
	2012	20	20	20	15	19	12	106
정읍 수곡초등학교 (▲▲)	2005	-	-	-	-	-	-	23
	2008	4	7	3	10	5	10	39
	2009	8	6	9	4	12	7	46
	2010	19	10	12	13	4	15	73
	2011	19	21	13	18	18	7	96
	2012	15	21	14	18	16	19	103
진안 조림초등학교 (▲)	2005	-	-	-	-	-	-	32
	2008	5	4	3	2	3	3	20
	2009	3	6	5	7	4	5	30
	2010	5	6	8	6	4	6	35
	2011	7	9	6	8	5	7	42
	2012	4	6	8	7	9	6	40
군산 회현중학교 (▲▲)	2005	-	-	-	-	-	-	82
	2008	26	18	29	-	-	-	73
	2009	26	27	18	-	-	-	71
	2010	62	32	29	-	-	-	123
	2011	61	63	38	-	-	-	162
	2012	62	64	63	-	-	-	189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상남도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1	2	3	4	5	6	계
	년도							
함양 서상초등학교 (▽)	2005	-	-	-	-	-	-	95
	2008	12	13	19	16	20	19	99
	2009	9	12	13	19	16	18	87
	2010	9	8	11	15	19	15	77
	2011	12	10	10	13	16	19	80
	2012	7	12	10	10	13	16	68

경상북도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1	2	3	4	5	6	계
	년도							
상주 남부초등학교 (-)	2005	-	-	-	-	-	-	68
	2008	19	20	20	18	20	16	113
	2009	19	18	18	18	17	20	110
	2010	19	20	18	20	18	18	113
	2011	16	16	22	18	17	18	107
	2012	20	17	17	22	18	16	110
경주 양동초등학교 (▲)	2005	-	-	-	-	-	-	61
	2008	8	9	11	9	8	7	52
	2009	16	10	9	10	14	8	67
	2010	14	14	10	11	13	11	73
	2011	16	18	14	12	10	13	83
	2012	11	19	17	14	14	10	85
안동 외룡초등학교 (-)	2005	-	-	-	-	-	-	112
	2008	3	10	12	8	21	15	69
	2009	8	2	12	13	10	21	66
	2010	10	8	5	13	13	9	58
	2011	13	14	8	7	13	14	69
	2012	14	11	16	10	8	14	73
성주 초전중학교 (▽)	2005	-	-	-				201
	2008	59	58	60				177
	2009	43	60	57				160
	2010	55	43	59				157
	2011	31	53	44				128
	2012	46	30	52				129

부산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1	2	3	4	5	6	계
	년도							
금성초등학교 (-)	2005	-	-	-	-	-	-	55
	2008	17	26	13	22	16	19	113
	2009	17	19	26	12	25	17	116
	2010	18	15	23	28	13	23	120
	2011	17	18	16	25	27	12	115
	2012	16	17	20	25	19	27	124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1	2	3	4	5	6	계
	년도							
단양 가곡초등학교	2008	5	8	5	3	3	9	33
	2009	1	5	7	4	5	3	25
	2010	3	0	7	7	5	6	28
	2011	7	2	0	5	7	5	26
	2012	5	7	3	2	5	8	30

<부록 2>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 법률안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제3조 (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教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教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제5조 (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1981.12.31>

부칙 <법률 제1870호, 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499호, 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칙 <법률 제8706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12.18] [법률 제11562호, 2012.12.1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

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

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 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 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특산물 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 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 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 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의1(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득세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7179호, 2004.3.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13호, 2005.3.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9호, 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75호, 2005.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 및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⑫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4.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⑧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81호, 2007.4.11> (해운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칙 <법률 제8501호, 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75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276호, 2008.12.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17호, 2009.5.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86호, 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제5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제5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시행계획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	제7조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제7조에 따른 시·군·구 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

제3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변경하는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칙 <법률 제10936호, 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562호, 201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정지용 외, 2002)가 제안한 법률안

농어촌교육발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행정구역상으로 모든 군과 시(광역시 및 통합시) 지역 중 인구 5만 이하의 읍과 면에 속하는 지역이다.
2. ‘농어촌교육’이란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각급 학교와 대안학교 및 각종 사회교육기관과 공공기관과 주민조직체가 실시하는 제반교육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교육기관은 평생학습센터, 농업기술센터, 직업훈련센터,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각종 협동조합 등을 말하며, 주민조직체는 해당 농촌지역의 주민 전체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펴는 주민단체, 농민단체, 환경보호단체, 문화단체, 여성단체 등을 말한다.
3. ‘학교통합’이란 2개 이상의 인근학교를 그대로 두고 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2개 이상 초등학교의 통합, 본교와 분교의 통합,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합,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의 통합 등을 말한다.
4. ‘복식학급’이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학년의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한 학급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촌교육의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조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학교와 다른 농어촌 교육기관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농어촌 학교의 복식학급 및 상치교과 운영의 해소 등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농어촌 교육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 단위에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농어촌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과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교육기관의 유지·발전 방안에 대하여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에는 각계 각층의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농어촌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의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입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기초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농어촌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제5조 (농어촌학교의 폐교와 보호) ① 농어촌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당해 지역 교육감이 지역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폐교할 수 있다.

1. 학교의 학생수가 10명 이하일 때

2. 해당 지역이 수몰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주민이 거주할 수 없을 때. 단 학교의 이주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주민이 폐교를 신청하였을 때

② 위 항의 사유로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폐교 1년 전에 폐교 사유를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1호의 경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2/3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1호 및 3호의 경우, 학부모 투표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때, 투표일은 적어도 2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인근 4km이내, 중등학교는 인근 6km

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거나 차량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때에는 학교를 폐교할 수 없다.

제6조 (폐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① 폐교 조치된 학교시설은 지방교육행정당국과 지역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그 유지, 관리 및 활용을 계획·수행한다.

② 농어촌학교를 폐지한 경우 그 시설은 다음의 각 호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
2.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활동의 장
3.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숙박 및 취사의 장
4. 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 및 성인학습과 이를 위한 숙식 및 취사의 장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집회의 장
6. 지역사회 주민조직단체가 주거나하는 공공 사업 및 행사의 장

제7조 (농어촌학교의 재개교) ① 제5조 제1항 1호 및 3호의 사유로 폐지한 경우, 폐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학령 또는 적령 아동 5인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할 때에는 다시 개교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 1호 및 3호의 사유로 폐교한 경우, 지방교육행정당국은 폐교한 날로부터 3년간 교육정보화 시설을 포함한 제반 학교의 시설·설비를 유지, 관리,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함에 있어 학생 수에 기준하기 보다는 학교 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조 ②항의 시설을 유지, 관리,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 학교에 운영비를 교부할 때에 학교의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폐교를 예상하여 차등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농어촌학교에 대한 시설·설비의 지원) ① 각 시, 군, 구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농어촌학교에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과 설비를 교육청이나 지역 중심학교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은 위 항의 공동시설과 설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통학차량 등 운송수단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어촌학교의 운영과 역할

제10조 (농어촌학교의 학급편성) ① 농어촌학교의 학급 편성기준은 학생 수 25명으로 하고 10명이 넘으면 한 학급으로 유지한다.

- ② 한 학년의 학생 수가 10명 미만이면 복식학급으로 편성, 운영한다. 한 학년의 학생수가 5명미만이면 3복식, 3명미만이면 전학년 1학급으로 편성, 운영한다.

제11조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 ① 소규모 농어촌학교는 학교 실정과 지역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이러한 교육과정은 국가나 지방의 교육행정 당국에서 개발, 제시된 것이거나 지방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 거쳐 학교가 독자적으로 개발, 적용할 수도 있도록 한다.

제12조 (농어촌학교의 역할) ① 농어촌학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위 항을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의 시설은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③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하는 농어촌학교 교사의 업무는 공식적인 직무부담으로 인정한다.
- ④ 농어촌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평생교육법의 그 시행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농어촌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13조 (소규모농어촌학교의 통합) ① 인근에 위치한 6학급미만의 초등학교, 3학급이하의 중학, 3학급이하의 고등학교 등의 소규모 농어촌학교는 지방교육행정 당국, 지방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및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라 2개 또는 그 이상의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 운영되는 소규모 농어촌학교는 통합으로 인하여 교사 및 예산 배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통합 운영으로 발생하는 절감된 예산은 해당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③ 통합된 소규모 농어촌학교에는 1인의 교장과 통합학교 수와 일치된 수의 교감과 학급수에 맞는 교직원을 배정 받고 합의에 따라 하나의 학교 또는 그 이상의 학교체제로 운영한다.

④ 통합된 학교체제에서의 고등학교과정은 지방교육행정당국, 지방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인문계열, 실업계열, 종합계열, 특수계열의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⑤ 도서지역의 통합학교에는 학교가 위치한 본도 이외의 타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제4장 농어촌학교의 교직원

제14조 (농어촌학교의 교직원배치와 순회교사임명) ① 교사양성과정에서 농어촌교육이나 도서벽지교육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교사가 농어촌학교근무를 지원하면 우선 배정하고 농어촌학교가운데 특히 소규모 학교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근무기간제한에 관계없이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규모를 불문하고 교무 및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학교에는 2개교 이상을 겸임하는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들 순회교사는 본인의 희망, 관련학교장의 의견, 당해 지방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의 의견, 당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교육청 또는 관련 학교에 소속하여 감독을 받도록 한다.

④ 2개교 이상을 겸임하는 순회교사에 대한 근무부담은 순회시간을 고려하여 경감되어야 한다.

제15조 (소규모농어촌학교 교직원에 대한 우대) ①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본봉의 20퍼센트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해 지역의 교육감이 지정한 소규모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승진상의 가산점 부여 및 전보상의 배려 등에서 혜택을 주어야 한다.

③ 소규모 농어촌학교를 포함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가족생활에 필요한 현대식 주택을 무료로 임대해 주어야 한다.

- ④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장·단기 국내 및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 ⑤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병역대체인정, 동학교 장기근무 특별허용, 자녀학비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16조 (교직원의 근무부담 경감) ①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우선적으로 당직 근무 면제 등 근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 ②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시·보고요청 공문은 가급적 자체되어야 하고,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간소화되어야 한다.

제5장 관련기관과의 협력

- 제1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위원회 구성) ① 농어촌학교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한 정부 각부서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국무총리직속의 중앙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부총리)을 위원장으로 하며, 농림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기타 전문인사, 농민단체대표 등을 위원으로 한다.
- ② 지방단위의 농어촌교육발전과 관련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위하여 농어촌학교를 그 지역 내에 보유하는 광역시 및 통합시와 모든 군에는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농어촌교육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 기관(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협, 지역 내 대학교 등)과 주민단체의 대표나 인사, 농어촌 학교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단위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의 농어촌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 ③ 중앙 및 지역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 도서·벽지교육진흥사업, 농어촌지역 중학생 무료의무교육사업, 학교급식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농어촌교육 지원사업, 농림부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어촌학생 학자금지원사업,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에 따른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교육급여사업,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개발사업 등 농어촌교육과 관련된 전국적 또는 지역 단위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동, 조정, 통합의 필요한 제 활동을 전개한다.

④ 중앙 및 지방단위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부 칙

제18조 (시행일자)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전남교육연구소가(강만철 외, 2002)가 제안한 법률안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떤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농어촌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농어촌학교’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및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2. ‘도서벽지학교’라 함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낙도·수복지구·접적지역 및 광산지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소규모 학교’라 함은 초등학교 6학급이하와 중학교·고등학교 3학급 이하를 말한다.
4. ‘도서벽지공익교원’은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기 위하여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공익교원에 편입된 교사로서 교육부총리로부터 도서벽지 교육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이다.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제3조 (국가의 역할) ① 국가는 농어촌 교육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한다.

- ② 국가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하에 가 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농어촌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어촌 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농어촌교육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제5조(국민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제3장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제6조(지역교육과정 편성) 농어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식학급 지양) 소규모 학급에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단식학급으로 편성한다.

제8조(교육활동 지원) ① 농어촌 지역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정착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농어촌 지역 학생의 특기·적성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농어촌 학교의 교원지원

제9조(교원 확충) 농어촌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0조(교원의 우대)

①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은 벽지의 등급에 따라 월 봉급의 8-15%의 정률급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농어촌에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우대한다.

④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원이 연수시 우대한다.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2조(사무보조원 배치)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사무보조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제13조(주택제공) 도서벽지 학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쾌적한 시설의 주택을 제공한다.

제5장 도서벽지공익교원

제14조(도서벽지공익교원의 신분) 도서벽지공익교원은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종사명령) 시·도교육감은 도서벽지공익교원이 근무할 지역·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지역변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서벽지공익교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내에서는 교육감이 행한다.

제17조(직장이탈금지) 도서벽지공익교원은 공익교원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당해 근무지역 안에 거주해야 하며, 당해 학교장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도서벽지공익교원의 복무) 도서벽지공익교원은 교육소집기간외에 3년간 공익교원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수) ① 도서벽지공익교원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농어촌 학교의 학생지원

제20조(급식제공) 농어촌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하고 도서 벽지 지역은 무료로 한다.

제21조(통학차량제공)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차량을 제공한다.

제22조(학비감면) 농어촌 중학교 졸업자가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진학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비를 면제한다.

제7장 농어촌 학교의 시설·설비

제23조(교구·기자재 지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교구와 시설·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4조(교육정보원자료실 구축)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교육정보자료실을 구축하여 원격교육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게 한다.

제25조(농어촌지역교육연구실 운영) 시·도교육청에 농어촌지역교육연구실을 개설하여 농어촌교육, 소규모 학교 교육, 복식수업에 대해 연구하고 지도하게 하며 원격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8장 농어촌 학교의 재정 지원

제26조(재정배분) 농어촌 학교의 학교당 운영비는 표준운영비에 10%를 가산하여 배분한다.

제9장 농어촌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제27조(지역사회문화센터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문화센터를 한다.

제10장 농어촌교육 발전기금

제28조(기금의 설치) 농어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교육발전특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농어촌 학생 복지 향상 및 학습력 제고를 위한 사업
2. 농어촌 근무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3. 농어촌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기타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장 보 칙

제32조(시행령)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5. 전남교육청(정민석, 2012)이 제안한 법률(안)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어촌의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호에 규정한 지역¹⁷⁾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3. '복식학급'이라 함은 둘 이상의 학년을 하나로 편성한 학급을 말한다.
4. '학부모'라 함은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농어촌학교에 취학 예정인 아동의 보호자를 말한다.
5. '주민'이라 함은 농어촌학교의 학군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의 발전과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으로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다.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1.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을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농어촌교육 종합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
 3.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4.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5.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교육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부모와 주민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의 추진 결과를 매년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앙정부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의회에 보고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관계기관회의)

- ①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광역시 및 도(이하‘시·도’라 한다)에 시·도 농어촌 교육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 ②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의장이 되며,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장관이 위원이 된다.
- ③ 시·도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는 교육감과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공동의장이 되며, 농어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과 농어촌의 교육·복지 등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된다.
- ④ 그 밖에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농어촌학교운영지원기구 및 교육복지지원센터)

-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와 농어촌의 학생 및 주민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농어촌학교운영지원기구를 둔다.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③ 농어촌학교운영지원기구와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농어촌학교의 운영

제7조 (농어촌학교 학교운영)

- ① 농어촌의 먼 지역에는 초등학교,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 이상을 유지한다¹⁸. 다만, 학교가 없어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② 농어촌의 지역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여야 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소규모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설비, 교원 및 보조인력,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③ 농어촌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또는 마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농어촌학교를 활용하여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1학기 이상 장기적으로 재학할 수 있는 산촌유학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농어촌학교 교육과정 운영)

- ① 농어촌학교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

18) 초·중등교육법 제30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한다.

③ 농어촌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환경 유지·개선)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급의 정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할 수 있으며,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정원규모를 넘어설 때 실제로 현지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 허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에 특별한 경우에만 복식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와 관련한 기준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¹⁹은 농어촌학교 시설의 단계적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학생복지시설을 우선으로 구축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한다.

제4장 농어촌자율학교

제10조 (농어촌자율학교의 지정·해제)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²⁰의 규정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어촌자율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²¹의 규정에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1)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며, 초·중등교육법 제61조²²를 준용한다.

③ 교육감은 농어촌자율학교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농어촌자율학교 운영 등)

- ① 농어촌자율학교에 근무할 교원의 배치기준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둔다.
- ② 농어촌자율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농어촌자율학교에는 학교가 있는 기초자치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전·입학을 우선 허용한다.
- ④ 교육감은 같은 기초자치 구역에서 농어촌자율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농어촌학교 교원의 우대

제12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²³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인 교원이 배치되도록 한다.

-
- 22)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23)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 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시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학교의 추가적인 교원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복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여 배치되도록 하며, 농어촌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교원이 농어촌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와 장기근무를 원할 때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농어촌 고교 출신 예비 교원이 출신 지역에 지원할 때 특별 채용할 수 있다. 특별 채용된 교원은 농어촌학교에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우대조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2. 현지거주 교사와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 장려수당
 3. 복식학급 담당수당²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현지거주 교원에 대해서는 현지 주택 구매 또는 그 임대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원에게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교원의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59호에 의해 2008.7.28.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복식수업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50천원을 각각 지급하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월 30천원을 각각 지급받고 있음.

제6장 농어촌학교 학생지원

제15조 (농어촌학교 학생지원)

- ① 초·중·고 농어촌학교 학생에게는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입학 시 정원의 특례입학을 확대하여야 한다²⁵. 또한, 특례입학 대학생에게는 입학금과 학기 중 수업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광역시 및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졸업자를 위한 학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고교 출신 고졸 취업자에게는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일정규모 이상의 중업원을 거느린 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시에는 일정비율을 의무고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영에 드는 경비,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과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특례입학, 입학금 및 수업료, 주요 도시의 범위, 학사설립, 기업의 규모 및 의무고용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농어촌학교의 재정지원

제16조 (경비지원 및 재원의 확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교육의 발전과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1.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급식비
 2. 농어촌학교 재학생 통학을 위한 초·중·고 통합 교통수단과 그 운영에 드는 경비
 3.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시 입학금 및 학기 중 수업료

25) 대학 특례입학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학은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입학정원의 4%이내에서 선발하고 있다.

4. 농어촌학교 재학생을 위한 학사 건립과 운영비
 5.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조치에 따른 비용
 6. 농어촌학교가 주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드는 제반 경비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② 제1항의 제반 경비의 지원을 위해 국가는 교부금 산정방식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²⁶⁾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산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농어촌학교의 폐교

제17조 (농어촌학교의 폐교 및 재개교)

- ①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 농어촌학교운영지원기구의 협의를 거쳐, 폐교1년 전에 그 사유를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부모와 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학령 또는 적령 아동 5인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할 때에는 다시 개교하여야 한다.

제18조 (농어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 ① 폐교된 농어촌학교는 교육감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폐교시설의 유지,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 ② 폐교시설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2.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와 문화사업
 3.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숙박 및 취사
 4. 지역사회 주민조직체가 주관하는 공공사업 및 행사
 5. 기타 지역주민과 밀접한 교육·학술·문화사업

26) 현재 농어촌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부금 산정방식에 의해 배분하고 있는 보통교부금과특별교부금이 있고,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부 칙

제1조 (경과규정)

- ①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폐지한다.
- ②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²⁷⁾를 삭제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장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7)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6.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2007.10)한 법률안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작은 학교”란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 면에 소재하는 학교
 - 나.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4. “학부모”란 농산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취학 예정인 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지원
3.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4. 농산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5. 그 밖에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의 보

장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주민·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에,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사도”라 한다) 의회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①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둔다.

②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의장이 되며, 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이 된다.

③ 그 밖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①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2.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평가
5. 그 밖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산어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2. 농산어촌지역 학부모대표
3. 교원 또는 교육전문가
4. 농어민단체 추천인사
5. 관계 공무원

④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와 농산어촌의 학생 및 주민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농산어촌 교육 진흥을 위하여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 교육 등을 하는 학교로 운영하거나, 해당 학교 내에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공립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⑤ 국·공립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여건의 개선 등) ①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농산어촌학교의 학급편성에 있어서 1개 학년의 학생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학급을 복식학급(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산어촌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방과 후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하여 정규 수업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관리·운영하고, 농산어촌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공공기관 등의 장은 교육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능 또는 체육 분야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병설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의 병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또는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취학편의 등) ①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교사의 배치기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학교에 별도기준의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산어촌 학교 별도 기준의 교원정원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확보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장기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산어촌 작은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 ③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계속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장·교감은 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작은 학교 근무수당
2.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3. 복식학급담당수당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교원에 대하여 주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구입 또는 그 임대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수당, 농지 규모 및 무이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교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문발송·보고 등 행정업무의 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교육 외의 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출장일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하여 마을 공부방 등의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제1항의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특례입학)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농산어촌 특별전형의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정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농산어촌 학교 학생수 비율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농산어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우선 입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①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로서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초·중등 교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금 지원, 등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그 자녀를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그들에게 인사보수 그 밖의 근무에 있어 우대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우대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농산어촌학교 폐교의 특례) 교육감은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농산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농산어촌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폐교재산에 대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의 폐교나 유희시설을 이용하여 마을체험학교(지역의 특산품, 자연환경,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마을체험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지역 주민, 교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 ④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 교육감은 제18조에 따른 학습·보호시설의 운영 및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재원의 확보)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경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비
2.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운영비
3.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
4. 농산어촌학교의 주민에 대한 도서실 등 시설 개방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 소요경비
5. 농산어촌학교의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가산점의 종류) 제6호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삭제한다.

③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7. 이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2008.08)한 법률안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의 교육진흥과 농산어촌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교육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농산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취학 예정인 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및 지역주민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농산어촌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농산어촌학교 교육환경의 개선·발전
 3.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지원
 4.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5. 농산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6. 그 밖에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된다.

제5조(농산어촌교육심의회위원회) ①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농산어촌교육심의회위원회를 둔다.

1. 농산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2.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평가
 5. 그 밖에 농산어촌교육심의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농산어촌교육심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농산어촌 학교는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 교육 등을 하는 학교로 운영하거나, 해당 학교 내에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국·공립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해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여건의 개선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장이 원어민 교사 배치를 요청할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산어촌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방과 후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하여 정규 수업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관리·운영하고, 농산어촌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능 또는 체육 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취학편의 등) ①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농산어촌 학교 교원의 확보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에 장기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농산어촌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학교 근무수당

2.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른 수당, 주거편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등) ①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에 행정보조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② 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출장일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제5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중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업료를 지원받은 자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학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후의 수업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수업료의 지원·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특례입학)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입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특별전형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정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농산어촌 학교 학생수 비율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농산어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우선 입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① 국가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의 학교 및 과학기술원 등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학사과정 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의 2분의 1

3. 남은 수업료 2분의 1에 대한 대출이자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에는 지원은 중지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입학금·수업료 등의 지원 및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산어촌학교 폐교의 특례) ① 교육감은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농산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사유로 통상적으로 인근의 다른 학교로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폐교할 수 없다.

제18조(농산어촌 폐교재산의 유지 및 관리)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폐교재산에 대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재원의 확보)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의 교육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운영비
2.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
3. 농산어촌학교의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가산점의 종류) 제6호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으로 한다.

②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③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8.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2008.12)한 법률안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작은 학교”란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 면에 소재하는 학교
 - 나.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 다.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
4. “학부모”란 농산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취학 예정인 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지원
3.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4. 농산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5. 그 밖에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의 보

장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주민·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에,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회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①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둔다.

②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장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이 된다.

③ 그 밖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①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2.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평가
5. 그 밖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산어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2. 농산어촌지역 학부모대표
3. 교원 또는 교육전문가
4. 농어민단체 추천인사
5. 관계 공무원

④ 농산어촌교육심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와 농산어촌의 학생 및 주민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농산어촌 교육 진흥을 위하여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 교육 등을 하는 학교로 운영하거나, 해당 학교 내에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공립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⑤ 국·공립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교육감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여건의 개선 등) ①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농산어촌학교의 학급편성에 있어서 1개 학년의 학생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학급을 복식학급(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산어촌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방과 후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하여 정규 수업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운영하고, 농산어촌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공공기관 등의 장은 교육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능 또는 체육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병설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의 병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또는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취학편의 등) ①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교사의 배치기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학교에 별도기준의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어촌학교 별도기준의 교원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확보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장기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Ⅰ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산어촌 작은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 ③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장·교감은 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농산어촌 작은 학교 근무수당
- 2.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 3. 복식학급담당수당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교원에 대하여 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구입 또는 그 임대애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수당, 농지 규모 및 무이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교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행정목적의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문발송·보고 등 행정업무의 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교육 외의 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출장일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하여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제1항의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특례입학)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농산어촌 특별전형의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정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농산어촌 학교 학생수 비율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③ 대학의 장은 농산어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우선 입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①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로서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초·중등 교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금 지원, 등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그 자녀를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그들에게 인사보수 그 밖의 근무에 있어 우

대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우대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농산어촌학교 폐교의 특례) 교육감은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농산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농산어촌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폐교재산에 대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의 폐교나 유희시설을 이용하여 마을체험학교(지역의 특산물, 자연환경,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마을체험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지역 주민, 교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 교육감은 제18조에 따른 학습·보호시설의 운영 및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재원의 확보)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경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비
2.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운영비

3.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
4. 농산어촌학교의 주민에 대한 도서실 등 시설 개방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 소요경비
5. 농산어촌학교의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가산점의 종류) 제6호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삭제한다.

③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9.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2009.04)한 법률안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 교육의 진흥과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의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복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농산어촌작은학교”란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면 단위 이하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초등 7학급, 중등 4학급 이하의 학교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복식학급”이란 둘 이상의 학년을 하나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5. “주민”이란 농산어촌학교의 학군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
6. “학부모”란 농산어촌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농산어촌학교에 취학 예정인 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교육의 진흥과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유지 및 육성
3.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4.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5. 그 밖에 농산어촌 교육의 진흥과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주민·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앙정부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5조(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와 농산어촌 학생 및 주민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교수, 농어민 단체 추천인사, 교사, 농산어촌지역 학부모 대표, 지자체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그 산하에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을 운영한다.
- ②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와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교원정원배정에 대한 특례 등) ①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원정원배정기준외에 별도의 예산과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교원정원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작은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공모 학교장의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인의 교장 후보를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전보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인사관리규칙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전보 임용 또는 전보유예 할 수 있다.

④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가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를 첨부하여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구분된 학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지도 및 평가에 대한 특례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작은학교 및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장학지도나 평가 대신 상담 형태의 지원장학을 도입하며,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에서 제외한다.

제9조(농산어촌학교 근무 교원의 업무 경감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야 한다.

②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학기 중 출장의 총량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과 출장 총량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여건의 개선 등) ① 교육감은 한 학년 3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농산어촌학교에 복식학급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산어촌교육과정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산어촌학교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산어촌교육과정연구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취학편의 등) ① 농산어촌학교는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학생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제공, 숙식경비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시설의 개방 등) ①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주민 및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도서실·전산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학생들을 위한 자율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교육감으로부터 농산어촌학교 자율학습시설 운영 및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받으면, 해당 지역마다 사범대학교 또는 교육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 및 교육학점 이수자 중에서 희망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경비와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방과후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농산어촌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공공기관 등의 장은 교육감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농산어촌학교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학부모 중에서 방과후학교에 활용 가능한 자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농산어촌에 재학하는 학생이 예능 또는 체육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복지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 향상 및 방과후 보호를 위해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마을단위 공부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장은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 학생중에서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를 시군교육청에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유아,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시군단위의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주민의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농산어촌 학생의 보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신체 및 정신 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년 4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며, 검진결과 추가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위탁하여 검진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담교사는 관할 지역의 농산어촌 학생 중 정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장은 관련 병원에 치료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진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업무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의 위탁을 받아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소요예산은 국가가 각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제16조(농산어촌학교의 상호 연계운영) ① 농산어촌학교의 방과후학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 개 학교 이상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농산어촌학교의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교과와 중심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학교에 실험실습 시설을 완비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산어촌학교에 비치하는 설비는 두 학교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체험학습, 방과후학교, 공동실험실습소 활용 등을 위하여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 이동용 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특례입학 등) ①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특례입학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 특례입학 인원은 전체학생수 대비 농산어촌 소재지 학생수 비율에 근거하여 정한다.

③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교대 또는 사대에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농산어촌학교의 졸업자가 입학할 경우에는 기숙사에 우선 입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은 주민에게 적극 활용하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제19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작은학교에 유치원을 반드시 설치하고 필요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를 위하여 「유

「아교육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농산어촌작은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그 자녀를 농산어촌작은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사보수 그 밖의 근무에 있어 우대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임용 대기 중에 있는 자가 농산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용하고, 인사·보수 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등 우대방안 및 우선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산어촌작은학교 교원의 특별임용) ① 농산어촌 출신으로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를 약정할 경우 교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임용원칙이나 채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작은학교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자격요건과 임용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산어촌작은학교 교원의 확보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작은학교에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이 장기근무를 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농산어촌작은학교에는 학교장 겸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교감을 배치할 경우에는 교사와 동일한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농산어촌작은학교 교원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작은학교 근무수당

2. 현지거주 교사와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장려수당

3. 복식학급담당수당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작은학교에 근무하고 해당 학군에 거주하며, 취학 연령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학군의 농어촌작은학교에 취학시키는 교원에 대하여 주택 및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구입 또는 그 임대애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농지 규모 및 무이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경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해당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비

2.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그 운영비

3. 농산어촌학교가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과 설비를 개방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4. 농산어촌학교가 도서실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의 도서구입비

5. 그 밖에 농산어촌학교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

제25조(농산어촌학교 폐교의 특례)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26조(농산어촌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폐교재산에 대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의 폐교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의 특산품, 자연환경,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과 교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체험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체험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가산점의 종류) 제6호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8조까지)을 삭제한다.

③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를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장(제20조부터 제28조까지)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10.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2010.08)한 법률안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소규모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교육의 장을 실현한다.

② 모든 학습자는 학교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재정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20명 또는 6학급인 학교(이 경우 분교도 개별 학교로 보며, 특수학급은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체학교”란 소규모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서 이 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전원(全員)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제4조(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 ① 소규모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을 신청하기로 의결하거나 학부모회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決議)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부모회의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결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립 소규모 공동체학교 교원 공모 및 선정) ①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가 제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학교로 전근(轉勤)을 원하는 교원(이하 “공모교원팀”이라 한다)을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② 공모교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규모 학교의 이름과 위치
2. 소규모 학교의 운영 목표 및 계획
3. 교직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특수화된 교육과정
5.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모교원팀은 해당 학교 교원 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해당 학교 학부모회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를 운영할 공모교원팀을 1회 이상의 공개설명회를 거쳐 선정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부모회의 공모교원팀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모교원팀의 재선정)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공모교원팀을 8년 단위로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재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던 공모교원팀도 다시 응모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교육감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모교원팀 선정을 통보받은 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때에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한다.

제8조(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해제) ①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 ① 공모교원팀의 소규모 공동체학교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부모 의견 반영 절차 등 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과 공모교원팀 선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초·중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공동체학교 공모교원팀 선정과 근무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원)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한다.

③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교원 정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불이익 금지)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 당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통학구역 또는 학군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③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는 최대 20명으로 한다.
- ④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교육감이 정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학생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5조(연수)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위하여 교원에게 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①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동체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 외의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 ①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들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공동체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정진후 의원이 대표 발의(2011.11)한 법률안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작은 학교”란 농어촌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 읍면에 소재하는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 나. 농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
3. “학부모”란 농어촌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취학 예정인 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 농어촌학교의 학군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
5. “방과 후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6. “복식 학급”이란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어촌학교의 지원

3.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4.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5. 그 밖에 농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농어촌 주민·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회에,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회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기본 계획 및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①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둔다.

②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장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이 된다.

③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2. 농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평가

5. 그 밖에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① 농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어촌지역 학부모대표

2. 교직원 대표
 3. 농어촌 교육전문가
 4. 농어민단체 추천인사
 5. 농어촌 관계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
- ③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2. 농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평가
 5. 그 밖에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④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면 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여야 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소규모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학교 학생 수 기준의 3분의 2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④ 농어촌학교의 장은 농어촌학교의 학급편성에 있어서 교육목적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식학급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어촌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농어촌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 작은 학교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농어촌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농어촌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 ③ 교육감은 농어촌 자율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어촌 자율학교의 지정·운영·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9조(방과 후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운영하고, 농어촌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 등의 장은 교육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능 또는 체육 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취학편의 등) ① 농어촌 작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교직원의 정원 확보) ① 농어촌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교직원이 농어촌학교에 추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작은학교 별도기준의 교원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농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확보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 작은 학교에 장기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어촌 작은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③ 농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계

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장·교감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제13조(농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 및 수당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2. 복식학급담당수당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원에 대하여 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구입 또는 그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수당, 농지 규모 및 무이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등) ① 농어촌 작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외의 행정 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원이 교육 외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행정업무의 범위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농어촌학교 출신의 대학특례입학)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농어촌 초·중등학교를 9년 이상 재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농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정원은 전체 학생 수 대비 농어촌 학교 학생 수 비율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농어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우선 입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농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학교의 시설

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하여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제1항의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그 자녀를 농어촌 작은 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그들에게 인사·보수, 그 밖의 근무에 있어 우대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우대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어촌학교 폐교의 특례) 교육감은 공립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예정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학령 또는 적령 아동 5인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할 때에는 다시 개교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어촌에 소재하는 폐교재산에 대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의 폐교나 유희시설을 이용하여 마을체험학교(지역의 특산품, 자연환경,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마을체험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지역 주민, 교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 교육감은 제18조에 따른 학습·보호시설의 운영 및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재원의 확보) 국가는 농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무상교육 및 경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1.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교육활동비, 체험학습비
2. 학교급식비
3.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운영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주민에 대한 도서실 등 시설 개방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 소요경비
3. 농어촌 작은 학교의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양병찬(공주대학교)
공동연구원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정규(지역재단) 이진철(충남교육연구소) 전광수(공주대학교)
연구조원	최종성(공주대학교)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	2012년 12월
발행처	농림수산식품부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전화 및 팩스	FAX 044) 868-0846
인쇄처	선명기획 TEL 02) 2268-4743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